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박진희

정재현

김수현

이정아

이혜연

김영달

KEIS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박진희

정재현

김수현

이정아

이혜연

김영달

KEIS





# 발간사

---

1995년 시작된 고용보험제도는 임금근로자에서 모든 취업자의 고용 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전환기에 서 있다. 2020년 12월 수립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로드맵에 따라 2021년 5월 예술인,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제도가 운영 중이며, 향후 12개 직종 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시행 및 안착을 위해서는 2021년 새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그리고 임의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12개 직종 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전국민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DB, 예술인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DB 자료 등 고용노동행정DB와 특고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가 직접적이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월별 소득 변동이 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료 납부 방식의 유연한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조기 안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 박진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정재현, 김수현, 이정아 부연구위원, 이혜연 책임연구원 그리고 김영달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일자리플랫폼 MDB를 비롯해 고용보험DB, 산재보험DB,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DB 등 각종 행정DB의 연계 및 가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실태조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분석과 의미 있는 연구를 마무리한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원내의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 영 돈**

# [ 차례 ]

<b>제1장 서론</b> .....	<b>1</b>
<b>제2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b> .....	<b>3</b>
제1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
제2절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	6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 효과 분석: 경험과 제도 효과 ...	1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4
<b>제3장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현황</b> ...	<b>15</b>
제1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	15
제2절 분석 자료 .....	18
제3절 고용보험 예술인 가입 현황 .....	19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	31
제5절 결론과 시사점 .....	39
<b>제4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석</b> ...	<b>41</b>
제1절 서론 .....	41
제2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 .....	43
제3절 특고 및 프리랜서 특성 분석 .....	48
제4절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 분석 .....	60
제5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 분석 .....	68
제6절 소결 .....	74

**제5장 자영업자 근로현황과 고용보험가입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 76**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 76  
제2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77  
제3절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 79  
제4절 실태조사 응답자 중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분석 ..... 99  
제5절 소결 ..... 103

**제6장 특고의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06**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 106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분석 ..... 109  
제3절 특고 실태조사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연계 분석 ..... 127  
제4절 소결 ..... 143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 148**

**부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설문지 ..... 153**

## [ 표 차례 ]

〈표 2-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	11
〈표 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사업개시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분포 .....	12
〈표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기준보수등급분포 .....	13
〈표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른 직종 .....	16
〈표 3-2〉 예술인 직종별 가입자(2021년) .....	20
〈표 3-3〉 예술인 직종별 가입자 .....	21
〈표 3-4〉 산업별 가입자(2021년 10월) .....	22
〈표 3-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기초 통계량(2021년 10월) .....	23
〈표 3-6〉 예술인 직종별 가입건 인적속성 분포(2021년 10월) .....	25
〈표 3-7〉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존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력 분포 .....	27
〈표 3-8〉 예술인 직종별 유지기간과 평균 반복 취득 횟수 .....	30
〈표 3-9〉 직종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분포 .....	34
〈표 3-10〉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의 인적속성별 분포(2021년 10월) .....	35
〈표 3-11〉 고용보험 특고 가입자의 인적속성별 분포(전체 취득건) .....	36
〈표 3-1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 분포 .....	38
〈표 4-1〉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	43
〈표 4-2〉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성별 구성 ...	45
〈표 4-3〉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연령대별 구성 ...	46
〈표 4-4〉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별 구성 ...	47
〈표 4-5〉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구성 .....	49



<표 4-6>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구성 .....	50
<표 4-7> 성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	52
<표 4-8> 연령대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	54
<표 4-9> 연령대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	55
<표 4-10>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 산업 구성 .....	56
<표 4-1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 직업 구성 .....	57
<표 4-12>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개인 속성별 구성 .....	58
<표 4-13>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구성 .....	59
<표 4-14>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연소득 .....	62
<표 4-15>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연소득 .....	64
<표 4-16>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득 ...	65
<표 4-17>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득 .....	66
<표 4-18>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과 저소득 영향 요인 분석 .....	67
<표 4-19>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	69
<표 4-20>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	71
<표 4-2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	72
<표 4-22>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이전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	73
<표 5-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주요 변화 .....	78
<표 5-2> 자영업자 인적 속성별 응답 현황 .....	79
<표 5-3> 지난 1년간 수입이 있던 일자리 개수 및 직업 .....	80
<표 5-4> 응답자 직종 (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종) .....	81
<표 5-5> 계약 여부 .....	82
<표 5-6> 종사상 지위 .....	82

<표 5-7> 규모별 종사자 수 .....	83
<표 5-8> 주된 일자리의 현재 근무 상태와 평균 근무기간 .....	83
<표 5-9> 영업종료 응답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종료 여부와 영업종료 사유 .....	84
<표 5-10> 코로나19 관련 영업 종료 사유별 산업 분포 .....	85
<표 5-11> 수익-적자 여부(전체) .....	86
<표 5-12> 업종별 수익-적자 분포(무응답 제외) .....	87
<표 5-13> 직업별 수익-적자 분포(종사자수 상위 10개 직업) .....	88
<표 5-14> 산업별 소득 변동 정도 및 소득감소율 .....	90
<표 5-15> 직업별 소득 변동 정도 및 소득감소율(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업) ....	91
<표 5-16> 수입 감소 시 감내기간(종사자 수 상위 5개 산업) .....	92
<표 5-17> 수입 감소 시 감내기간(종사자 수 상위 5개 직업) .....	92
<표 5-18> 가입 경험 없음의 미가입 사유(중복응답 가능) .....	93
<표 5-19>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및 기대하는 지원 혜택 .....	95
<표 5-20>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및 미가입 사유 .....	97
<표 5-21>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	98
<표 5-22> 실태조사 응답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2021년 8~10월) .....	99
<표 5-23>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시 종사상지위 구분과 실제 조사 결과 ...	100
<표 5-24>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 시기 .....	100
<표 5-25>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 분포(상위 10개) .....	101
<표 5-26>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업 분포(상위 10개) .....	102
<표 5-2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보수등급 .....	102
<표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의 응답자 구성 .....	110
<표 6-2> 인적 속성별 일자리 수에 따른 응답자 수와 비율 .....	111
<표 6-3> 소득이 많은 일에서 하는 일의 종사자 수와 비율 .....	112
<표 6-4> 특고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형태 .....	113
<표 6-5> 근무 기간별 종사자 수와 비율 .....	114
<표 6-6> 근무 지속 여부와 중단 사유 .....	115
<표 6-7> 근무에 따른 중단 여부 .....	116

〈표 6-8〉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비율 .....	117
〈표 6-9〉 특고 종사자의 주요 근무장소 .....	117
〈표 6-10〉 사업체와의 근로계약 형태 .....	118
〈표 6-11〉 고용 계약의 종료시점에 따른 종사자 수와 비율 .....	118
〈표 6-12〉 고용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와 계약 기간 .....	119
〈표 6-13〉 계약 기간별 반복 갱신 여부 .....	120
〈표 6-14〉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 .....	121
〈표 6-15〉 보수의 형태 및 소득 안정성 .....	121
〈표 6-16〉 보수형태별 소득 안정성 .....	122
〈표 6-17〉 산업별 종사자 수와 비율 .....	122
〈표 6-18〉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 .....	123
〈표 6-19〉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인식 .....	124
〈표 6-20〉 인적 속성별 선호하는 고용보험 혜택 .....	125
〈표 6-21〉 인적속성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	126
〈표 6-22〉 실태조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	127
〈표 6-23〉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성별 비중 .....	129
〈표 6-24〉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연령별 비중 .....	130
〈표 6-25〉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산업간 비중 .....	132
〈표 6-26〉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직업 간 비중 .....	135
〈표 6-27〉 플랫폼 노동 제공 현황 .....	139
〈표 6-28〉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인적 속성별 현황 .....	140
〈표 6-29〉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계약 및 근로기간 ...	141
〈표 6-30〉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보수 형태 및 소득 안정성 ...	142
〈부표 1〉 직종 간 월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	146
〈부표 2〉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직종 간 월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	147

## [ 그림 차례 ]

[그림 2-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연월 추이 .....	4
[그림 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년 비중 .....	7
[그림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성별 비중 .....	7
[그림 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연령별 비중 .....	8
[그림 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별 분포 .....	9
[그림 2-6]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의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력 .....	10
[그림 2-7]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월 .....	11
[그림 3-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19
[그림 3-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로그 월평균임금 분포(2021년 10월) .....	24
[그림 3-3] 연령대별 고용보험 최초 가입자 비율(2021년 10월) .....	26
[그림 3-4] 월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취득과 상실(상용) .....	28
[그림 3-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유지기간의 생존함수(상용) .....	29
[그림 3-6] 연도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자격 취득 및 상실 건수 .....	31
[그림 3-7]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취득 및 상실 건수 .....	32
[그림 3-8]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수(중도 이탈 포함) .....	32
[그림 3-9] 중도 이탈 포함 여부에 따른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수 .....	33
[그림 4-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성별 비중 .....	51
[그림 4-2]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성별 비중 .....	53
[그림 4-3] 특고 및 프리랜서 연소득 분포 .....	61
[그림 4-4]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소득 구간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	73

[그림 5-1] 산업 분포 .....	81
[그림 5-2] 수익-적자 분포(무응답 제외) .....	86
[그림 5-3] 소득안정성 여부(전체) .....	89
[그림 5-4] 수입 감소 시 감내 기간(전체) .....	91
[그림 5-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경험(실태조사 결과) ....	93
[그림 5-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경험자의 가입 당시 기준보수등급 ....	94
[그림 5-7]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	94
[그림 5-8]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 .....	96
[그림 5-9]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응답자 100명 이상 상위 10개 직업) .....	96
[그림 5-10]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월납입액 분포 .....	98
[그림 6-1]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성별 비중 .....	129
[그림 6-2] 실태조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연령별 비중 .....	130
[그림 6-3] 사업체와의 근로계약 형태 .....	131
[그림 6-4] 산업별 분포(비중이 높은 7개 산업) .....	133
[그림 6-5]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	136
[그림 6-6]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	136
[그림 6-7]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	138

# 요약

---

본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를 포섭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DB, 예술인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DB자료 등 고용노동행정DB와 특고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

최근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입 확대가 과거 자영업 가입 경험 효과인지 제도 개선 효과인지를 검토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를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에 따른 효과보다는 정부 지원금 수급 경험과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경험 효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가입요건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최종 수급일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어서 아직은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기준기간 24개월 및 12개월 기여 기간만 충족하면 재가입할 수 있는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그 기준이 동일하지만 재가입 제한이라는 인식을 줄 수

## ii 요약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같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지원금 수령자의 경험 효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기간 및 기여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악화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고용보험 가입 러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더불어 2019년 7월 시행된 자영업자 가입자격 완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가 직접적이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현황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제도적 허점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 국민고용보험’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직종을 늘였을 뿐 아니라 간단히 신고로 가능했던 적용제외를 어렵게 하였다. 고용보험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불안정한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예술인을 먼저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7월부터 포괄하게 되었다.

아직 제도적 확대가 시작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각지대 축소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확대의 시작 단계에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2021년 8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약 45%가 1개월 미만 단기 예술인이라는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의 ‘평균적인’ 상태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고용보험보다 관대하게 설계되어, 가입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내에서만 평균적으로 1.7회 반복 또는 이중

취득하였다. 신고한 일자리에서 짧은 유지 기간과 반복 또는 이중 취득이 예술인의 노동시장 안정성과 복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특고 산재보험의 가입이 2021년 7월에 급격히 증가한 배경으로 적용 대상의 확대 못지않게 적용 제외를 어렵게 만든 제도적 변경이 주효했다. 산재보험 자료의 특성상 수치를 완전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입 일자리의 수는 1년 전 881천 개에서 2021년 10월 1,286천 개로 크게 늘었으며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9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은 특고 산재보험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는 581천 개, 가입자 수는 518천 명으로 늘고 있다. 이는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시행 후 4년이 지났을 때 도달한 수치와 비교된다. 현재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직종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4.7% 수준이다. 이와 같은 가입의 빠른 확대는 포괄하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특고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명시적 모집단이다. 사각지대를 개념적으로 밝히는 것만큼이나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드러내는 작업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석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960,061 명의 개인의 인적 속성을 분석해보면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컸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가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60세 이상 고연령대와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순으로 많았다. 2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직종별로 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육 관련 종사원이 많았다. 반면 가전제품 설치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등의 직종에 해당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많지 않았다.



진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별로 분석해보면 여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종, 남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종 등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교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며 택배기사 등 운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훨씬 컸다. 연령대별로도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큰 직종, 3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5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큰 직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을 성별·연령대별 특성을 통해 구분하였다.

진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연계해 진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960,061명 중 655,978명, 68.3%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 중 일부는 임금근로 일자리를 갖지 않고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종별로 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과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학습지 교사, 교육 관련 종사원, 방문 교사 등의 직종도 특고 및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연소득 정보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의 연소득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60세 이상, 20세 이상 30세 미만, 20세 미만 연령대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또한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컸으며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그 비중이 컸다. 직종별로 보면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대리운전기사, 쿠팡서비스 기사, 교육 관련 종사원, 방문교사,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등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상당수가 연소득 96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50대, 40대, 30대가 많이 가입했으며 직종별로는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이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해 특고 일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여성일수록, 40세 이상 연령대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또한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은 것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이후 특고 고용보험이 아닌, 상용 고용보험으로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분석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비중이 낮았다. 이들 중 다수는 2019년 연소득 기준으로 월 8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자영업자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중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7,306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고용보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DB, 자영업자 고용보험 DB, 피보험자 종합통계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응답자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인 강사들로 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 1년간 주된 일자리의 영업을 종료한 경우(N=500) 코로나19 이후(2021년 3월 기준)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전체의 96.2%였으며, 대면 서비스 중심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코로나19 관련 사유(사업 부진, 코로나19 때문) 영업 종료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코로나19 관련 사유 영업 종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관련 문항에서는 매출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자, 순수입 0, 순수입 있음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2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3.3%), 부동산업 및 임대업(21.5%) 순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적자 비중이 높은 직업도 산업과 유관하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비중이 큰 영업판매직과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적자를 보는 경우가 응답자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보건, 의료직과 운송직은 월 200만 원 초과 순수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200만 원 초과 순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5.2%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서비스직의 경우 배달음식의 수요 증가로 순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응답자의 수도 많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감소율 관련 문항에서는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의 소득감소율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나 해당 자영업자들의 소득 변동 정도와 감소 폭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심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항에서 실태조사 결과상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9.5%에 해당하는 1,422명이었으나 조사기간인 2021년 8-10월의 고용보험 DB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7,306명 중 1,174명으로 나타나 설문조사 응답과 실제 가입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3,187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사유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모름’ 이거나 ‘가입 자격이 안 돼서’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7,306명 응답자의 63.1%에 해당하는 4,614명이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입 의향이 있는 경우 기대하는 혜택은 실업급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입 의사가 없는 2,692명은 미가입 사유를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35.5%),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34.7%) 순으로 응답하고 있

어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특성상 고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응답자 7,306명 중 조사 기간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있는 1,174명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했다. 이 중 77.8%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영업자는 전체의 49.2%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1년 2월 이후 상용직 가입자가 675명 중 531명에 달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적인 자영업자로 불리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영업 종료 비율, 소득감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과 관련해서는 보건업, 운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수요가 증가한 산업과 직업의 경우 월 순수입 200만 원 이상인 종사자가 다른 산업,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파급효과가 산업 간, 직업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전체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 132명 중 49.2%에 해당하여 과거의 정책 수혜 경험이 향후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7,306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32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설계 시 더 많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전국민고용보험에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므로, 자영업자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시 가입 의사가 큰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한다면 전국민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고의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우리 노동시장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업장 기준 사회보험 체계가 더는 우리 노동시장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표적으로 특고 종사자의 고용 양상과 사회적 안전망을 논의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번에 수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13,227명이며,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된 응답자는 5,918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종사자가 복수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특고 종사자의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는 3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으로 양극화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용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없거나 일 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하는 방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표준하도급·위임·위탁·위촉·임대·프리랜서·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대리인을 임명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43.1%로 주요한 계약형태로 나타났다. 확정되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응답자가 전체의 64%를 차지하였으며, 소득 변동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불안정 또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고정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 기간의 소득 감소를 평활화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 지금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2,146명을 대상으로 사유를 묻은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서였으며, 이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확대되는 경우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2.9%에 달하는 4,315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선호하는 혜택은 실업급여 지원이 80% 이상의 높은 응답을 받았다. 가입에 부정적인 1,603명을 대상으로 사유를 묻은 질문에는 33.9%의 응답자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 감소를 이유로 폼았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고용보험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5,918명 가운데 어떠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70.8%인 4,189명이었다. 상용직 위주인 기존의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1,308명(22.1%)이었으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은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에선 417명(7.0%)가량 가입이 진행된 상태였다.

특고 고용보험 제도의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이들 417명의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여성이 78.4%를 기록하여 21.6%에 그친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40대의 비중이 43.4%로 높았고,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태가 53.7%로 지배적인 계약형태로 나타났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분포는 다소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특고 고용보험이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군뿐만 아니라, 직업별로 살펴보더라도 교육직, 운송직, 판매직의 비중이 88.5%로 미가입 또는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그룹에 비해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은 직종에 따른 가입자격으로 인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종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의 직업 분포로 유추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경영·행정·사무직, 예술·디자인·방송직, 건설·채굴직, 제조 단순직 등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 시사점

먼저, 최근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제도 등의 노력을 기울인 효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후 급격하게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이 늘어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지원금 수령자의 경험 효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과거 자영

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자영업자가 폐업 혹은 경영 악화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2년 내 재가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된다. 사실상 기준기간 24개월 및 12개월 기여 기간만 충족하면 재가입할 수 있는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그 기준이 동일하지만 재가입 제한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같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와 더불어 2019년 7월 시행된 자영업자 가입자격 완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가 직접적이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고용보험 내에서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저임금의 20%를 하회하는 부분 소득 활동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보다 더 관대하게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예술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연예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용역 계약을 체결’ 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인 부문별로 계약 관행이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활동 증명 방식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아직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된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일자리의 절반이 약 5개월 후 상실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직급여 수급 조건인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기여 조건의 완화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인 강사들로 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센터 강사 등이 비중이 높았으며, 이미 특고 가입 대상인 방과후 강사, 방문 강사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도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35.5%),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34.7%)라고 응답하고 있어 월별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매월 일정의 고정적인 지출을 늘리

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납부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보험 외에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있어 이들을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특고 종사자를 중심으로 가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 확대는 가입자격 직종의 확대가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제1장

---

# 서론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1년 5월 예술인, 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2021년 새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그리고 임의 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를 포섭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DB, 예술인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DB자료 등 고용노동행정DB와 특고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

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2-3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DB, 예술인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DB를 분석하여 2021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현황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순수 자영업자와 특고 고용보험에 포괄되지 못한 직종 종사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가 가입하였고, 가입자격완화와 정부지원금 수급 경험 등의 요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은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하였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중취득 및 부분 소득활동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용보험가입자에 비해 관대하게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예술인 노동시장의 특성이 매우 단기적이며,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성으로 인해 실제 가입 대상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30인 미만, 혹은 50세 이상의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6장은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227명(자영업자 7,309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918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 고용형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소득 변동사항, 향후 고용보험 가입의사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소득 기반 고용보험 설계 및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5장은 자영업자, 6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조사 분석과 고용보험DB 결합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7장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보고서를 맺는다.

## 제2장

# 자영업자 고용보험 분석<sup>1)</sup>

### 제1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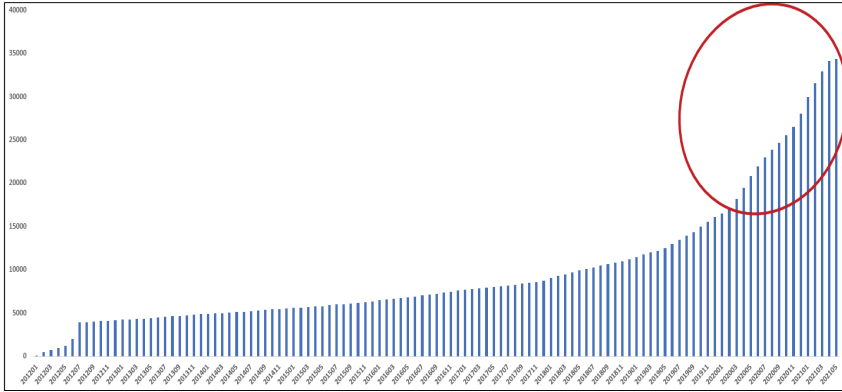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6년 4월부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2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3월 이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5월 현재 약 34천 명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미미한 숫자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자영업자의 피보험자 가입이 의무 가입이 아닌 본인 희망에 따른 임의 가입이라는 점과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실업급여 수준은 낮고 실업 인정 및 수급 절차도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장은 고용이슈 2021년 여름호에 게재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림 2-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연월 추이

(단위: 명)



주: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그럼에도 최근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2019년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평균 116% 수준이며 2020년 이후에는 174%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등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하였으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씩 늘리고, 실업급여액 역시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높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sup>2)</sup>고용보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보수 1~4등급 이내 고용보험가입 1인 소상공인이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2) 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제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sup>3)</sup>하였다. 처음에는 기준보수 1~2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여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해 주었다. 2020년부터는 기준보수 1~2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을 살펴보고, 2020년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DB와 결합한 DB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입 확대가 과거 자영업 가입 경험효과와 제도 개선효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www.sbiz.or.kr](http://www.sbiz.or.kr)

## 제2절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

2021년 5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34,347명으로, 우리 노동시장 전체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 5,587천 명의 0.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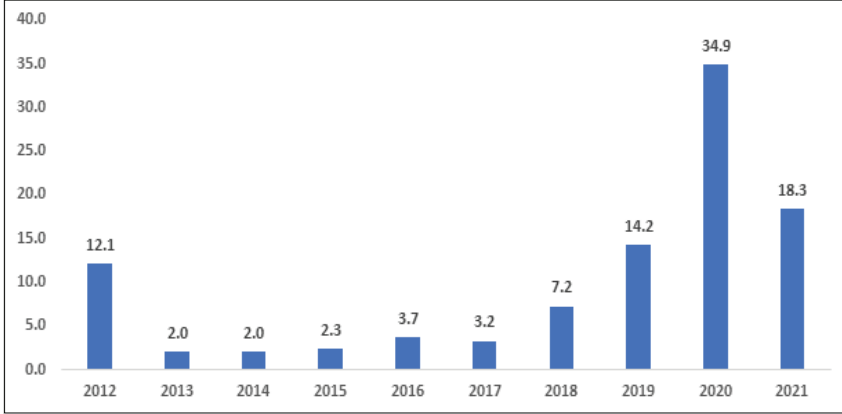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연도별 추이를 보면, 실업급여제도에 가입이 가능하였던 2012년 가입자 비중은 12.1%였고, 그 이후 가입자는 2~3% 수준이다가 2018년 가입자가 7.2%, 2019년 가입자가 14.2%, 2020년 가입자가 34.9%로 비교적 최근으로 올수록 가입한 비중이 더욱 높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영업 지속기간<sup>4)</sup>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2012년 가입자 비중이 12.1%로 높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 보면, 가입연도가 최근일수록 남성 자영업자보다는 여성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5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남성의 비중은 53.3%, 여성의 비중은 46.7%로 남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크다. 그러나 가입 연도별로 남녀 비중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높아져 2020년 가입자부터는 여성 비중이 50.8%, 2021년에는 비록 5월까지 가입 현황이지만 여성 비중이 52.5%로 더 높아지는 양상이다.

4)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이나 5년 생존율은 29.2%로 떨어짐. 김진선 (2020),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NARS 현안분석』 제179호. 국회입법조사처

[그림 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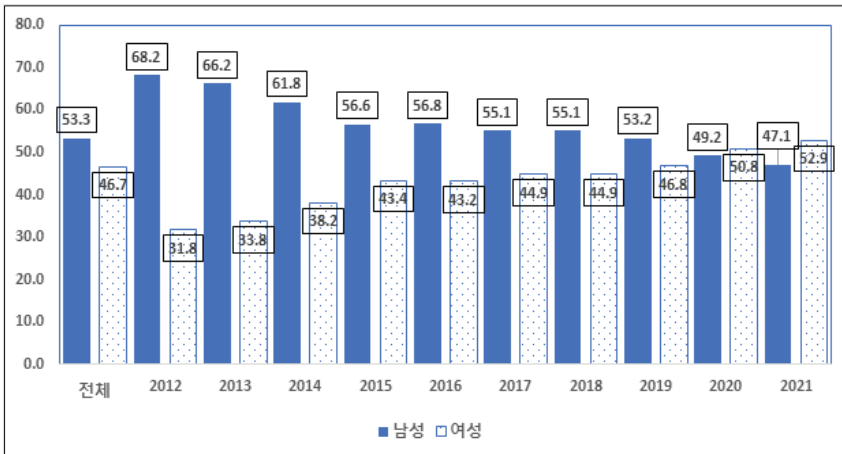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그림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성별 비중

(단위: %)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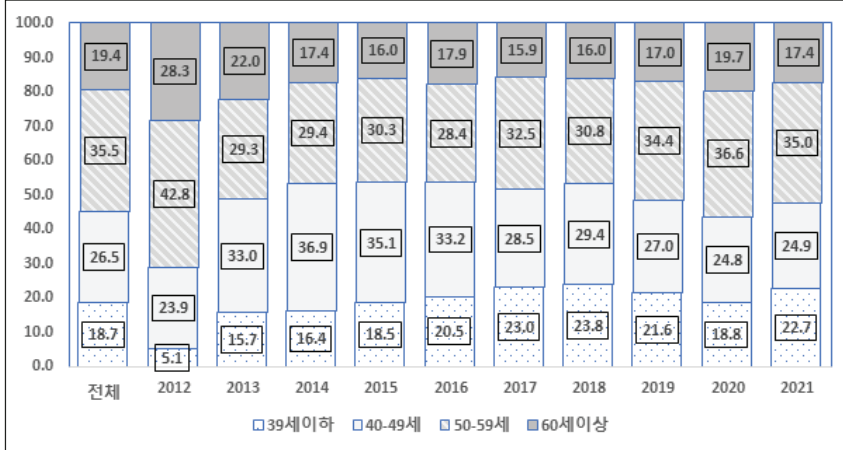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 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그림 2-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연령별 비중

(단위: %)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 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연령별로 보면, 50-59세 비중이 35.5%로 가장 높고, 40-49세 26.5%, 60세 이상 19.4% 순으로 39세 이하 가입 비중은 가장 낮은 18.7%였다. 가입 연도별로 연도별 비중을 보면 대체로 최근으로 올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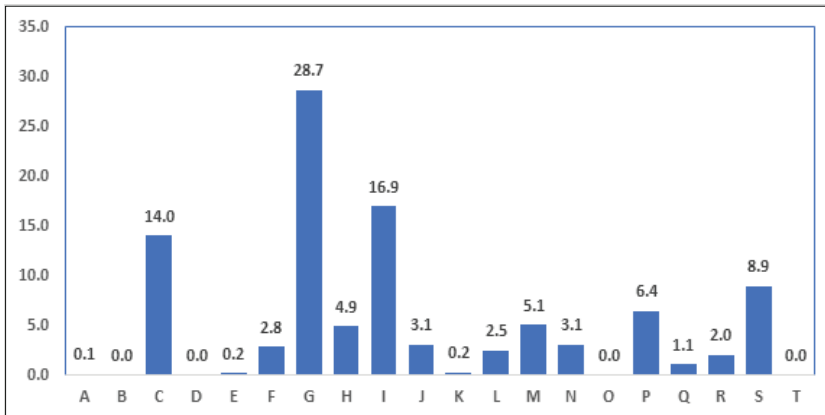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28.7%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6.9% 그리고 제조업이 14.0%를 차지했다.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중은 8.9%였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5.1%, 교육서비스업은 6.4%, 운수 및 창고업은 4.9%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제조업은 사내 협력업체나 도급업체 또는 용역업체로 일하는 근로자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도매 및 소매업은 식료품점, 서점, 잡화점, 의류점, 안경점, 각종 온라인 소품물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가전제품, 보일러 등 판매·배송·설치·수리를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위탁 음식점체, 조리,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혼재되어 있었다. 정보통신업도 IT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용역 근로자가 많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로 종사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살펴보면, 운수업은 주로 화물 운송 운전자, 가전제품 배송, 개인택시기사, 물류, 퀵서비스, 택배 등 배송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금융 및 보험업은 보험대리인과 금융 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정된 경우가 있었다. 교육서비스업은 교습소, 예체능학원,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개인공부방, 과외교사, 예체능 강사, 직업훈련기관의 강사 등 프리랜서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영양보호사, 보육교사, 심리상담사 등 프리랜서가 많았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센터 수리원 및 관리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세탁소, 이미용실, 피부관리실,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그에 속한 근로자가 혼재되었다.

[그림 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 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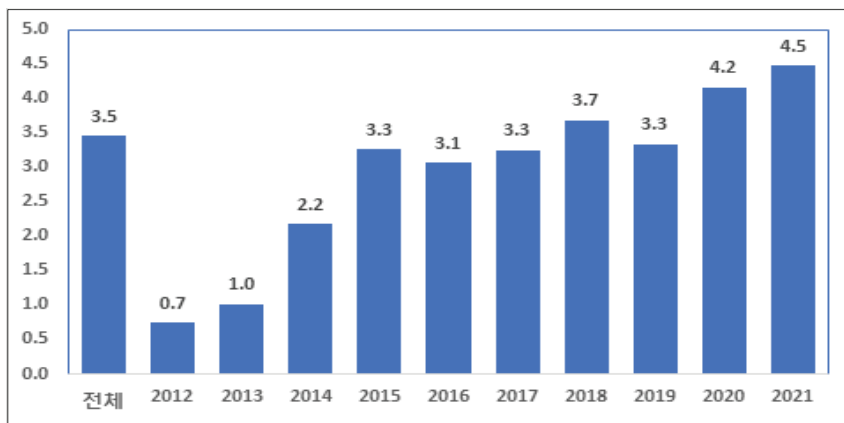
### 제3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 효과 분석: 경험과 제도 효과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이전 가입자의 증가인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인지를 간단한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이전 가입자의 가입 경험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림 2-6]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의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력

(단위: %)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 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가입자 중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는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3.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가입자일수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가입자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DB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DB를 결합하였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1천 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33.2%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62.4%가 2020년 1월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하반기로 올수록 가입자는 더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급격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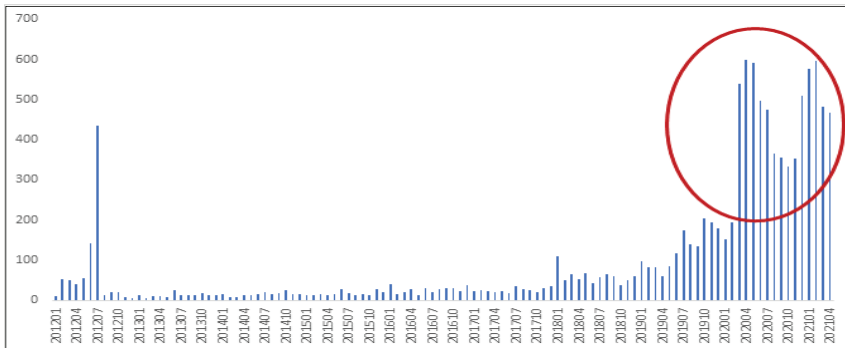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신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가입		합계	
미신청	0	0.0	23	1.0	23	1.0
신청	2,361	98.6	11	0.5	2,372	99.0
합계	2,361	98.6	34	1.4	2,395	100.0

자료: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와 자영업자고용보험DB의 결합DB 중 현재 자영업고용보험 자격유지자

[그림 2-7]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월

(단위: 명)



자료: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와 자영업자고용보험DB의 결합DB 중 현재 자영업고용보험 자격유지자

셋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2019년 7월 1일부터 개업 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개시일과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일을 비교하였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7월 이전 가입자는 모두 사업개시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 간의 간격이 5년 이내였으며, 2019년 7월 이후 가입자의 약 31%인 7천 명 정도가 사업개시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 간의 간격이 5년 이상으로 제도 개선으로 새로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표 2-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사업개시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일 분포  
(단위: 천명, %)

	1년 이내		1-5년		6년 이상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2019년 7월 이전 가입	3	42.2	4	57.8	0	0.0
2019년 7월 이후 가입	4	20.2	10	48.9	7	30.9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 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등급 선택에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기준보수등급 분포를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연도별로 기준보수 분포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경우 1~4등급에 70%가 분포하고 있는 반면, 2019년 가입자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기준보수 1~2등급, 7등급에 편중되어 가입하였고, 2016~2018년 가입자는 1등급과 7등급에 편중되어 있고, 2015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대부분 기준보수 1등급과 5등급에 편중되어 가입하고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제도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고, 2019년 기준보수 1~2등급에 대해 50% 고용보험료 지원이 실시되었는데, 2019년 기준보수 1~2등급 선택 비중이 높았다. 2020년 부터는 기준보수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50%를 3~4등급은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기준보수 1~4등급 선택 비중이 75%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상을 정리하면,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는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경험에 따른 효과보다는 정부 지원금 수급경험과 가입 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기준보수등급분포

(단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2012	<b>26.1</b>	6.0	13.0	6.4	<b>46.7</b>	0.1	1.7
2013	<b>39.3</b>	8.3	9.1	6.2	<b>35.9</b>	0.3	0.9
2014	<b>43.7</b>	7.7	9.7	7.4	<b>30.2</b>	0.0	1.3
2015	<b>46.4</b>	5.4	11.3	6.0	<b>29.8</b>	0.0	1.1
2016	<b>41.5</b>	6.5	7.6	8.3	7.0	4.2	<b>24.9</b>
2017	<b>44.9</b>	5.9	7.2	7.7	5.2	3.4	<b>25.7</b>
2018	<b>45.0</b>	7.2	6.6	7.7	5.3	4.0	<b>24.2</b>
2019	<b>37.1</b>	<b>17.5</b>	6.4	11.7	3.9	3.6	<b>19.9</b>
2020	<b>28.9</b>	<b>23.2</b>	<b>6.5</b>	<b>16.6</b>	3.7	2.7	<b>18.4</b>
2021	<b>29.6</b>	<b>24.1</b>	<b>6.1</b>	<b>17.8</b>	3.4	2.3	<b>16.8</b>

주: 1) 2021년 6월 7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임

2) 2021년은 5월까지 가입 실적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MDB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입 확대가 과거 자영업 가입 경험 효과인지 제도 개선 효과인지를 검토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파른 증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에 의한 효과보다는 정부 지원금 수급 경험과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크게 기여한 것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효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가입요건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최종 수급일 2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어서 아직은 그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기준기간 24개월 및 12개월 기여 기간만 충족하면 재가입할 수 있는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그 기준이 동일하지만 재가입 제한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같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지원금 수령자의 경험 효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기간 및 기여조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 악화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고용보험 가입 러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2019년 7월 시행된 자영업자 가입자격 완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가 직접적이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제3장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현황

### 제1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그 첫 단계로서 예술인은 12월 10일부터,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따른 가입 직종을 중심으로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시작되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임의 가입으로 운영 중인 자영업자에게로 확대를 준비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비교적 빠르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시작한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보다 관대하게 설계된 특징은 예술인 노동자의 계약 관련 일반 특성을 반영하였다. 첫째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이나 예술인 고용보험 내에서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둘째로 20% 이상의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저임금의 20%를 하회하는 부분 소득 활동이 인정된다. 어쩌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이러한 관대성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특성이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다음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이미 12년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모범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임금노동자보다 위험에 더 취약한 상태에 있으나 보호를 결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장을 위해 2008년부터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특징은 법에 지정된 ‘직종’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상 명확해 보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제로는 현실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탓이다. 따라서 직종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특고 산재보험은 적용을 확대해 왔다.

<표 3-1>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특례를 통해 지정된 직종과 지정 시점이다.

<표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른 직종

(2008.7.1.) 보험설계사, <u>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u> , <u>학습지 교사</u> , 골프장 캐디
(2012.5.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2016.7.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2019.1.1.) 건설기계조종사 ( <u>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에서 확대 변경</u> )
(2020.7.1.) 방문강사( <u>학습지 교사에서 확대 변경</u>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2021.7.1.) 소프트웨어기술자

먼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일에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 특례 직종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21년 6월 1일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 특고 15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을 제외한 11개 직종<sup>5)</sup>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sup>7)</sup>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제한 없이 허용했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였다.<sup>8)</sup>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적용제외자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1일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포괄성 확대의 분수령이 된 날이다.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산재보험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

5)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직종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 가입자격 취득, 상실 및 월평균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7)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관련 11개의 호를 적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은 월보수액으로 80만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합산 신청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8) 제126조의2(법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 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하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결실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절 분석 자료

고용보험DB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자료는 크게 세 종류로 구축되었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매월 마감하는 피보험자 마감통계(IST120W), 예술인 취득 신고 자료(IST122W), 상실 신고 자료(IST123W)로 구분하여 적재된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1개월 이하의 단기 예술인은 현재 마감 통계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예술인 피보험자 마감통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취득과 상실 신고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또한 예술인 가입자의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실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실 신고 자료(IST023W)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모두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운영, 발표되기 전 예비적 수준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하고 있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이하 ‘MDB’) 내에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력 자료가 있다. MDB에 있는 산재보험 자료는 산재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정보를 누적인 이력 자료이다. 분석 대상 정보 중 상실일 정보가 없거나 특수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추출 시점의 자격 유지 일자리이다. MDB는 연구를 위해 구축한 자료가 아니므로 확정 정보라고 할 수 없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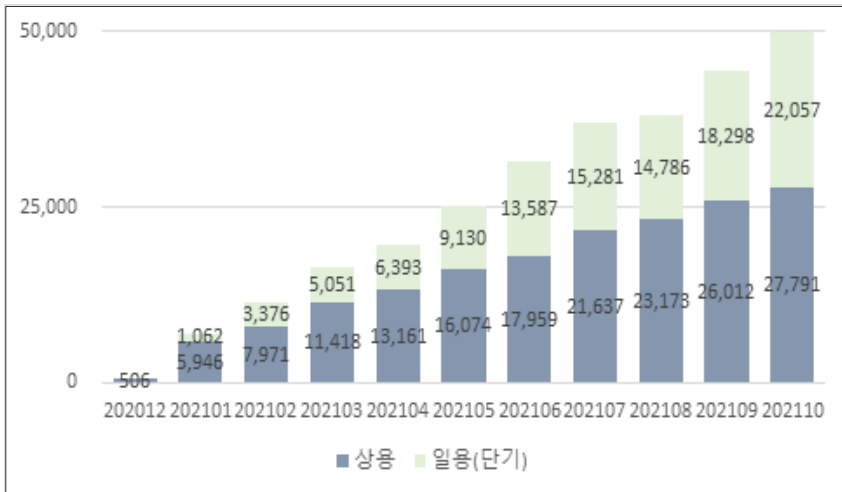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도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연구자용 DB로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MDB에 산재보험 특고와 구분되는 자료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가 적재되었음을 확인하고 단순히 규모를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한다. 또한 MDB 내에서 개인을 관리하는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이력과 결합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과 어느 정도로 교차하거나 포괄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 제3절 고용보험 예술인 가입 현황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가입을 시작하였으며, 데이터를 추출한 2021년 11월 현재 가입자 정보는 2020년 12월~2021년 10월까지 구축되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에서 월별 예술인 가입자 수는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0월 49,848건까지 늘었으며, 그중 1개월 미만의 단기 예술인의 비중이 약 45% 내외 수준으로 적지 않다.

[그림 3-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직종별로 구분하면 2021년 10월 상용 가입자에서 연예 부문 실연자, 연예 부문 창작자, 만화 부문 창작자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일용 가입자 중에서는 음악 부문 실연자와 연예 부문 실연자, 연예 부문 기술 지원자의 비중이 높다. 미술 부문 창작자의 비중이 높았던 1월과 비교하면 연예 부문에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을 허용하므로 순인원을 계산하면 상용 취득건의 93.1%, 일용 취득건의 76.0% 수준이다.

<표 3-2> 예술인 직종별 가입자(2021년)

(단위: 건, 명)

	상용		일용(단기)		10월 순인원	
	1월	10월	1월	10월	상용	일용(단기)
(창작)문학	595	1,067	16	257	970	234
(창작)미술	<b>1,837</b>	1,019	106	265	933	240
(창작)사진	26	69	4	38	65	34
(창작)건축	6	5		12	4	12
(창작)음악	34	505	16	620	477	523
(창작)국악	1	144	3	318	130	276
(창작)무용	12	191	25	111	165	99
(창작)연극	35	772	4	402	708	352
(창작)영화	196	565		274	519	233
(창작)연예	778	<b>3,309</b>	60	1,151	3,034	1,036
(창작)만화	102	<b>2,831</b>	4	1,175	2,709	334
(창작)기타	474	2,032	20	898	1,879	719
(실연)문학		77		26	69	22
(실연)미술	58	106	9	47	95	44
(실연)사진	1	7		8	6	7
(실연)건축						
(실연)음악	131	1,207	54	<b>3,772</b>	1,174	3,135
(실연)국악	33	310	25	901	282	786
(실연)무용	2	299	26	607	293	432
(실연)연극	114	1,044	8	540	983	430
(실연)영화	32	462	10	947	394	656
(실연)연예	341	<b>3,991</b>	228	<b>2,816</b>	3,675	2,139
(실연)만화	24	82		15	78	15
(실연)기타	167	1,304	79	1,413	1,193	1,115
(기술지원)문학	7	25	1	4	22	4
(기술지원)미술	48	206	2	32	194	28
(기술지원)사진	5	17	1	8	17	8
(기술지원)건축		3		1	3	1
(기술지원)음악	6	140	14	338	133	261
(기술지원)국악	2	47	2	131	42	100
(기술지원)무용	7	110	3	122	99	101
(기술지원)연극	9	271	44	421	255	324
(기술지원)영화	176	706	125	399	672	334
(기술지원)연예	405	2,565	93	<b>2,738</b>	2,411	2,018
(기술지원)만화	5	639		582	626	125
(기술지원)기타	277	1,664	80	668	1,557	591
계	5,946	<b>27,791</b>	1,062	<b>22,057</b>	<b>25,866</b>	<b>16,786</b>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3-3〉 예술인 직종별 가입자

(단위: 건, 명)

		상용		일용(단기)		10월 순인원	
		1월	10월	1월	10월	상용	일용
분야	창작 전체	4,096	<b>12,509</b>	258	5,521	11,593	4,092
	실연 전체	903	8,889	439	<b>11,092</b>	8,242	8,781
	기술지원 전체	947	6,393	365	5,444	6,031	3,895
부문	문학 전체	602	1,169	17	287	1,061	260
	미술 전체	1,943	1,331	117	344	1,222	312
	사진 전체	32	93	5	54	88	49
	건축 전체	6	8	0	13	7	13
	음악 전체	171	1,852	84	4,730	1,784	3,919
	국악 전체	36	501	30	1,350	454	1,162
	무용 전체	21	600	54	840	557	632
	연극 전체	158	2,087	56	1,363	1,946	1,106
	영화 전체	404	1,733	135	1,620	1,585	1,223
	연예 전체	1,524	<b>9,865</b>	381	<b>6,705</b>	9,120	5,193
	만화 전체	131	3,552	4	1,772	3,413	474
	기타 전체	918	5,000	179	2,979	4,629	2,42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예술 활동 ‘분야’<sup>9)</sup>를 기준으로 예술인 상용 가입자 중에서는 창작자의 비중이 높고 일용 가입자 중에서는 실연자의 비중이 높다. ‘부문’으로 보면 상용 가입자이든지 일용 가입자이든지 연예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연예 부문 종사자는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대의 가장 큰 원천이다. 연예 부문 종사자의 높은 가입 비중은 연예 부문 종사자 모집단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라는 적용 범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

9) 이하에서는 표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창작/실연/기술지원의 구분을 예술 활동 ‘분야’로, 문학, 미술, 사진... 등의 구분을 ‘부문’으로 지칭한다.

랜서 예술인’이며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인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 인정받아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때 수월하다. 전체 사례 수가 18만 명으로 보고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sup>10)</sup>에서 대중음악과 방송 분야(35천 명)보다 미술 분야(46천 명) 종사자가 더 많았다. 전병유 외(2019)에서 확인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예술인 약 45천 명 중 대중음악과 방송 연예 종사자는 8천 명을 상회하지만 이는 디자인과 공예를 포함한 예술 종사자 11천 명보다 적은 수치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연예 부문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표 3-4> 산업별 가입자(2021년 10월)

(단위: 건)

	상용	일용(단기)	계
제조업	78	5	83
도소매업	193	49	242
운수및창고업	8		8
숙박및음식점업		4	4
정보통신업	<b>18,782</b>	<b>11,545</b>	<b>30,327</b>
금융및보험업	2		2
부동산업	3	13	1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87	708	1,295
사업시설관리,지원및임대서비스업	1,050	656	1,706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41	661	1,102
교육서비스업	43	44	8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2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033	7,034	13,067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69	1,338	1,907
계	27,791	22,057	49,84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기준

1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2018) 참조(kosis.kr).

연예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일관적인 결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별 분포에서 정보통신업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세세분류 수준에서 2021년 10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16.9%인 8,400건을 포괄하는 산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이다. 다음으로 많은 13.3%(6,600건)를 포괄하는 산업은 지상파 방송업(60210)이다. 같은 시점에 해당 산업 세세분류 수준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각각 11천 명과 12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인의 용역 계약에 의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영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세세분류 수준의 산업은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으로 6.0% 가입자를 포괄한다. 공연 기획업(90191) 외에 장치, 설비 등의 설치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표 3-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기초 통계량(2021년 10월)

(단위: 건,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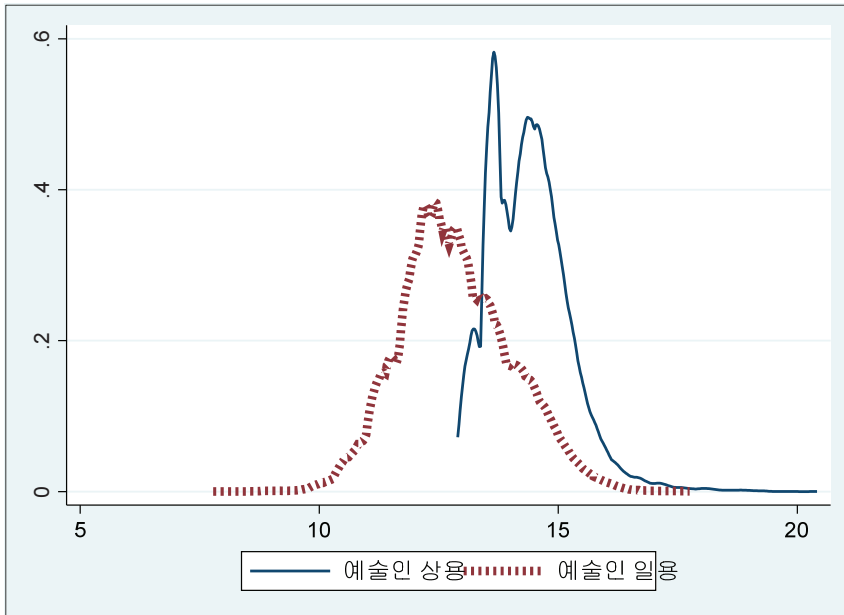
		이증취득 포함		가입건 대비 가입자 수 비율		분포	
		상용	일용	상용	일용	상용	일용
전체		27,791	22,057	93.1	76.0	100.0	100.0
성별	남성	11,052	10,997	92.3	76.2	39.8	49.9
	여성	16,739	11,060	93.6	75.8	60.2	50.1
연령대	18세 미만	104	220	94.2	86.4	0.4	1.0
	18~20세 미만	60	176	98.3	89.2	0.2	0.8
	20~24세 이하	2,333	2,160	96.7	79.9	8.4	9.8
	25~29세 이하	<b>6,396</b>	<b>4,401</b>	95.1	76.5	23.0	20.0
	30~34세 이하	5,898	4,084	92.9	74.3	21.2	18.5
	35~39세 이하	4,571	3,492	91.2	73.3	16.4	15.8
	40~44세 이하	3,318	2,399	91.5	79.0	11.9	10.9
	45~49세 이하	2,591	2,004	91.7	72.5	9.3	9.1
	50~54세 이하	1,574	1,513	90.5	73.0	5.7	6.9
	55~59세 이하	593	859	93.8	76.6	2.1	3.9
	60~64세 이하	330	659	93.0	81.6	1.2	3.0
65~69세 이하	19	65	94.7	95.4	0.1	0.3	
70세 이상	4	25	100.0	96.0	0.0	0.1	
월평균 임금	평균	296	79				
	중위	163	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인적 속성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표 3-5>에서 보듯이,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 상용과 일용에서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나며 상용 가입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은 2021년 10월에 60.2%로 일용보다 격차가 더 크다. 앞서 제시한 「예술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여성 비중이 38.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 비중이 높다. 5세 단위로 연령대를 구분하면 상용이든 일용이든 25~29세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 35~39세 순으로 많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을 구분하여 나타낸 비율은 고령자가 높게 나타난다. 즉, 이중 취득 비중이 낮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신고한 월평균 임금 수준은 상용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의 분포에서 차이가 크다. 상용 예술인의 소득이 월평균 50만 원을 하회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저치가 4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로그 월평균임금 분포(2021년 10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3-6〉 예술인 직종별 가입건 인적속성 분포(2021년 10월)

(단위: %, 만 원)

		여성 비중	연령대별 분포					월평균 임금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상용
분야	창작 전체	66.8	31.6	36.9	20.5	9.1	1.9	188	230
	실연 전체	50.2	31.0	36.4	20.7	9.3	2.6	211	392
	기술지원 전체	48.4	33.4	34.8	21.1	8.8	2.0	200	293
부문	문학 전체	77.2	24.0	39.6	23.5	10.1	2.7	190	220
	미술 전체	65.6	21.9	41.9	21.4	11.5	3.4	139	153
	사진 전체	36.1	12.9	32.7	25.9	18.4	10.2	130	147
	건축 전체	19.0	9.5	19.0	71.4	0.0	0.0	202	507
	음악 전체	51.9	32.2	39.4	19.6	6.8	1.9	72	<b>122</b>
	국악 전체	52.8	26.5	32.5	17.7	15.1	8.3	56	<b>93</b>
	무용 전체	50.3	46.6	30.0	14.4	7.7	1.3	91	<b>130</b>
	연극 전체	45.2	29.0	41.0	21.3	7.7	1.0	166	217
	영화 전체	37.2	29.2	35.7	24.9	8.6	1.6	<b>338</b>	562
	연예 전체	55.1	30.9	36.3	21.9	8.7	2.3	<b>285</b>	419
	만화 전체	75.4	37.8	29.4	17.6	13.7	1.6	151	164
	기타 전체	55.6	34.1	36.4	20.0	7.8	1.7	189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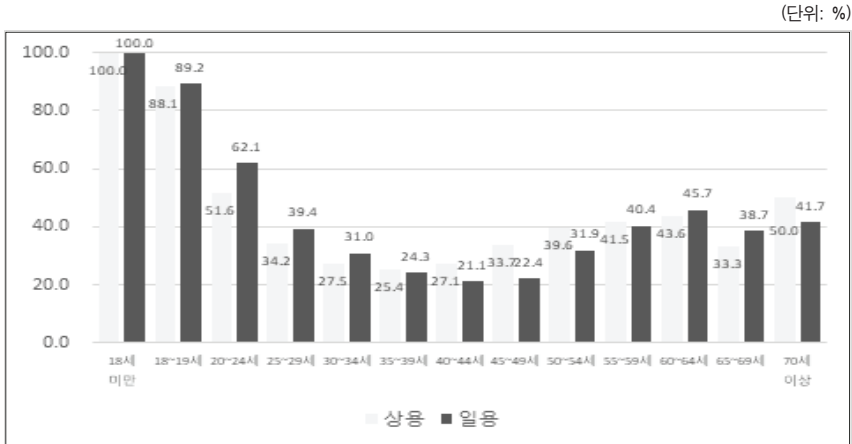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표 3-6〉은 직종별 인적 속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부문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역시 청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 비중이 높은 창작 분야와 일용 가입자의 비중이 높은 음악, 국악, 무용 부문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 세 부문은 상용 가입자의 평균임금 수준도 낮게 나타난다. 영화와 연예 부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는 청년층이 많아 기존에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가입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상실 자료와 예술인 고용보험 자료를 결합하였다. 2021년 10월까지 가입자의 단순 누적치인 28만 건 중 33.1%인 93천 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건이다. 즉,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생애 최초 고용보

험에 가입하였다. 고용보험에 예술인으로 최초 취득한 가입자는 2021년 10월 기준 상용 가입자의 33.0%, 일용 가입자의 35.3% 수준이다.

[그림 3-3] 연령대별 고용보험 최초 가입자 비율(2021년 10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자료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취득 후 현재까지 상실 이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

연령대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그림 3-3]에서 보듯이 U자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 25세 미만에서 최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비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고 30대 후반과 40대에서 비중이 가장 낮다. 50대 이상 가입자의 최초 가입 비율은 30대보다 높다. 고용보험에 최초 가입한 예술인 가입자 정보를 개인 단위로 정리하면 총 28천 명이며 그중 여성 비중은 57.7%로 여성이 더 많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이 최초 가입이 아닌 예술인 가입자 정보는 누적 총 188천 건이며, 이를 개인 단위로 정리하면 54천 명이다. 54천 명의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 후 자격 상실 이력은 총 65만 건이다. 기존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이력 건에는 동일인의 상실 건수가 모두 합산되었다. 전체 상실 이력에서 여성의 상실 이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이며 개인 단위로는 52.4%로 높아진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반복 상실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8.8%, 30대 36.2%로 청년 비중이 높다.

〈표 3-7〉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존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력 분포

(단위: 건, %, 개월)

	상실건		여성 비중	연령대 (열합계=100)					평균 근속 기간
	수	분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농림어업	49	0.0	36.8	0.0	0.0	0.0	0.0	0.1	12.0
광업	13	0.0	7.8	0.0	0.0	0.0	0.0	0.0	11.1
제조업	7,495	5.6	38.3	5.4	5.5	5.7	5.4	6.5	14.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3	0.0	54.8	0.0	0.1	0.0	0.0	0.1	15.7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08	0.1	37.0	0.1	0.1	0.1	0.1	0.2	10.3
건설업	2,011	1.4	35.7	0.7	1.2	1.9	1.5	3.2	16.1
도소매업	10,598	8.2	54.3	<b>13.3</b>	8.4	6.2	5.2	5.8	9.7
운수업	1,324	0.9	26.3	0.7	0.7	1.0	1.6	2.3	12.6
숙박및음식점업	7,990	6.1	51.9	<b>17.6</b>	5.2	2.0	1.8	2.8	6.6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2,320	<b>19.0</b>	46.5	<b>24.3</b>	<b>22.1</b>	<b>15.8</b>	10.7	8.2	12.7
금융및보험업	895	0.7	61.1	0.5	0.7	0.9	0.6	1.1	18.7
부동산업및임대업	1,396	1.0	39.8	0.9	1.0	1.2	1.1	1.7	14.1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829	5.4	50.9	5.1	6.0	5.3	4.4	2.9	11.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2,288	10.2	51.3	14.7	13.4	6.3	3.7	6.3	9.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4,896	3.2	53.1	2.6	2.9	3.1	5.3	5.9	7.3
교육서비스업	44,945	<b>26.4</b>	48.5	4.1	<b>19.2</b>	<b>39.9</b>	<b>47.6</b>	<b>39.7</b>	5.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410	1.9	76.7	1.3	1.7	1.8	3.2	5.9	12.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229	6.3	47.0	6.6	8.0	5.2	4.0	3.7	13.2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947	3.4	55.9	2.3	3.9	3.6	3.5	3.4	10.7
가구내고용활동등	14	0.0	59.2	0.0	0.0	0.0	0.0	0.1	5.0
국제및외국기관	8	0.0	82.4	0.0	0.0	0.0	0.0	0.0	33.7
계	647,928	100.0	49.1	100.0	100.0	100.0	100.0	100.0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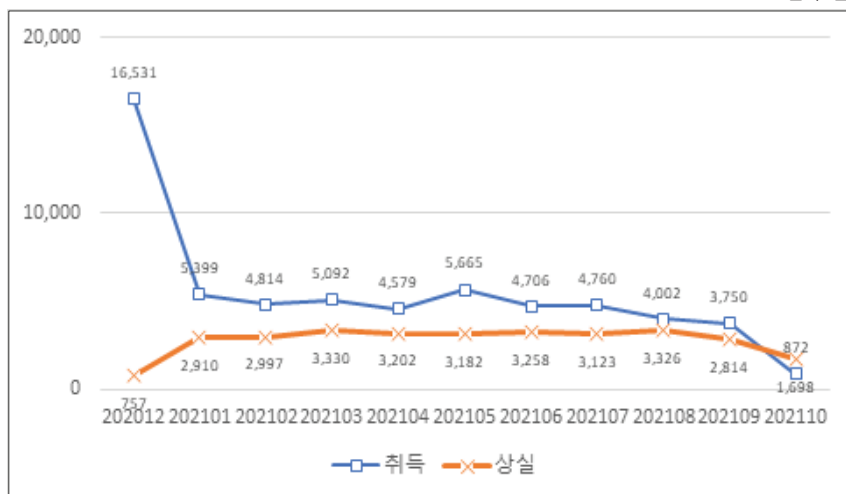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기준

현재 예술인이 과거에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상실한 이력의 산업별 분포를 <표 3-7>에 나타냈다. 상실한 이력 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전체 상실 이력 건의 26.4%를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업, 19.0%를 차지하는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도소매업 8.2%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 40대 이상의 상실 이력 건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비중도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비중은 어느 연령대에서도 10%를 하회한다. 이처럼 상실한 일자리에서 평균적인 근속기간은 9.8개월, 중위값은 4.4개월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일자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에서 근속기간은 5.6개월로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

[그림 3-4] 월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취득과 상실(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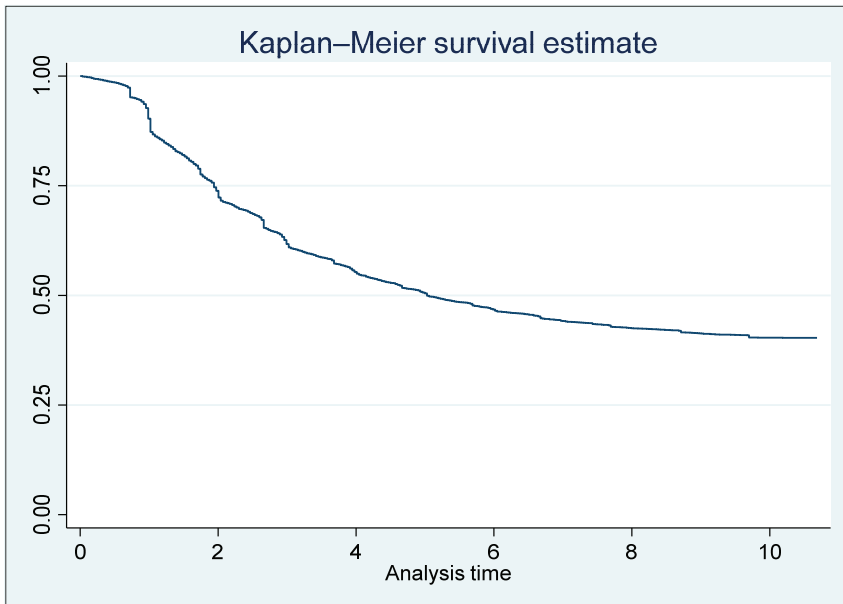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이와 같은 짧은 근속기간은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험된다. 아직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된 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정보가 많은데, 지금까지 취득 신고 된 6만 건의 상용 예술인 가입 건 중 절반 이상은 상실 신고가 되었다. 상실 신고된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2.5개월, 우측 절단을 고려하여 유지된 일자리에서 마감 시점을 2021년 10월 31일로 부여하여 전체 취득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계산하면 4.4개월로 증가한다. [그림 3-5]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일자리의 절반은 약 5개월 후 상실하였다.

[그림 3-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 유지기간의 생존함수(상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분야와 부문을 불문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유지한 기간은 상용 예술인 중에서도 매우 짧게 나타난다. 그러나 상용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만 지난 11개월 내 인당 평균 1.7회 반복 가입이 되었다. 짧은 기간 유지하지만 반복 가입하는 예술인 일자리의 속성은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는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

에서 더 많은 유형을 대표하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속과 변화, 실업급여 수급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3-8> 예술인 직종별 유지기간과 평균 반복 취득 횟수

(단위: 개월,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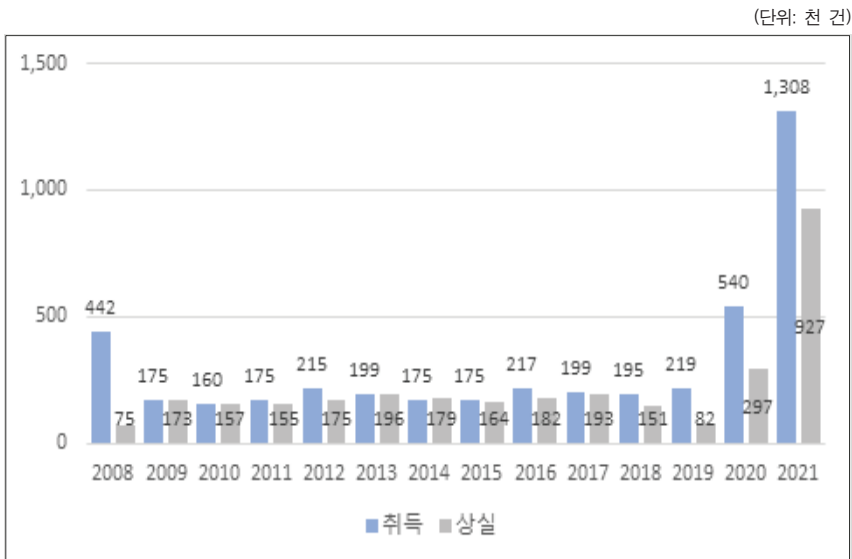
		유지기간		유지일자리 비율	반복 취득 횟수
		상실일자리	유지일자리 포함		
분야	창작 전체	2.5	4.5	(51.6)	1.6
	실연 전체	2.5	4.3	(48.6)	1.7
	기술지원 전체	2.6	4.3	(51.6)	1.8
부문	문학 전체	2.8	5.1	(55.1)	1.5
	미술 전체	2.1	2.9	(75.6)	1.3
	사진 전체	1.8	3.6	(50.7)	1.4
	건축 전체	3.6	4.0	(55.6)	1.7
	음악 전체	1.8	3.7	(38.9)	1.4
	국악 전체	2.3	3.9	(43.9)	1.5
	무용 전체	1.9	3.0	(50.4)	1.7
	연극 전체	2.1	2.7	(68.8)	2.0
	영화 전체	2.7	3.6	(58.5)	1.8
	연예 전체	3.0	5.1	(45.2)	1.7
	만화 전체	3.1	7.3	(21.2)	1.3
	기타 전체	2.5	4.7	(45.5)	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

##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

2008년 7월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까지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특고 산재보험 취득 건은 자료의 추출 시점이 11월까지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1,251건 건으로 기존 어느 때보다 많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제도가 시작된 2008년보다도 2020년에 취득 건이 더 많았다. 2012년, 2016년, 2019년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2020년과 2021년의 제도변경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적용 범위 등의 제도변경이 직접적인 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자를 늘렸다는 점은 [그림 3-6]에서 확인된다. ‘시행령’의 개정안이 발효된 7월에 곧바로 특고 산재보험 가입 자격의 취득이 매우 많이 증가하였다. 단, 개정 발효 직전에 상실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6] 연도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자격 취득 및 상실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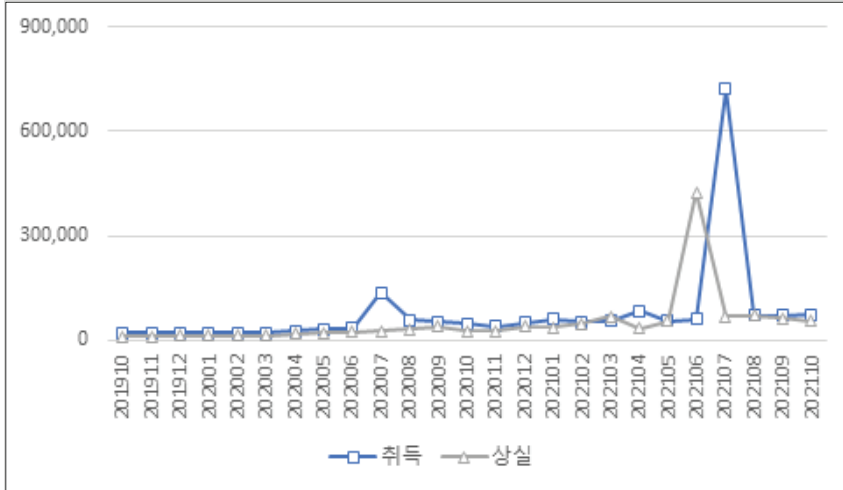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주: 2021년의 취득 및 상실 건수는 10월까지의 정보만을 포함함



[그림 3-7]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취득 및 상실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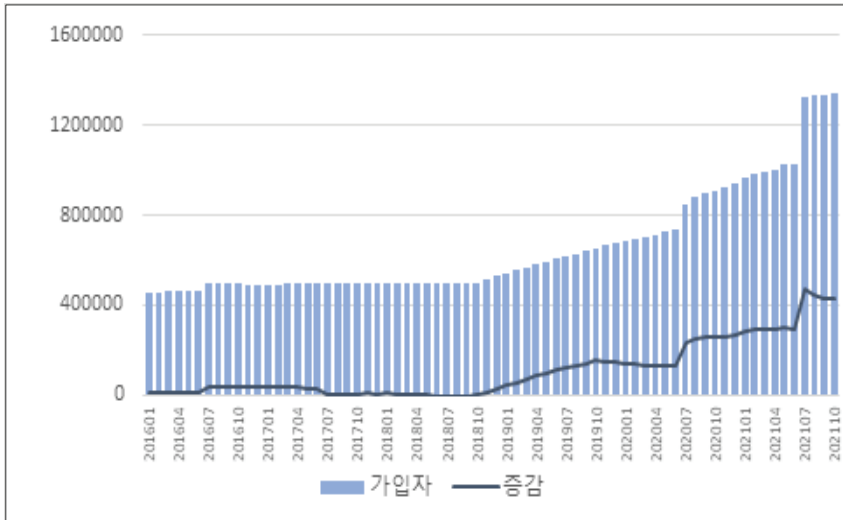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그림 3-8]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수(중도 이탈 포함)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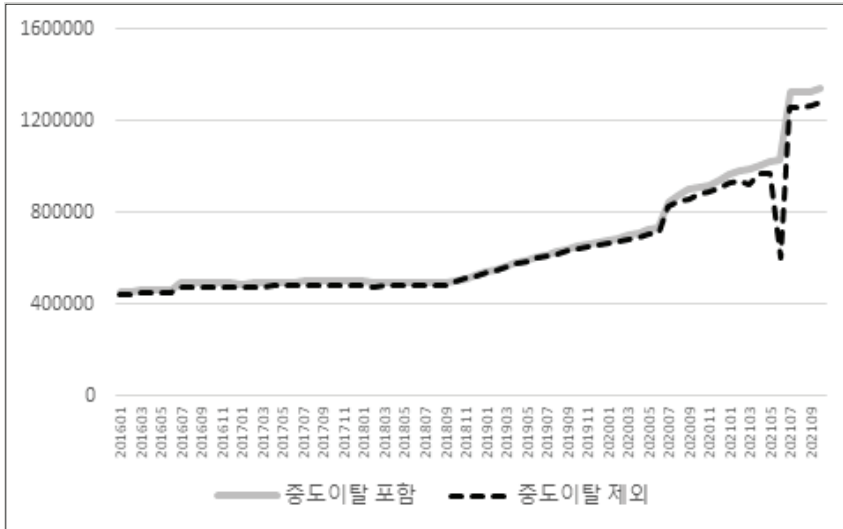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 주: 1) 해당 월에 가입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당월에 상실한 중도 이탈자도 포함
- 2) 동일인이 다른 취직일에 반복 취득한 경우 별도의 건으로 보고 합산하여 산출

[그림 3-9] 중도 이탈 포함 여부에 따른 월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수

(단위: 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 (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2021년 10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자격을 유지한 일자리의 수는 취득한 달에 상실하는 중도 이탈자를 포함하면 총 134만 개, 중도 이탈자를 제외하면 129만 개이다. 중도 이탈 일자리의 수는 2021년 6월 42만 개로 돌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변경된 제도의 시행 직전에 나타난 변화인데,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제한으로 재취득이 불가피한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129만 개의 일자리를 개인 단위로 환산하면 가입자 수는 98만 명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인이 단기간 가입 자격을 취득하였다 상실하고 반복 취득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가 시작된 이후로 신고된 모든 취득 건 440만 개는 222만 명의 자료이며, 그중 117만 명만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반복 가입한 경험이 있는 나머지 개인은 평균적으로 약 네 번 취득한 것이다.

〈표 3-9〉 직종별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 분포

(단위: 천 건, %)

	가입 일자리				분포		
	전기간	19년 10월	20년 10월	21년 10월	19년 10월	20년 10월	21년 10월
보험설계사	2,535	459	518	<b>749</b>	71.4	58.8	58.2
건설기계조종사	36	14	14	14	2.1	1.5	1.1
방문강사	346	57	66	95	8.8	7.5	7.4
골프장 캐디	210	41	47	70	6.3	5.4	5.5
택배기사	126	21	39	69	3.2	4.4	5.4
퀵서비스기사	669	19	40	<b>104</b>	3.0	4.6	8.1
대출모집인	37	11	12	18	1.7	1.4	1.4
신용카드회원모집인	106	22	25	25	3.4	2.9	1.9
대리운전기사	1		0	1		0.0	0.1
방문판매원	211		73	82		8.2	6.4
방문점검원	66		24	26		2.7	2.0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6		2	3		0.3	0.2
화물차주	40		19	19		2.2	1.5
소프트웨어기술자	14			11			0.9
계	4,404	643	881	1,286	100.0	100.0	100.0

자료와 주: [그림 3-8]과 동일

〈표 3-9〉는 직종별 산재보험 가입 현황이다. 2021년 10월과 2020년 10월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증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새로 포괄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아닌 보험설계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단지 포괄 직종의 확대가 아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제한된 결과로 보인다. 2021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 제외를 신청했던 일자리카지 적용 제외 인정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에 간단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기에 가입 대상이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자리에 대한 포괄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의 인적속성별 분포(2021년 10월)

(단위: 천 명, %)

	가입자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보험설계사	529	<b>70.3</b>	5.3	16.1	29.5	<b>32.6</b>	16.5
건설기계조종사	13	1.2	0.2	2.5	11.7	<b>34.8</b>	<b>50.8</b>
방문강사	68	<b>91.5</b>	8.0	19.3	<b>39.1</b>	<b>31.3</b>	2.3
골프장 캐디	48	<b>80.3</b>	25.0	<b>30.9</b>	<b>32.7</b>	11.1	0.3
택배기사	59	6.9	7.1	22.1	<b>34.6</b>	26.8	9.4
퀵서비스기사	99	9.0	20.6	<b>30.5</b>	28.9	14.9	5.0
대출모집인	13	37.1	8.7	24.3	<b>40.8</b>	21.5	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18	<b>72.7</b>	8.3	13.7	18.7	<b>37.1</b>	22.2
대리운전기사	1	0.1	0.6	6.9	<b>30.3</b>	<b>56.6</b>	5.6
방문판매원	76	<b>79.6</b>	4.3	16.4	24.4	<b>32.1</b>	22.7
방문점검원	25	<b>78.0</b>	4.5	16.2	<b>39.8</b>	<b>35.6</b>	3.9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3	0.7	5.6	<b>33.7</b>	<b>45.5</b>	13.8	1.5
화물차주	19	0.5	0.8	6.1	25.9	<b>39.9</b>	27.3
소프트웨어기술자	11	25.3	4.8	<b>31.1</b>	<b>47.3</b>	15.9	0.9
계	982	59.8	7.9	18.8	30.4	29.2	13.7

주: 1) 해당 월에 가입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당월에 상실한 중도 이탈자도 포함

2) 동일인이 다른 취직일에 반복 취득한 경우 가장 최근 취득한 것을 기준으로 직종 구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인적 속성에 따른 분포는 특고 직종에 따라 편차가 크다.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일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까닭은 높은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있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몇 개 직종이 있는데,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의 여성 비중은 70% 이상이다. 각각의 특고 직종에서 특정 성별의 편중 현상은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연령대 또한 직종에 따라 분포가 달리 나타난다.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20대와 30대 청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대리운전기사는 50대가 56.6%이고 건설기계조종사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지난 7월부터 적용 범위에 포괄된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남성, 30대와 40대 핵심 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표 3-11> 고용보험 특고 가입자의 인적속성별 분포(전체 취득건)

(단위: 천 명, %)

	산재 분포*	가입 자	직종 분포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보험설계사	53.8	261	50.5	75.6	5.0	14.6	<b>30.9</b>	<b>37.8</b>	11.7
건설기계조종사	1.3	14	2.6	0.5	1.0	5.8	18.0	<b>44.8</b>	<b>30.4</b>
방문강사,교구강사	7.0	37	7.2	91.4	7.1	15.6	<b>39.2</b>	<b>36.2</b>	1.8
택배기사	6.0	47	9.1	5.5	7.9	23.9	<b>35.7</b>	26.7	5.8
대출모집인	1.3	8	1.5	35.9	10.1	23.2	<b>41.1</b>	21.9	3.8
신용카드회원모집인	1.8	8	1.5	79.2	8.8	10.6	14.4	<b>44.0</b>	22.3
방문판매원	7.7	55	10.6	72.9	6.2	20.0	29.8	<b>32.4</b>	11.5
방문점검원	2.6	26	5.1	77.5	4.5	16.0	<b>40.0</b>	<b>35.8</b>	3.6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0.3	3	0.5	1.0	5.9	<b>34.5</b>	<b>45.5</b>	13.0	1.1
화물차주	1.9	13	2.5	0.4	1.0	6.6	28.3	<b>43.7</b>	20.4
방과후강사		46	9.0	80.9	10.8	25.1	<b>41.1</b>	19.9	3.2
계	83.7	518	100.0	65.9	6.0	16.8	<b>32.8</b>	<b>34.5</b>	10.0

\* 비교를 위해 <표 3-9>의 2021년 10월 기준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의 직종 분포를 함께 제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 (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한편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연구자용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2021년 7월 1일로 시작된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구체적인 가입 현황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MDB에 적재된 일부 정보를 활용하여 예비적 분석을 하고자 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성립이 입력된 정보는 데이터를 추출한 현재 시점에 총 581천 건이며, 이는 518천 명의 정보이다.<sup>11)</sup>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이 비슷한 수준으

11) 2021년 7월에 신고된 취득건이 463천 건, 8월과 9월에 각각 43천 건, 10월에 31천 건이

로 높아진 시점은 제도시행 후 약 4년 후인 2012년이였다. 2008년 말에 특고 산재보험 가입은 총 43만 건이었고 꾸준히 늘었으나 택배기사와 전속 퀵서비스 기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2012년 7월부터 53만 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물론 특고 고용보험이 특고 산재보험보다 시작부터 더 많은 직종을 포괄하기도 했지만, 현재 산재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저항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496천 명 중 여성의 비중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 높은 65.9%이다. 연령대별 분포도 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슷하지만 50대 이상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제도적으로 안착하였으므로 현재 산재보험 가입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가입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비록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포괄 범위는 작지만,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고 산재보험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취득 건의 직종 분포는 유사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빠져 있지만 방과 후 강사가 포함되었다. 퀵서비스기사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취득 건의 10.1%를 차지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취득 건에서는 방과후강사가 9.0%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특고에 가입 신고한 518천 명 중 54천 명을 제외한 464천 명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다. 결합되지 않은 고용보험 특고 가입자의 78.8%가 방과 후 강사이지만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등 다른 직종도 분포한다. 개인 단위에서 산재보험 특고 이력과 결합한 결과를 <표 3-12>에 제시하였다.

고용보험 특고 가입자의 산재보험 특고 가입 이력은 1,282천 건이며 이는 464천 명의 자료이다. 이 중에서 산재 특고 가입 이력이 2021년 10월 현재 유지되고 있는 436천 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특고에 모두 가입한 가입자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sup>12)</sup>은 단순

지만 아직 시계열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12) 산재보험의 현재 가입자는 취득일과 상실일 정보를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나 고용보험은

가입자 총계로 계산하면 45.0%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직종으로 제한하여 계산하면 54.7% 수준이다. 그러나 직종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데,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방문점검원으로 90%를 상회하고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50%를 하회한다. 아직은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가입자가 산재보험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지속적인 가입 확대가 기대된다.

<표 3-1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특고 가입자 분포

(단위: 천 명, %)

고보 가입여부 산재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고보 가입률 {B/(A+B)} ×100}
	미가입	전체	현재	전체	현재	전체	현재	
분류 기준	전체	전체	현재	전체	현재	전체	현재	
기준 직종	고보	산재	산재(A)	고보	고보	산재	산재(B)	
보험설계사	2	989	247	259	251	259	251	50.4
건설기계조종사	5	14	6	8	7	8	7	52.5
방문강사	1	189	30	37	35	38	36	54.5
골프장 캐디		<b>79</b>	<b>46</b>			<b>0</b>	<b>0</b>	
택배기사	1	29	14	46	44	46	44	76.0
퀵서비스기사		<b>287</b>	<b>114</b>			<b>2</b>	<b>1</b>	
대출모집인	0	13	5	8	7	8	7	58.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0	41	7	8	7	8	7	47.1
대리운전기사		<b>1</b>	<b>1</b>			<b>0</b>	<b>0</b>	
방문판매원	1	82	42	53	44	55	44	51.4
방문점검원	0	9	2	26	25	25	24	93.5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0	1	1	3	2	2	2	81.2
화물차주	0	11	7	13	12	13	12	63.5
소프트웨어기술자		<b>14</b>	<b>12</b>			<b>0</b>	<b>0</b>	
방과후강사	42			4	1			
계	54	1,758	532	464	436	464	436	54.7

주: 최종 가입 직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기준 ‘전체’는 현재 가입 상태가 아닌 일자리까지 포괄하고 ‘현재’는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유지된 경우에만 도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 원자료(추출일: 2021년 11월 16일)

정보가 불완전하여 추출일까지의 모든 자료를 현재 가입자로 상정하였다.

## 제5절 결론과 시사점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제도적 허점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 국민고용보험’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대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산재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직종을 늘렸을 뿐 아니라 간단히 신고로 가능했던 적용 제외를 어렵게 하였다. 고용보험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불안정한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예술인을 먼저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7월부터 포괄하게 되었다.

아직 제도적 확대가 시작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각지대 축소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확대의 시작 단계에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2021년 8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약 45%가 1개월 미만 단기 예술인이라는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의 ‘평균적인’ 상태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고용보험보다 관대하게 설계되어, 가입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내에서만 평균적으로 1.7회 반복 또는 이중 취득하였다. 신고한 일자리에서 짧은 유지 기간과 반복 또는 이중 취득이 예술인의 노동시장 안정성과 복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특고 산재보험의 가입이 2021년 7월에 급격히 증가한 배경으로 적용 대상의 확대 못지않게 적용 제외를 어렵게 만든 제도적 변경이 주효했다. 산재보험 자료의 특성상 수치를 완전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입 일자리 수는 1년 전 881천 개에서 2021년 10월 1,286천 개로 크게 늘었으며 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9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은 특고 산재보험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하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는 581천 개, 가입자 수는 518천 명으로 늘고 있다. 이는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시행 후 4년이 지났을 때 도달한 수치와 비교된다. 현재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직종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54.7% 수준이다. 이와 같은 가입의 빠른 확대는 포괄하는 대



상이 명확하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특고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명시적 모집단이다. 사각지대를 개념적으로 밝히는 것만큼이나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드러내는 작업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석

### 제1절 서론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은 2020년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OECD의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 실질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예외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이 증가한 중국 역시 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OECD, 2021). 한국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실질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2020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2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해 2분기에는 2.7%, 3분기에는 1.1%, 4분기에는 1.4% 전년 동기 대비 실질국내총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게 된 경제충격은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취업자 수는 2,690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1만 8천 명,

0.8%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0.3%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았던 2020년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3월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 12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중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일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설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차에 걸쳐 지급되었다. 특히 2차부터 4차까지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자의 다수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본 장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자 중 상당수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충격에 취약한 상당수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및 프리랜서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특고 및 프리랜서를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분석에는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DB와 연계해 필요한 변수를 보완한 자료를 이용했다.

## 제2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였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로,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 로 정의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을 경우 <표 4-1>과 같이 근무 형태 또는 직무 내용상 특고 및 프리랜서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지원 자격을 인정했다.

<표 4-1> 특고 및 프리랜서 예시

구분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교육 관련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헬스, 골프) 및 트레이너, 방과후학교 강사 등
운송 관련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관련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자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처리지침

특고 및 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국한하였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매출액)이 5천만 원(1.5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을 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매출액)이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1.5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50% 감소했을 때 지원이 가능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자는 582,077명<sup>13)</sup>이었다.

정부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및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지급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20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는 206,330명이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로 2020년 10월과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기존과 같은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자는 171,789명이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1차, 2차,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

13) 행정DB에서 추출한 정보로 추출 시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하 2차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의 특고 및 프리랜서 규모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과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를 지원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71,070명이었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특성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컸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성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582,054명 중 여성이 390,916명으로 67.2%를 차지했다. 이후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자 중 남성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44.1%였다.

<표 4-2>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남성	191,138	81,812	71,726	31,349
여성	390,916	124,511	100,056	39,720
합계	582,054	206,323	171,782	71,06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별로 보면 신청 차수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은 특고 및 프리랜서가 신청했던 1차 긴급안정지원금에서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2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에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26.3%로 가장 컸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서는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의 특고 및 프리랜서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신청자의 수가 적었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에서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 4-3〉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연령대별 구성

(단위: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20세 미만	195	109	314	130
20세 이상 30세 미만	64,630	25,407	37,581	11,850
30세 이상 40세 미만	120,172	37,781	37,300	13,877
40세 이상 50세 미만	157,292	49,227	36,253	16,671
50세 이상 60세 미만	137,529	51,688	33,624	16,391
60세 이상	73,957	32,057	18,560	8,726
합계	553,775	196,269	163,632	67,64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부터 4차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직종 정보가 있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기타를 제외하면 보험설계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19.0%,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23.3%,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15.9%,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18.2%를 차지했다. 보험설계사 다음으로는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에서는 교육 관련 종사원, 서비스 관련 종사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에서는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관련 종사자가 비중이 컸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에서는 보험설계사 다음으로 서비스 관련 종사원, 건설기계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골프장 캐디는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비중이 가장 작았다. 하지만 3차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서는 1천 명 이상으로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고 신청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는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골프장 캐디 다음으로 그 비중이 작았으며 3차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작았다.

〈표 4-4〉 차수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별 구성

(단위: 명)

구분	1차	2차	3차	4차
보험설계사	103,973	48,116	24,283	11,539
골프장 캐디	632	311	1,768	1,068
학습지도사	22,672	4,472	2,607	1,267
건설기계 종사자	4,006	10,080	3,713	3,835
택배기사	1,461	986	1,009	886
퀵서비스기사	3,426	1,490	3,323	1,706
대출모집인	1,999	1,277	771	364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2,445	1,268	450	175
대리운전기사	22,486	9,249	8,581	1,474
방문판매원	22,272	14,023	6,824	2,845
방문교사	11,159	2,358	1,954	592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4,087	3,404	2,137	1,078
가전제품 설치기사	1,230	374	187	112
화물자동차운전사	2,657	3,423	833	470
교육 관련 종사원	102,417	19,280	15,414	3,435
운송 관련 종사원	8,404	2,523	1,486	640
여가 관광 관련 종사원	6,826	1,229	561	197
판매 관련 종사원	23,726	10,885	8,206	3,714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19,096	5,246	4,841	1,749
서비스 관련 종사원	38,295	16,547	20,398	6,701
기타	142,943	49,782	43,536	19,388
합계	546,212	206,323	152,882	63,23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 제3절 특고 및 프리랜서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를 분석하고자 했다. 중복 신청을 제거하고 자료를 결합했을 때 특고 및 프리랜서 960,061명의 정보 분석이 가능했다.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상당수를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결합한 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DB에 있는 활용 가능한 성별, 연령별 특성 정보를 보완했으며 이전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추가해 분석에 활용했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개인의 인적 속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성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960,060명으로 그중 여성이 611,335명, 63.7%였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특고 및 프리랜서의 비중이 컸다.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960,004명 중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가 254,712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도 각각 236,962명(24.7%), 204,899명(21.3%)으로 20만 명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고연령대와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역시 10만 명 이상이었으며 20세 미만 저연령대 신청자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lt;표 4-5&gt;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신청자 수	비중
성별 구성	여성	611,335	63.7
	남성	348,725	36.3
	소계	960,060	100.0
연령대별 구성	20세 미만	399	0.0
	20세 이상 30세 미만	127,699	13.3
	30세 이상 40세 미만	204,899	21.3
	40세 이상 50세 미만	254,712	26.5
	50세 이상 60세 미만	236,962	24.7
	60세 이상	135,333	14.1
	소계	960,004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이와 같은 특고 및 프리랜서의 개인적 속성은 박진희 외(2020)의 영세자영업자와 차이를 보인다. 박진희 외(2020)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신청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고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아닌,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0세 미만 연령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독립자영업자와 구분되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특성일 수 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별로 보면 기타 직종을 제외하면 보험설계사의 비중이 가장 컸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는 174,221명으로 직종을 파악할 수 있는 신청자 925,584명 중 18.8%를 차지했다. 보험설계사 다음으로는 교육 관련 종사원이 많았다. 교육 관련 종사원은 137,097명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14.8%를 차지했다. 이처럼 교육, 학습과 관련된 교육 관련 종사원, 학습지도사, 방문교사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182,074명(19.7%)였다.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으로 정확히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 관련 종사원 신청자 수는 78,283명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8.5%를 차지했다. 판매 관련 종사원과 방문판매원은 각각

44,445명, 43,618명으로 각각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4.8%,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구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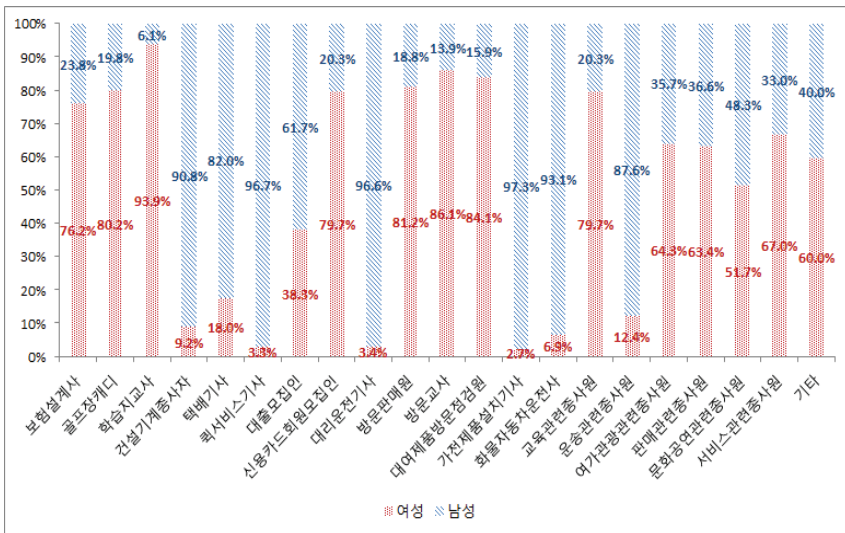
직종	신청자 수	비중
보험설계사	174,221	18.8
골프장 캐디	3,625	0.4
학습지도사	29,455	3.2
건설기계종사자	21,041	2.3
택배기사	4,128	0.4
퀵서비스기사	9,550	1.0
대출모집인	4,175	0.5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3,985	0.4
대리운전기사	39,996	4.3
방문판매원	43,618	4.7
방문교사	15,522	1.7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9,686	1.0
가전제품 설치기사	1,848	0.2
화물자동차운전사	7,195	0.8
교육 관련 종사원	137,097	14.8
운송 관련 종사원	12,601	1.4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8,593	0.9
판매 관련 종사원	44,445	4.8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29,719	3.2
서비스 관련 종사원	78,283	8.5
기타	246,801	26.7
합계	925,584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등의 직종에 해당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많지 않았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1,848명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가장 적었다. 그다음으로 적은 골프장 캐디 신청자는 3,625명이었다.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비해 3차, 4차에서 신청자가 증가하였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청자는 3,985명으로 같은 금융 상품 판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에 속한 보험설계사에 비해 매우 적었다. 대출모집인 역시 4,175명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0.5% 밖에 되지 않았다. 택배기사 역시 4,128명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택배기사 신청자는 운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신청자 중에서도 수가 가장 적었다. 대리운전기사, 운송 관련 종사원, 퀵서비스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택배기사를 합한 운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83,156명으로 직종이 파악되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925,584명의 9.0%였다.

[그림 4-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성별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의 인적 속성을 분석해보면 교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은 여성의 비중이 컸다.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교육 관련 종사원의 여성 비중은 93.9%, 86.1%, 79.7%였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직종 역시 여성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금융 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직종 중 신용카드회원 모집인과 보험설계사는 여성의 비중이 79.7%, 76.2%로 70% 이상이었으나 대출모집인의 경우 남성의 비중이 61.7%로 더 높았다.

반면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남성의 비중이 97.3%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 중 남성의 비중이 가장 큰 직종이었다. 운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에서도 남성의 비중이 컸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직종의 남성 비중은 96.7%, 96.6%, 93.1%로 모두 90%가 넘었으며 운송 관련 종사원과 택배기사 역시 남성의 비중이 80% 이상이었다. 건설기계 종사자도 남성 비중이 90.8%로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표 4-7> 성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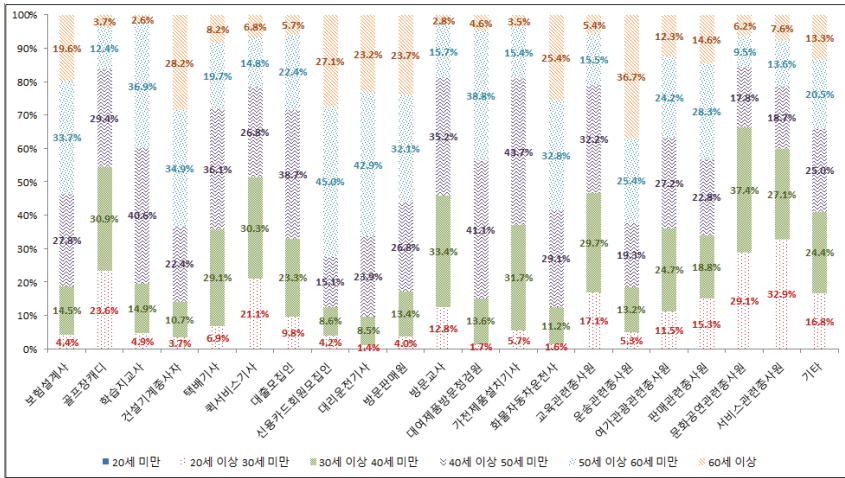
여성 비중 70% 이상 남성 비중 30% 미만	남성 비중 70% 미만 여성 비중 70% 미만	남성 비중 70% 이상 여성 비중 30% 미만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교육 관련 종사원, 보험설계사	서비스 관련 종사원, 여가 관광 관련 종사원, 판매 관련 종사원, 기타, 문화 공연 관련 종사원,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운송 관련 종사원,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연령대별로 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중 서비스 관련 종사원,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의 직종은 상대적으로 40세 미만 연령대 취업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관련 종사원은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가 3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그다음으로 큰 27.1%였다.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37.4%로 가장 컸고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29.1%로 그

다음이었다. 골프장 캐디와 퀵서비스기사 직종은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각각 30.9%, 30.3%로 가장 크고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저연령대의 비중이 컸다.

[그림 4-2]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성별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큰 직종은 남성 비중이 매우 큰 가전제품 설치 기사였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43.7%였으며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가 31.7%로 중간 연령대의 비중이 컸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도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41.1%로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38.8%였지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와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습지 교사 역시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컸으나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방문교사, 교육 관련 종사원 등의 직종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컸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운전 관련 종사원, 화물자동차운전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의 직종에서는 5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컸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45.0%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6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이 27.1%로 컸다. 대리운전기사 역시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42.9%로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23.9%로 컸으나 50세 이상 연령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설기계 종사자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34.9%로 가장 컸고 60세 이상 연령대가 28.2%로 그다음으로 컸다. 운송 관련 종사원은 6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36.7%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25.4%였다. 화물자동차운전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50세 이상 연령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 4-8> 연령대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20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거나 4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50% 이상인 직종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고 3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50% 이상인 직종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거나 5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이 50% 이상인 직종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서비스 관련 종사원, 골프장 캐디, 킥서비스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교육 관련 종사원, 학습지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여가 관광 관련 종사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운전 관련 종사원, 화물자동차운전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판매 관련 종사원

<표 4-9>는 이상의 직종별 개인적 속성을 성별, 연령대별로 분류한 것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의 특성을 보여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얻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분석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행정DB를 이용해 925,584명의 대규모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연령대별 비중에 따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분류

구 분	20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거나 4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50% 이상인 직종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고 3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비중이 50% 이상인 직종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이 가장 크거나 50세 이상 연령대 비중이 50% 이상인 직종
여성 비중 70% 이상 남성 비중 30% 미만	골프장 캐디	방문교사, 교육 관련 종사원, 학습지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남성 비중 70% 미만 여성 비중 70% 미만	문화 공연 관련 종사원, 서비스 관련 종사원,	대출모집인, 여가 관광 관련 종사원	판매 관련 종사원
남성 비중 70% 이상 여성 비중 30% 미만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운송 관련 종사원, 화물자동차운전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연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960,061명 중 655,978명, 68.3%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고용보험 일자리 특성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대분류 산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마지막 일자리가 제조업인 사람의 비중은 16.9%였다. 도매 및 소매업 일자리에 있다 현재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를 하는 사람의 비중도 16.0%였으며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로 이직한 사람도 10.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표 4-10〉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 산업 구성

(단위: 명, %)

구 분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수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105	0.2
광업	328	0.1
제조업	110,335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15	0.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4	0.3
건설업	22,063	3.4
도매 및 소매업	104,561	16.0
운수업	27,721	4.3
숙박 및 음식점업	48,272	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8,096	5.8
금융 및 보험업	20,034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160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434	4.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145	10.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711	2.3
교육 서비스업	56,417	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9,560	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794	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853	4.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1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55	0.0
합계	652,273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고용보험에 가입 경험이 있고 직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654,676명을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특고 및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중 마지막 고용보험 일자리가 사무직이었던 사람이 27.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 판매 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 19.8%였으며 전문가 및

기술자 직종에 있던 사람도 19.0%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뒤로 단순노무 근로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기능원 및 조직원 순으로 그 비중이 컸으며 농업 및 어업 속련 근로자였던 사람의 비중은 작았다.

<표 4-1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마지막 일자리 직업 구성

(단위: 명, %)

구분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수	비중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72,972	11.1
전문가 및 기술자	124,151	19.0
사무직	182,212	27.8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판매 근로자	129,909	19.8
기능원 및 조직원	59,928	9.2
농업 및 어업 속련 근로자	1,149	0.2
단순노무직 근로자	84,355	12.9
합계	654,676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348,725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2,222명으로 75.2%였다. 여성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64.4%였다. 이는 남성과 여성 특고 및 프리랜서 모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가 남성과 비교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80.2%였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78.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은 61.4%였는데 이는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40%에 가까운 사람이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고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로 진입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비중은 61.1%, 49.2%로 낮았다. 20세 이전에 특고 및 프리랜서 일을 하는 청년의 경우 대부분이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개인 속성별 구성

(단위: 명, %)

구분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비중
성별 구성	여성	611,335	393,756	64.4
	남성	348,725	262,222	75.2
	소계	960,060	655,978	68.3
연령대별 구성	20세 미만	399	20	5.0
	20세 이상 30세 미만	127,699	78,347	61.4
	30세 이상 40세 미만	204,899	161,737	78.9
	40세 이상 50세 미만	254,712	204,395	80.2
	50세 이상 60세 미만	236,962	144,847	61.1
	60세 이상	135,333	66,632	49.2
	소계	960,004	655,978	68.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직종별로 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가전제품 설치기사 직종이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1,848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606명으로 86.9%였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다음으로는 택배기사와 대출모집인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그다음으로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쿵 서비스기사(79.2%), 대리운전기사(79.2%), 운송 관련 종사원(77.2%), 화물자동차 운전자(73.8%)도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비중이 컸다.

〈표 4-13〉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구성

(단위: 명, %)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비중
보험설계사	174,221	111,546	64.0
골프장캐디	3,625	2,607	71.9
학습지도사	29,455	17,442	59.2
건설기계종사자	21,041	15,459	73.5
택배기사	4,128	3,484	84.4
퀵서비스기사	9,550	7,564	79.2
대출모집인	4,175	3,512	84.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3,985	2,082	52.2
대리운전기사	39,996	31,661	79.2
방문판매원	43,618	25,579	58.6
방문교사	15,522	10,247	66.0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686	7,107	73.4
가전제품 설치기사	1,848	1,606	86.9
화물자동차운전사	7,195	5,308	73.8
교육 관련 종사원	137,097	89,530	65.3
운송 관련 종사원	12,601	9,724	77.2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8,593	6,243	72.7
판매 관련 종사원	44,445	32,478	73.1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29,719	18,277	61.5
서비스 관련 종사원	78,283	56,940	72.7
기타	246,801	176,071	71.3
합계	925,584	634,467	68.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중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중이 52.2%로 가장 작았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청자 3,985명 중 2,082명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과 마찬가지로 50세 이상 연령대가 절반 이상인 방문판매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의 비중이

58.6%로 작았으며 보험 관련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역시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의 비중이 64.0% 수준이었다.

교육서비스와 관련한 학습지교사, 교육 관련 종사원, 방문교사 직종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59.2%, 65.3%, 66%로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평균보다 낮았다. 상대적으로 40세 미만 저연령대 취업자의 비중이 큰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61.5% 수준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직종에서 고용보험 가입 경험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연령대 구성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하지 않은 연령대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특고 및 프리랜서로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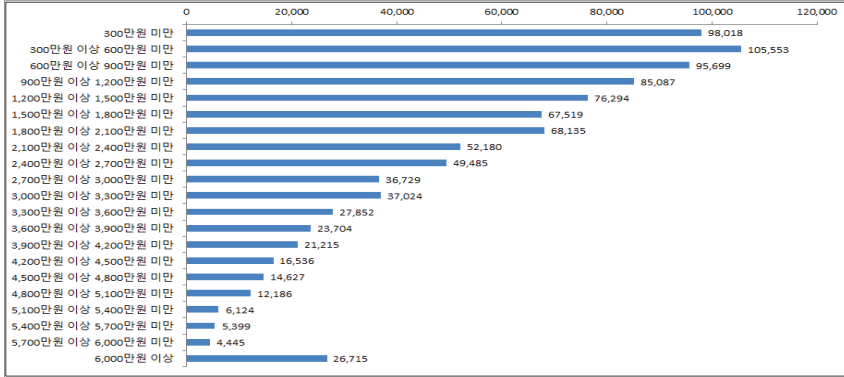
## 제4절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 분석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에 노출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1차부터 4차까지 지원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 원 또는 연매출은 2억 원 이하인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중 소득이 감소한 이들을 지원했다. 이에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다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2019년 소득 정보를 제출했다. 이에 이 절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소득을 분석했다. 이때 1차에서 4차까지 중복 신청한 이들의 경우 마지막 신고한 정보를 이용했으며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연소득이 0원 이하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1차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분석했을 때 특고 및 프리랜서 930,526명의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연소득 평균은 1,963만 2천 원이었다. 이들 중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이들은 316,417명, 34.0%였다. 월 80만 원의 소득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로 월 소득 80만 원 이상을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림 4-3] 특고 및 프리랜서 연소득 분포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연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남성 프리랜서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은 2,085만 8천 원이었으며 여성 프리랜서 신청자의 연평균 소득은 1,893만 8천 원이었다. 연소득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도 여성이 더 컸다. 여성 신청자 중 35.4%는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이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남성 신청자도 여성보다는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이 작았지만 31.5%로 마찬가지로 30% 이상이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2,183만 9천 원이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연소득도 2,045만 1천 원으로 2천만 원 이상이었다. 그다음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의 연소득이 1,945만 5천 원이었으며 60세 이상 연령대의 연소득은 1,893만 1천 원이었다.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고 특고 및 프리랜서로 입직한 이들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의 특고 및 프리랜서는 소득이 626만 3천 원, 1,489만 4천 원 수준으로 낮았다. 연소득이 96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의 비중은 연소득 순이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30.7%로 가장 낮았으며 20세 미만 연령대 특고, 프리랜서는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이들의 비중이 83.2%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표 4-14&gt;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연소득

(단위: 명, 만 원, %)

구 분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연소득 (만 원)	연소득 960만 원 미만 신청자 비중
성별 구성	여성	594,178	1,893.8	35.4
	남성	336,347	2,085.8	31.5
	소계	930,525	1,963.2	34.0
연령대별 구성	20세 미만	291	626.3	83.2
	20세 이상 30세 미만	122,417	1,489.4	43.0
	30세 이상 40세 미만	197,636	1,945.5	32.6
	40세 이상 50세 미만	247,076	2,045.1	32.3
	50세 이상 60세 미만	230,929	2,183.9	30.7
	60세 이상	132,120	1,893.1	36.7
	소계	930,469	1,963.2	34.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특성상 고소득 특고 및 프리랜서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수치가 특고 및 프리랜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소득은 과소평가했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취업자의 비중은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 하지만 93만 명 이상의 특고 및 프리랜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당수의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외부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얻는 특고 및 프리랜서를 제외한 특고 및 프리랜서 취업자의 상당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리고 고연령층과 저연령층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8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별로 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비중이 큰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직종이 2019년 연소득이 가장 높았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연소득 평균은 3,732만 4천 원이었으며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1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다음으로 연소득이 높은 직종은 남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제품 설치기사였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2019년 평균 연소득은 2,915만 7천 원이었으며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17.7%였다. 여성, 40세 미만 연령대에서 비중이 큰 골프장 캐디 직종의 연평균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골프장 캐디의 2019년 연평균 소득은 2,878만 4천 원이었다. 골프장 캐디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13.3%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 중 가장 작았다.

대출모집인과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직종 역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높았다. 대출모집인의 연소득은 2,866만 3천 원이었으며 보험설계사의 연소득은 2,705만 3천 원이었다. 남성의 비중이 큰 운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중 화물자동차운전사, 택배기사, 운송 관련 종사원도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보다는 높은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중 학습지교사 역시 연소득이 2,244만 5천 원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평균 연소득보다는 높았다.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연소득이 가장 낮았던 직종은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큰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이었다.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의 평균 연소득은 1,390만 2천 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낮았으며 연소득 960만 원 미만인 신청자 비중은 47.9%로 가장 높았다. 대리운전기사 역시 평균 연소득이 1,479만 원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낮았으며 연소득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도 39.5%로 높은 편이었다. 운송 서비스 관련 직종 중 화물자동차운전사, 택배기사는 상대적으로 연 소득이 높았지만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보다 소득이 낮았다.



〈표 4-15〉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연소득

(단위: 명, 만 원, %)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연소득 (만 원)	연소득 960만 원 미만 신청자 비중
보험설계사	170,334	2,705.3	24.1
골프장캐디	3,484	2,878.4	13.3
학습지도교사	28,899	2,244.5	21.4
건설기계종사자	20,509	1,895.8	42.7
택배기사	3,879	2,542.7	27.7
퀵서비스기사	8,921	1,695.5	36.2
대출모집인	4,056	2,866.3	20.3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3,903	3,732.4	13.9
대리운전기사	37,597	1,479.0	39.5
방문판매원	42,768	2,048.2	33.8
방문교사	15,064	1,617.6	37.3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87	2,635.0	15.0
가전제품 설치기사	1,811	2,915.7	17.7
화물자동차운전사	6,987	2,585.8	26.8
교육 관련 종사원	132,896	1,540.9	40.6
운송 관련 종사원	12,249	2,029.1	30.2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8,353	1,567.7	41.1
판매 관련 종사원	43,269	2,123.6	30.7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28,755	1,390.2	47.9
서비스 관련 종사원	75,515	1,759.9	35.6
기타	238,887	1,790.4	36.0
합계	897,623	1,979.5	33.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 관련 종사원과 방문교사 역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다. 교육 관련 종사원의 2019년 평균 연소득은 1,540만 8천 원이었으며 방문교사의 연소득은 1,617만 6천 원 수준이었다. 두 직종 모두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이 전체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평균보다 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로 보면 교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 중 학습지교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지만 교육 관련 종사원과 방문 교사의 소득은 다른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보다 낮았다.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의 평균 연소득도 1,567만 7천 원으로 낮았다.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41.1%로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건설기계 종사자 다음으로 높았다.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통해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그들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고용보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 635,855명의 평균 연소득은 1,952만 9천 원이었으며 이들 중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의 비중은 33.3%였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평균 연소득은 1,985만 5천 원이었으며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의 비중은 35.4%였다.

<표 4-16>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득

(단위: 명, 만 원, %)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연소득 (만 원)	연소득 960만 원 미만 신청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 기록 없음	294,671	1,985.5	35.4
고용보험 가입 기록 있음	635,855	1,952.9	33.3
합계	930,526	1,963.2	34.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하지만 <표 4-16>의 결과를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일수록 소득이 더 높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했으나 고용보험에 그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50세 이상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오래전에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한 뒤 특고 및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그 기록이 없을 개연성이 있다.

<표 4-17>은 5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록 유무에 따라 고용보험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구분해 그들의 연소득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352,824명 중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한 264,722명의 평균 연소득이 1,827만 4천 원으로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88,102명의 평균 연소득 1,682만 4천 원보다 많았다.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 중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인 경우는 34.8%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표 4-17>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소득  
(단위: 명, 만 원, %)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연소득 (만 원)	연소득 960만 원 미만 신청자 비중
고용보험 가입 기록 없음	88,102	1,682.4	39.4
고용보험 가입 기록 있음	264,722	1,827.4	34.8
합계	352,824	1,791.2	35.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하지만 고용보험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았던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다수는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월 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35.9%가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도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34.8%가 연소득 960만 원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5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상당수가 월 80만 원 이상이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표 4-18>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의 임금과 연소득 960만 원 미만 저소득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 1>은 로그전환한 연소득을 종속변수로 특고 및 프리랜서 개인의 특성과 소득 사이 관계를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해 분석했으며 <모형 2>는 개인의 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선 이하인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저소득 여부에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은 해당 정보가 있는 897,590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행정DB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R^2$ 는 <모형 1>이 0.025, <모형 2>가 0.033 수준으로 낮았다.

〈표 4-18〉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과 저소득 영향 요인 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성별(남성=1)		0.215 <sup>***</sup>	-0.078 <sup>***</sup>	
연령대	20세 미만	(기준)	(기준)	
	20세 이상 30세 미만	1.627 <sup>***</sup>	-0.412 <sup>***</sup>	
	30세 이상 40세 미만	1.867 <sup>***</sup>	-0.507 <sup>***</sup>	
	40세 이상 50세 미만	1.824 <sup>***</sup>	-0.500 <sup>***</sup>	
	50세 이상 60세 미만	1.838 <sup>***</sup>	-0.511 <sup>***</sup>	
	60세 이상	1.647 <sup>***</sup>	-0.458 <sup>***</sup>	
직종	보험설계사	0.533 <sup>***</sup>	-0.123 <sup>***</sup>	
	골프장 캐디	0.704 <sup>***</sup>	-0.244 <sup>***</sup>	
	학습지도사	0.490 <sup>***</sup>	-0.158 <sup>***</sup>	
	건설기계종사자	0.026 <sup>*</sup>	0.113 <sup>***</sup>	
	택배기사	0.235 <sup>***</sup>	-0.037 <sup>***</sup>	
	퀵서비스기사	-0.264 <sup>***</sup>	0.045 <sup>***</sup>	
	대출모집인	0.566 <sup>***</sup>	-0.129 <sup>***</sup>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0.897 <sup>***</sup>	-0.232 <sup>***</sup>	
	대리운전기사	-0.714 <sup>***</sup>	0.091 <sup>***</sup>	
	방문판매원	0.234 <sup>***</sup>	-0.033 <sup>***</sup>	
	방문교사	-0.006	0.00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0.721 <sup>***</sup>	-0.210 <sup>***</sup>	
	가전제품 설치기사	0.499 <sup>***</sup>	-0.122 <sup>***</sup>	
	화물자동차운전사	0.197 <sup>***</sup>	-0.042 <sup>***</sup>	
	교육 관련 종사원	-0.051 <sup>***</sup>	0.034 <sup>***</sup>	
	운송 관련 종사원	-0.072 <sup>***</sup>	-0.020 <sup>***</sup>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0.351 <sup>***</sup>	0.054 <sup>***</sup>	
	판매 관련 종사원	0.225 <sup>***</sup>	-0.054 <sup>***</sup>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0.302 <sup>***</sup>	0.116 <sup>***</sup>	
	서비스 관련 종사원	0.077 <sup>***</sup>	-0.022 <sup>***</sup>	
	기타	(기준)	(기준)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		0.004	-0.010 <sup>***</sup>
	상수		4.994 <sup>***</sup>	0.882 <sup>***</sup>
표본 수		<b>897,590</b>	<b>897,590</b>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우선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남성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대가 소득 수준이 높았으며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연령대는 가장 소득이 낮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도 소득이 낮았다. 직종별로 보면 기타 직종을 기준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순으로 소득이 높은 반면에 대리운전기사,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퀵서비스기사 순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 2>는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일 가능성이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소득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20세 미만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6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 순으로 저소득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종별로 보면 기타 직종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문화공연종사원,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퀵서비스기사 등의 직종은 소득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선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은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5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 분석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던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일부는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본 절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던 특고 및 프리랜서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규모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1차에서 4차까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이들은 모두 363,354명이었다. 이들 중 211,136명은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으

며 172,557명은 상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상용 고용보험과 특고 고용보험 모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고 고용보험과 상용 고용보험 모두 가입한 20,339명을 제외하면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190,797명이었다. 이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에도 특고 및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로 볼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우선 남성에 비해 여성 신청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신청자 중 256,527명, 42.0%, 남성 신청자 중에서는 106,827명, 30.6%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여성 신청자 중 24.3%에 해당하는 148,561명은 특고 고용보험에만 신청해 특고 일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성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 남성에 비해 특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4-19>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개인 속성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구 분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특고 고용보험만 가입
성별 구성	여성	611,335	256,527	148,561
	남성	348,725	106,827	42,236
	소계	960,060	363,354	190,797
연령대별 구성	20세 미만	399	67	4
	20세 이상 30세 미만	127,699	43,297	7,097
	30세 이상 40세 미만	204,899	71,233	27,826
	40세 이상 50세 미만	254,712	105,899	62,451
	50세 이상 60세 미만	236,962	105,170	71,391
	60세 이상	135,333	37,688	22,028
	소계	960,004	363,354	190,79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44.4%이다. 그다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0대(41.6%), 30대(34.8%), 20대(33.9%), 60세 이상 연령대(27.8%), 20세 미만 연령대(16.8%) 순으로 높았다.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이들의 비중은 50대, 40대, 60세 이상 연령대 순으로 높았는데 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중 연령대가 높을수록 특고 및 프리랜서 형태로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별로 보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직종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직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의 비중도 높아 특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노동시장에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중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의 비중도 작았다.

&lt;표 4-20&gt;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직종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특고 고용보험만 가입
보험설계사	174,221	124,196	101,912
골프장캐디	3,625	334	151
학습지교사	29,455	20,183	17,287
건설기계종사자	21,041	6,404	4,480
택배기사	4,128	1,806	1,254
퀵서비스기사	9,550	1,224	91
대출모집인	4,175	2,424	1,804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3,985	2,895	2,273
대리운전기사	39,996	5,816	383
방문판매원	43,618	17,542	12,008
방문교사	15,522	7,037	4,506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686	8,524	7,569
가전제품 설치기사	1,848	1,050	155
화물자동차운전사	7,195	1,483	1,045
교육 관련 종사원	137,097	45,126	12,934
운송 관련 종사원	12,601	2,459	353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8,593	2,950	105
판매 관련 종사원	44,445	11,975	3,837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29,719	9,184	495
서비스 관련 종사원	78,283	18,896	2,273
기타	246,801	60,298	10,776
합계	925,584	351,806	185,69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을 구분해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54,109명, 38.7%였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없었던 사람 중 신청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35.9%였다.

<표 4-21>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특고 고용보험만 가입
고용보험 가입 기록 없음	304,083	109,245 (30.1) [35.9]	70,230 (36.8) [23.1]
고용보험 가입 기록 있음	655,978 (68.3)	254,109 (69.9) [38.7]	120,567 (63.2) [18.4]
합계	960,061	363,354 [37.8]	190,797 [19.9]

주: ( ) 안은 열 합계에 대한 비중, [ ] 안은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 비중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50세 미만 연령대로 국한할 경우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는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16,130명으로 42.8%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4,947명, 36.6%이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이후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령대를 제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고 고용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작았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임금근로 일자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특고 형태가 아닌, 상용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4-22> 5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이전 고용보험 가입 경험 유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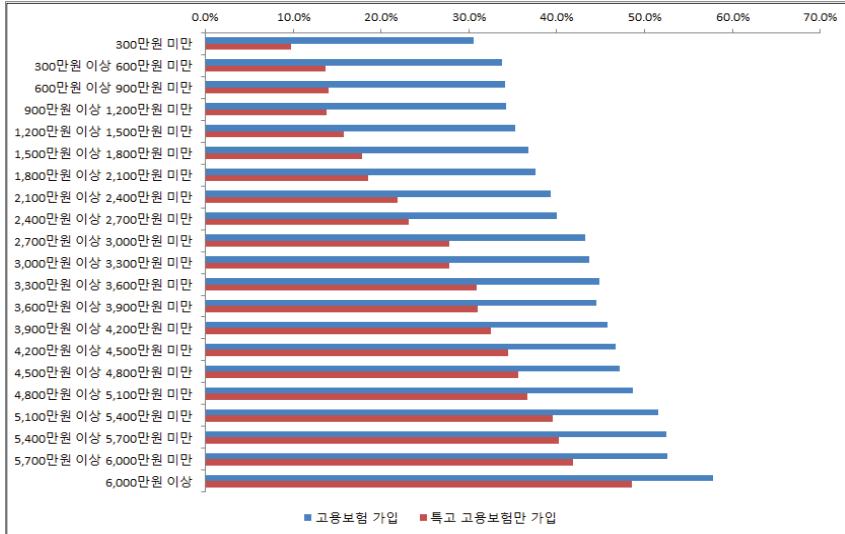
(단위: 명)

직종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고용보험 가입	특고 고용보험만 가입
고용보험 가입 기록 없음	90,146	32,950	14,947
고용보험 가입 기록 있음	271,418	116,130	47,663
합계	361,564	149,080	62,61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그림 4-4]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 소득 구간별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DB

소득 수준별로 보면 2019년 연소득이 낮았던 사람일수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이들의 비중이 작았는데 이는 낮은 소득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4차에 걸친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1차부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인적 속성을 분석해 보면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컸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신청자가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60세 이상 고연령대와 20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 순으로 많았다. 20세 미만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직종별로 보면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중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교육 관련 종사원이 많았다. 반면 가전제품 설치기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등에 해당하는 직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는 많지 않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해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종, 남성 비중이 70% 이상인 직종 등으로 분류가 가능했다(〈표 4-7〉 참조). 교육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의 경우 여성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택배기사 등 운송 서비스 관련 특고 및 프리랜서 일자리에서는 남성 비중이 훨씬 컸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중이 큰 직종, 30세 이상 50세 미만 연령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5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큰 직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표 4-8〉 참조) 이 장에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표 4-9〉와 같이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을 성별·연령대별 특성을 통해 구분하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DB를 연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960,061명 중 655,978명, 68.3%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 중 일부는 임금근로 일자리 경험 없이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종별로 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과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학습지 교사, 교육 관련 종사원, 방문교사 직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연소득 정보를 이용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소득 분석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연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대의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60세 이상, 20세 이상 30세 미만, 20세 미만 연령대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또한 연소득이 960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컸으며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그 비중이 컸다. 직종별로 보면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교육 관련 종사원, 방문교사,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등의 일 자리에 종사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자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상당수가 연소득 96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정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50대, 40대, 30대가 많이 가입했으며 직종별로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이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특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해 특고 일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여성일수록, 40세 이상 연령대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또한 과거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이후 특고 고용보험이 아닌, 상용 고용보험으로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이 낮았다. 이들 중 다수는 2019년 연소득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정보의 심층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제5장

# 자영업자 근로현황과 고용보험가입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2020년 기준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531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6%를 차지해 그 비중이 상당하다. 2002년 이후 전체 자영업자는 감소 추세를 보여 자영업 내부의 구조조정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초반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대면 서비스 중심의 영세영업자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확산, 배달 및 택배 수요의 증가로 일부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자영업 부문 내에서 업종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여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하는 일, 고용형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소득 변동사항, 향후 고용보험 가입의사 등을 조사하여 추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설계 및 전국민고용보험의 확대와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본 실태조사는 2020년 7월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신청자 중 1만 3,2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중 자영업자는 7,306명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하는 일과 관련한 공통질문 항목과 자영업자 대상 설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설문으로 나뉜다.<sup>14)</sup> 본 장에서는 전체 실태조사 결과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응답자들의 현재 하는 일, 코로나19 시기 경영 상황의 변화, 소득 변화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 가입 의향, 기대하는 혜택을 분석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주요 변화는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전에도 2006년 4월을 기점으로 자영업자 이더라도 가입을 원하면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으며, 2012년 1월 22일 실업급여 제도를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전 가입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제도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 가입이

14) 설문지는 부록 참고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한 가입자는 비자발적 폐업 시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표 5-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주요 변화

시점	변화
2006년 4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 신설
2012년 1월	실업급여 사업을 포함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2019년 7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2019년 9월	실업급여 제도 개편
2020년 12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 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 완화 및 지원을 통해 자영업 고용보험의 가입 확대를 노력해 왔다.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사업개시일 5년 이내에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가입요건을 폐지하여 사업 시작일과 상관없이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동결되었던 기준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고시, 적용하였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기존에 기준보수의 50% 수준이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60%로 인상하였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역시 피보험 기간에 따라 30일씩 연장되어 최소 12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가입 대상 및 방식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특성은 반영하되 보험료, 기여 기간, 구직급여 등에서 임금근로자와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현행 제도를 재설계하고자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가입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 제3절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중 자영업자 응답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전체 실태조사 응답자 중 자영업자 응답자 수는 7,306 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59세가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의 수가 각각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태조사상 자영업자의 인적 속성별 분포는 실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의 분포와는 사뭇 다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자영업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7 대 3 정도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령별 분포도 60세 이상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여성, 상대적으로 젊은 층,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5-2> 자영업자 인적 속성별 응답 현황

(단위: 명, %)

		응답자 수	응답자 비중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자영업자
전체		7,306		100.0
성별	남성	3,381	46.3	70.9
	여성	3,925	53.7	29.1
연령별	20-29세	529	7.2	3.3
	30-59세	5,583	76.4	63.9
	60-64세	672	9.2	13.8
	65세 이상	522	7.1	18.9
학력별	고졸 이하	3,400	47.0	63.2
	대졸	3,503	48.0	33.6
	대학원 이상	403	5.5	3.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 1년간 수입이 있던 일자리의 개수는 전체의 85.9%에 해당하는 6,278명이 1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 대체로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개 이상 일자리가 있었다고 응답한 1,028명 중 10%에 해당하는 102명이 두 번째 하는 일에 ‘알바’로 응답하여 고정 일자리가 존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득 변동에 따라 일시적인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지난 1년간 수입이 있던 일자리 개수 및 직업

(단위: 명, %)

		응답자 수	응답자 비중
전체		7,306	100.0
지난 1년간 수입이 있던 일 개수	1개	6,278	85.9
	2개	777	10.6
	3개 이상	25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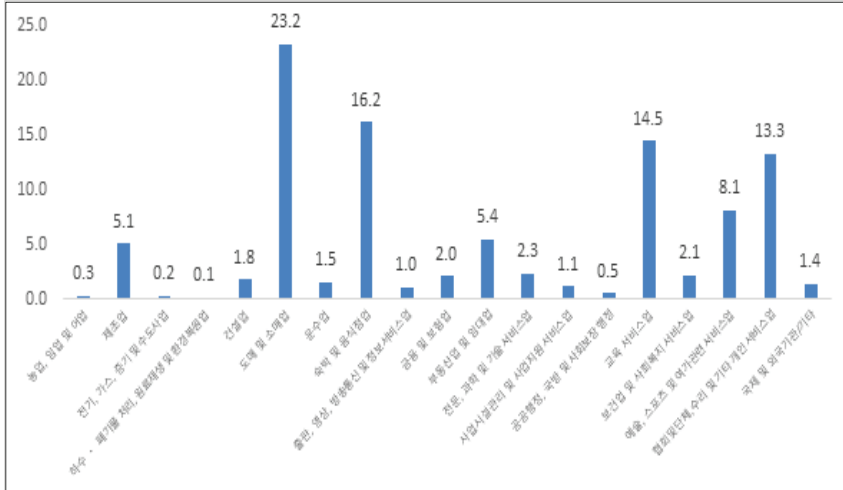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지난 1년간 소득이 가장 많았던 일자리(이하 주된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분포는 [그림 5-1]과 <표 5-4>에 나타난다. 먼저, 업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역시 전체의 13.3%를 차지했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응답자 중 개인사업자로 교육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종은 전체 응답자의 하는 일의 조사 결과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분류 수준으로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분석 결과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거나 판매종사원 등으로 일하는 영업·판매직의 비중이 전체의 45.6%였으며, 교육직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수가 1,005명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용사, 피부관리사, 웨딩플래너 등이 포함된 미용, 예식 서비스직의 비중도 전체의 7.1%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산업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lt;표 5-4&gt; 응답자 직종 (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종)

(단위: 명, %)

	응답자수	비중
전체 응답자 수	7,306	100.0
영업·판매직	3,334	45.6
교육직	1,005	13.8
미용·예식 서비스직	516	7.1
음식서비스직	510	7.0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373	5.1
경영·행정·사무직	259	3.5
운전·운송직	220	3.0
예술·디자인·방송직	177	2.4
금융·보험직	141	1.9
보건·의료직	127	1.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lt;표 5-5&gt; 계약 여부

(단위: 명, %)

	응답자수	비중
합계	7,306	100.0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한 자기 사업체 운영	1,229	16.9
별도 계약 없이 자기 사업체 운영	4,303	58.9
기타	1,774	2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계약 여부와 종사상지위를 묻는 설문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의 58.9%(4,303명)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한 자기 사업체 운영이 16.9%, 기타가 24.3%로 나타났다. 그중 기타는 학원 강사, 미용사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응답자가 고용처(학교, 학원)와 근로 기간을 정해 계약한 경우나 하는 일이 계약 관련 업무인 경우, 근무 장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포함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58.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기업 고용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체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별 종사자 수 역시 1인의 비중이 전체의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인 이하가 전체의 81.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lt;표 5-6&gt;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응답자수	비중
합계	7,306	100.0
개인기업 고용주	2,486	34.0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	4,279	58.6
법인 고용주	311	4.3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230	3.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5-7〉 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명, %)

	응답자수	비중
합계	7,306	38.3
1인	3,545	48.5
2-5인	1,994	27.3
6-10인	424	5.8
11-29인	336	4.6
30-99인	241	3.3
100인이상	166	2.3
무응답	600	8.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5-8〉 주된 일자리의 현재 근무 상태와 평균 근속기간

(단위: 명, 개월)

	현재 일하는 중		영업종료	
	응답자수	근속기간	응답자수	근속기간
합계	5,374	120.5	500	55.5
농업, 임업 및 어업	16	180.7		
제조업	237	173.0	19	3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149.8	1	5.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159.8		
건설업	79	158.6	12	20.0
도매 및 소매업	1,229	137.1	82	70.0
운수업	81	173.2	3	41.7
숙박 및 음식점업	842	95.1	88	5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6	142.4	6	35.5
금융 및 보험업	123	116.0	12	9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8	108.3	21	6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2	137.0	9	4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	149.5	8	2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	93.3	13	54.6
교육 서비스업	853	106.7	64	6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0	99.2	26	5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55	84.7	63	46.1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98	133.7	63	59.1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67	127.7	10	38.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근속기간은 지난 1년간의 주된 일자리의 시작연월과 종료연월이 응답이 모두 결측이 아닌 경우만 포함하여 7,306건 중 5,874건만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5,874건 중 현재 일하는 중이 5,374건, 영업 종료가 500건으로 대다수 자영업자가 현재도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하는 중인 경우의 근속 기간이 영업을 종료한 경우보다 약 5년 이상 근속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상태와 평균근속기간을 업종별로 살펴본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의 영업 종료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일하는 중의 평균 근속기간은 운수업(173.2개월)과 제조업(173개월)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현재 일하는 중의 평균 근속기간이 84.7개월로 전 산업 중 근속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표 5-9> 영업종료 응답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종료 여부와 영업종료 사유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중
전체	500	100.0
코로나19 발생 이전 종료	37	7.4
코로나19 발생 이후 종료	463	92.6
<b>코로나 19 발생 이후 영업종료의 종료사유</b>		
	응답자 수	비중
합계	463	100.0
개인, 가족관련 이유	45	9.7
육아	25	5.4
가사	3	0.6
심신장애	8	1.7
정년퇴직, 연로	3	0.6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	37	8.0
직장의 휴업, 폐업	53	11.4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4	0.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35	7.6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37	29.6
기타	113	24.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한편 영업 종료로 응답한 500명의 업무 종료 시점을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했을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3월 이후)에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전체의 92.6%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 종료를 한 경우의 영업 종료 사유 역시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전체의 2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장의 휴업, 폐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근무 장소나 경영하는 업장의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 응답한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의 경우 113건 중 68건이 코로나19 관련 사유였다.

이렇게 코로나 19 발생 이후 영업을 종료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사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종료사유 중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과 기타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를 응답한 경우를 산업별로 제시한 것이 <표 5-10>이다.

<표 5-10> 코로나19 관련 영업 종료 사유별 산업 분포

(단위: 명, %)

	종료사유		합계	비중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기타 중 코로나 관련		
합계	137	68	205	100
제조업	9	1	10	4.9
건설업	5	-	5	2.4
도매 및 소매업	35	7	42	20.5
운수업	2	-	2	1.0
숙박 및 음식점업	32	15	47	22.9
금융 및 보험업	6	1	7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	1	11	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	6	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	2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	1	0.5
교육 서비스업	7	17	24	1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1	5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4	22	10.7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11	21	1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 중심의 산업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종료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 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의 주된 일자리의 소득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7,306건 중 순수입이 있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 매출과 비용이 모두 결측이 아닌 6,875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의 59.7%는 순수입이 있다고 응답해 수익이 있는 경우가 적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익-적자 분포는 2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2.8%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200만 원 초과 수입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2.7%, 2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는 5.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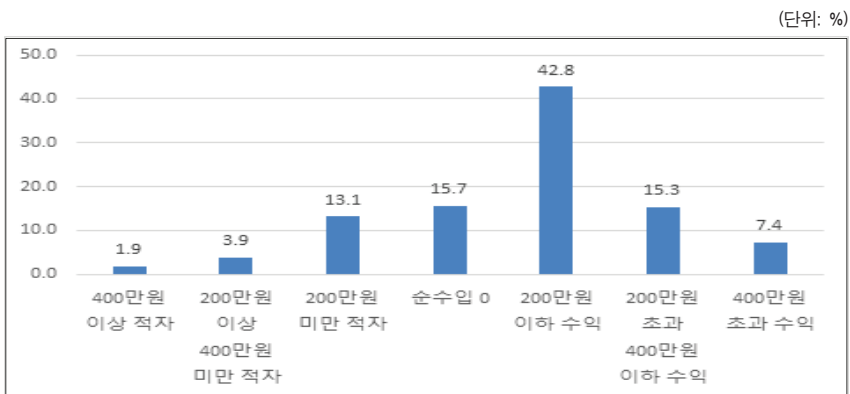
<표 5-11> 수익-적자 여부(전체)

(단위: 명, %)

업종	응답자수	비중
합계	6,875	100.0
순수입있음	4,105	59.7
매출과 비용 같음(0)	987	14.4
적자	1,186	17.3
무응답	597	8.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5-2] 수익-적자 분포(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이러한 수익-적자 분포를 산업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적자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제외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2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3.3%), 부동산업 및 임대업(21.5%) 순이었으며, 응답자 중 종사자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도 21.1%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체의 12.5%만이 적자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적지만 전체의 80% 이상이 순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순수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 업종 간의 소득분포 차이를 보였다.

<표 5-12> 업종별 수익-적자 분포(무응답 제외)

(단위: 명, %)

	응답 자수	200 이상 적자	200 미만 적자	순 수입 0	200 이하 수익	200 초과 수익
농업, 임업 및 어업	13	7.7	30.8	7.7	53.8	0.0
제조업	322	8.4	12.7	20.2	32.0	2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	12.5	6.3	0.0	25.0	56.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0.0	0.0	16.7	66.7	16.7
건설업	103	1.9	9.7	9.7	40.8	37.9
도매 및 소매업	1506	6.8	14.3	19.0	38.8	21.0
운수업	87	3.4	4.6	9.2	35.6	47.1
숙박 및 음식점업	1062	9.3	16.0	19.1	31.3	2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4	1.6	10.9	12.5	50.0	25.0
금융 및 보험업	134	1.5	7.5	8.2	57.5	2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63	3.6	17.9	14.3	49.6	1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	7.5	11.3	14.3	39.1	27.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13.3	13.3	10.7	32.0	3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	0.0	12.5	15.6	62.5	9.4
교육 서비스업	882	3.3	9.2	9.2	56.6	2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7	1.7	3.4	6.8	60.7	2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9	7.8	15.5	15.3	45.4	16.0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93	2.1	12.5	16.1	46.4	22.8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81	2.5	9.9	22.2	39.5	25.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직업별로 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업의 수익-적자 분포를 살펴보면 비중이 큰 영업판매직과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적자를 보는 경우가 응답자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판매직과 음식 서비스직은 산업의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 비중이 큰 직업으로 산업과 연계되어 해당 직업의 적자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술, 디자인, 방송직의 경우도 19.4%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 수는 적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비중이 큰 직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 의료직과 운전, 운송직의 경우 200만 원 초과 순수입이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200만 원 초과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2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적자를 본 응답자만큼 배달음식 등의 수요 증가로 순수입이 큰 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직과 운전, 운송직의 200만 원 이상 수익 비중이 높은 것 역시 코로나19로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3> 직업별 수익-적자 분포(종사자수 상위 10개 직업)

(단위: 명, %)

	응답 자수	200 이상 적자	200 미만 적자	순 수입 0	200 이하 수익	200 초과 수익
영업판매직	2,938	7.7	16.1	19.1	35.9	21.2
교육직	835	2.8	9.7	9.3	56.4	21.8
음식 서비스직	449	8.5	12.0	19.4	35.0	25.2
미용, 예식 서비스직	439	1.6	13.2	13.4	48.7	23.0
스포츠, 레크레이션직	293	4.4	8.2	10.2	57.0	20.1
경영, 행정, 사무직	225	4.4	8.9	12.0	48.4	26.2
운전, 운송직	174	2.3	9.8	10.3	44.8	32.8
예술, 디자인, 방송직	154	7.1	12.3	18.8	43.5	18.2
금융, 보험직	124	0.8	8.1	5.6	60.5	25.0
보건, 의료직	90	0.0	0.0	10.0	54.4	35.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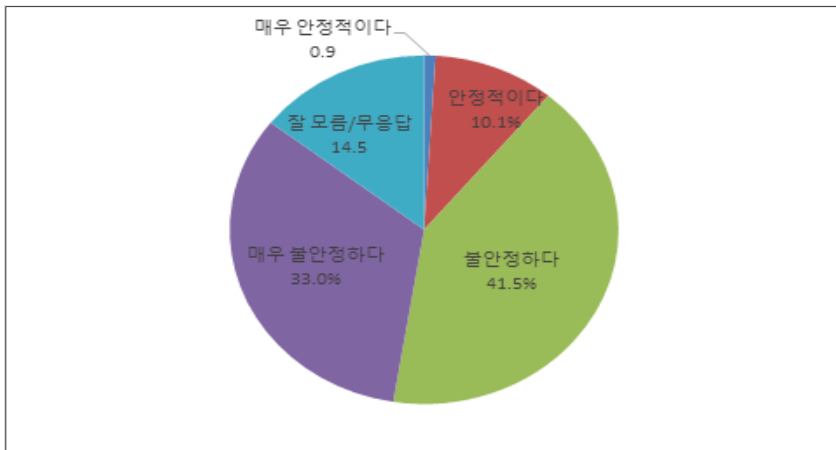
소득안정성에 대한 문항에는 7,306명 응답자 중 41.5%(3,033명)가 ‘불안정하다’, 33.0%(2,409명)는 ‘매우 불안정하다’로 대답해 전체의 74.5%가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주된 일자리의 소득 변동 정도를 알아보고자 수입이 가장 많았던 달과 가장 적었던 달의 소득을 물었고, 두 응답이 모두 결측이 아닌 3,101명 만을 대상으로 수입 감소율을 분석했다.

이때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었던 소득감소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년간의 소득 변동 정도와 비교했다.

[그림 5-3] 소득안정성 여부(전체)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실태조사 결과의 소득감소율은 지난 1년간의 변동을 의미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율의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코로나19 직전 기간인 2019년 12월~2020년 1월 또는 2019년 3월~2019년의 평균 소득, 매출과 2020년 3월과 4월 소득을 비교했을 때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소득감소율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나 변동 정도와 감소폭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운수업, 교육서비스업을 제

외한 대부분 산업의 종사자 소득감소율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득 감소가 더 심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경영, 행정, 사무직의 소득감소율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디자인, 방송직과 금융, 보험직, 영업·판매직 순으로 실태조사 결과의 소득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율과 비교해 보면, 영업판매직과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직, 음식서비스직, 미용, 예식 서비스직 순으로 실태조사의 소득감소율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산업별 소득 변동 정도 및 소득감소율

(단위: 만원, %)

	수입이 많은달	수입이 적은달	소득 감소율	긴고지 소득감소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38	16	93.5	61.5
제조업	530	121	77.1	62.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01	143	64.4	65.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87	100	74.1	57.7
건설업	441	95	78.4	65.0
도매 및 소매업	407	116	71.4	54.8
운수업	326	161	50.8	51.1
숙박 및 음식점업	455	165	63.8	4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14	150	63.9	60.8
금융 및 보험업	439	104	76.4	6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3	59	89.0	7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56	86	84.5	6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51	44	82.6	7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3	69	67.8	82.0
교육 서비스업	299	112	62.5	7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8	138	55.3	6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3	75	71.5	69.2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2	109	64.1	51.7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474	193	59.3	65.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5-15〉 직업별 소득 변동 정도 및 소득감소율(종사자 수 상위 10개 직업)

(단위: 만원, %)

	수입이 많은달	수입이 적은달	소득 감소율	긴고지 소득감소율
영업판매직	447	122	72.6	56.9
교육직	273	103	62.2	72.8
음식 서비스직	416	155	62.8	49.6
미용,예식 서비스직	287	117	59.3	46.9
스포츠, 레크레이션직	274	78	71.4	72.1
경영, 행정, 사무직	484	113	76.7	67.2
운전, 운송직	295	114	61.3	55.1
예술, 디자인, 방송직	340	80	76.4	66.8
금융, 보험직	412	105	74.4	60.3
보건, 의료직	428	179	58.0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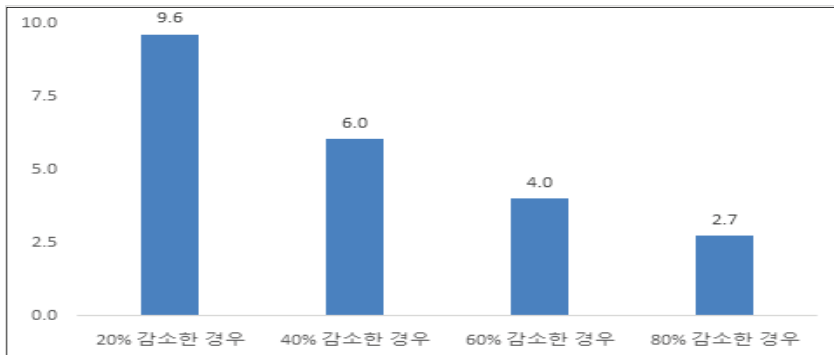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한편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변동 정도와 함께 향후 소득이 감소한다면 몇 개월 동안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응답자들은 소득이 20% 감소하는 경우 9.6개월, 40% 감소할 경우 6개월, 60% 감소한 경우에 4개월, 80% 감소한 경우에 2.7개월간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종사자 비중이 큰 상위 5개 산업에서 모두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감내 기간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수입 감소 시 감내 기간(전체)

(단위: 개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lt;표 5-16&gt; 수입 감소 시 감내기간(종사자 수 상위 5개 산업)

(단위: 명, 개월)

	응답자 수	20% 감소	40% 감소	60% 감소	80% 감소
도매 및 소매업	1,695	9.8	6.1	3.9	2.6
숙박 및 음식점업	1,181	9.4	5.9	4.0	2.7
교육 서비스업	1,056	9.7	6.2	4.1	2.8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	9.2	5.7	3.8	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92	9.1	5.8	4.0	2.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lt;표 5-17&gt; 수입 감소 시 감내기간(종사자 수 상위 5개 직업)

(단위: 명, 개월)

업종	응답자수	20% 감소	40% 감소	60% 감소	80% 감소
영업·판매직	3,332	9.7	6.1	4.0	2.7
교육직	1,005	9.8	6.3	4.2	2.9
미용·예식 서비스직	516	9.4	5.7	3.8	2.5
음식서비스직	510	9.0	5.6	3.6	2.4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373	8.8	5.6	3.9	2.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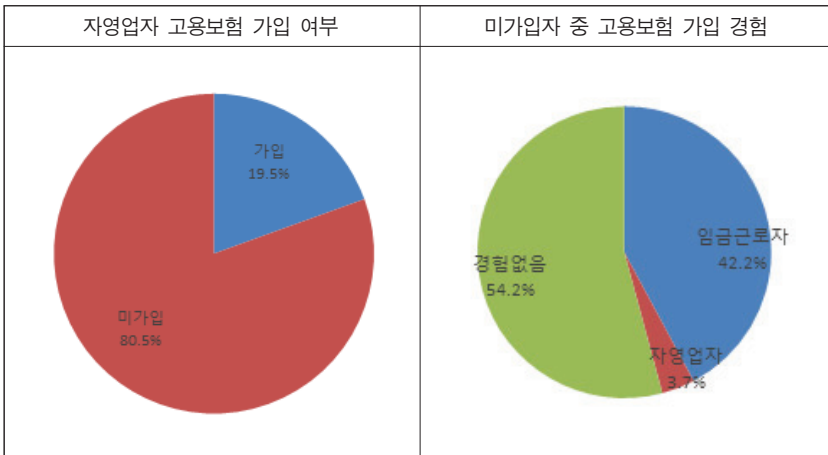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서 전체의 80.5%(5,884명)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19.5%(1,422명)가 가입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종합통계, 자영업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DB 등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7,306명 중 1,174명이 조사 기간인 2021년 8월~10월에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지식의 부재 등의 사유로 기타 고용보험과의 차별된 가입 여부 확인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제4절에서 추가 분석한다.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응답한 5,884명 중 3,187명은 가입 경험 없음, 42.2%(2,482명)는 임금근로자로, 3.7%(215명)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 경험이 없는 3,187명에게 미가입 사유를 확인한 문항에서는 고용보험에 관해서 모르거나(31.6%), 가입 자격이 안 되어서(25.5%)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15.3%),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13.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5-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경험(실태조사 결과)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5-18> 가입 경험 없음의 미가입 사유(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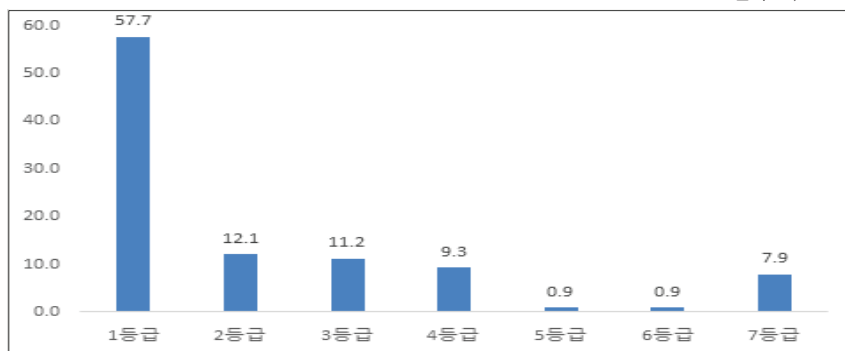
미가입 사유	응답자수	비중
합계	3,818	100.0
고용보험에 대해 모름	1,006	31.6
가입자격이 안돼서	814	25.5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아서	378	11.9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487	15.3
폐업(실업) 위험이 크지 않아서	49	1.5
폐업(실업) 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47	1.5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440	13.8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393	12.3
기타	204	6.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215명 중 과반인 57.7%가 가입당시 보수등급이 가장 낮은 1등급이었다고 답했다. 보수등급 1등급은 2019년 이후 기준 월 보수액이 182만 원 이하인 경우로, 앞서 소득 문항에 200만 원 이하 초과수입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 같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5-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경험자의 가입 당시 기준보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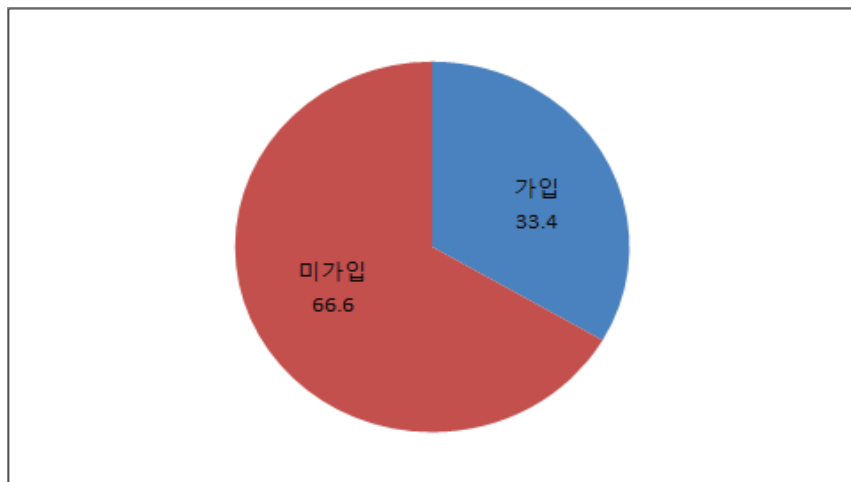
(단위: %, N=2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5-7]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폐업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폐업 시 납입금에 이자를 붙여 공제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설문했으며, 7,306명 전체 응답자 중 2,437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가입 시 설정한 기준보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월 납입을 하고(2019년 이후 기준보수 1등급의 월 납입액은 40,950원), 1년 이상 가입 유지 후 해지 시 기존 납입금과는 상관없이 기존에 정해진 실업급여를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반면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월 5만 원 이상 가입자가 설정한 금액만큼 월 납입을 하고, 폐업, 퇴업, 고령, 사망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소득세 공제 후 원금의 일부를 환급하며, 가입유지 후 5년(60개월)이 지나면 납부 원금에 복리 이자를 붙여 공제한다는 점이다. 납입 원금이 일부 보장된다는 점과 최소 가입 기간이 없다는 점, 납부 금액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규모 점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이 개편 시 가입 의향과 기대하는 지원혜택 관련 설문에서 4,614명이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입 의향이 있는 경우 기대하는 지원 혜택으로는 실업급여가 전체의 8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5-19>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및 기대하는 지원 혜택

(단위: 명)

	전국민고용보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가입 의향 여부	4,614	2,692	7,306
가입 의향이 있는 경우(N=4,614) 기대하는 지원혜택			
지원종류	수	비중	
실업급여지원	3,753	81.3	
직업훈련지원	332	7.2	
이(전)직 지원	230	5.0	
출산·육아 지원	299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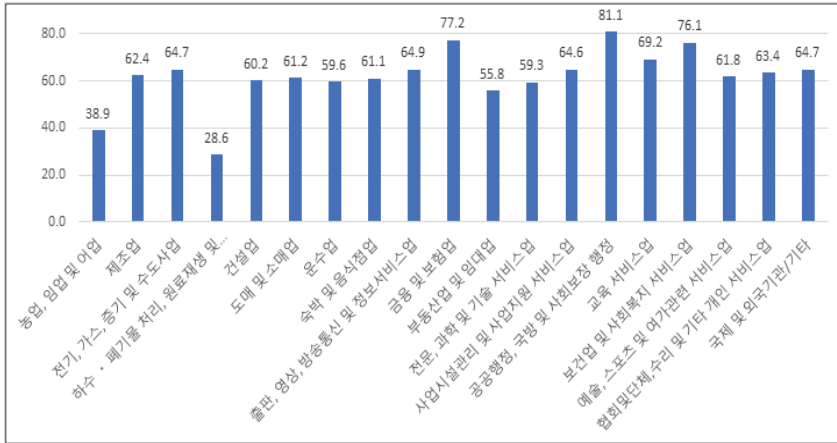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산업별로 가입 의향이 있는 경우 응답자 수가 21명으로 매우 적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6.1%)과 금융 및 보험업(77.2%) 종사자의 가입 의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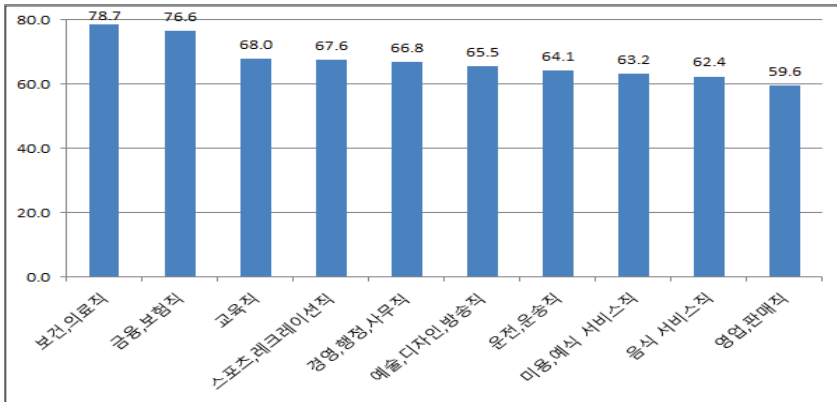
주: 산업별 종사자 수 대비 가입의향 있음 응답자 수를 나타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5-9]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응답자 100명 이상 상위 10개 직업)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직업별로는 산업과 연계되어 보건·의료직(78.8%), 금융·보험직(76.6%)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영업, 판매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미가입 사유로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35.5%),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34.7%) 순으로 미가입 사유 질문에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고정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가입 사유 중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여부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제시한 것이 <표 5-21>이다. 전체 응답자를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여부와 실제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총 1,174명)로 분류하여 표를 제시했다.

<표 5-20>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및 미가입 사유

(단위: 명)

	전국민고용보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합계
<b>가입 의향 여부</b>	4,614	2,692	7,306
<b>가입의향 없음의 전국민 고용보험 미가입사유(중복응답 가능)</b>			
<b>미가입사유</b>	<b>수</b>	<b>비중</b>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935	34.7	
폐업(실업)의 위험이 크지 않아서	82	3.0	
폐업(실업)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136	5.1	
노란우산 공제 등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227	8.4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957	35.5	
기타	572	21.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전국민고용보험에 가입 의향이 없는 2,692명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108명과 미가입자 797명을 합쳐 905명으로 전체의 33.6%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납입금 분포는 [그림 5-10]과 같다.

앞서 기술한 대로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가입 해지 시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이 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납입금액인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체의 46.6%로 나타나 고용보험 기준보수 최고등급인 7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 7만 6,050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월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는 가입했으나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이며, 향후 전국민고용보험에 가입 의향이 없는 경우가 797명으로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정책 수립 시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 대신 노란우산공제 등 기타 수단만으로 폐업(실업) 위험에 대비 하려는 사람들을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21>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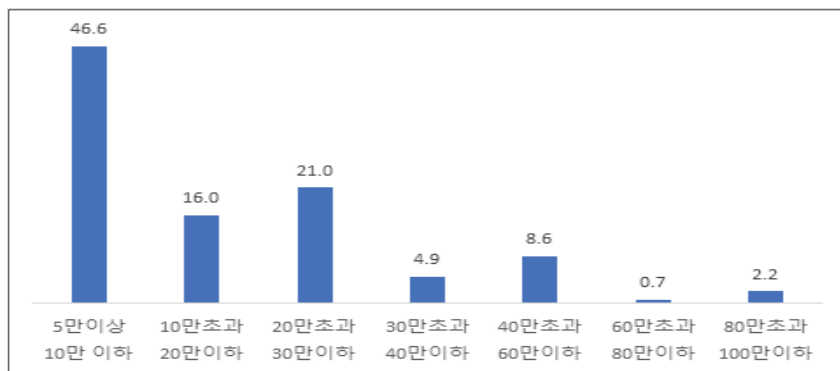
(단위: 명, %)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		노란우산공제		
		가입	미가입	합계
있음	현재고용보험미가입	1,304	2,491	3,795
	현재고용보험가입	228	591	819
없음	현재고용보험미가입	797	1,540	2,337
	현재고용보험가입	108	247	35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5-10]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월납입액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 제4절 실태조사 응답자 중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분석

본 절에서는 실태조사 자영업자 대상자 7,306명 중 조사 기간인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1,174명에 대해 추가 분석한다. 우선 전체 가입자 중 고용보험 가입유형은 상용직이 675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나타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202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132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응답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응답자가 있는 것은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영세자영업자로 신청하여 실태조사 설계 시점에 자영업자 대상자로 구분되어 자영업자 응답자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현재 하는 일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경우가 있고, 이들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로 예상된다. 전체 1,174명 가입자 중 474명이 종사상지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한 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에 자영업자였다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전직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하는 일의 경계가 불분명해 응답 과정에서 혼합된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32명으로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 7,306명의 1.8%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상 자영업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인 것을 고려한다면 실태조사 응답 결과의 가입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2> 실태조사 응답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2021년 8~10월)

(단위: 명)

	고용보험 가입유형				합계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특고	
수	675	165	132	202	1,174
비중	57.5	14.1	11.2	17.2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행정DB

<표 5-23>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시 종사상지위 구분과 실제 조사 결과

(단위: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종사상지위		실태조사 결과 종사상지위		합계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수	700	474	1,174
	비중	59.6	40.3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행정DB

다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입 시기를 분석한 것이 <표 5-24>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정책의 혜택을 본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상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의 종사상 지위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입자 1,174명 중 신청일이 결측인 경우를 제외한 1,080명 가운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전체의 77.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중 자영업자도 전체의 49.2%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상용직 가입자 중 71.3%인 440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에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2월 이후 가입자가 675명 중 531명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4> 고용보험 가입자의 가입 시기

(단위: 명, %)

구분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	특고	합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이전 가입	수	177	0	63	0	240
	비중	28.7	0.0	50.8	0.0	22.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 이후 가입	수	440	147	61	147	840
	비중	71.3	100.0	49.2	17.5	77.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상용직 가입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과 직업 분포를 제시한다.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준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산업을 <표 5-25>에 제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이었으며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중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에 소매업(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의 분포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점은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직업은 고용직업분류 중분류 수준의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직업을 <표 5-26>에 제시했다. 경영·행정·사무직, 교육직, 관리직, 영업·판매직 순으로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직과 영업·판매직, 음식서비스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프리랜서였던 응답자들이 관련 업종에 상용직으로 고용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5>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 분포(상위 10개)

(단위: 명, %)

	수	비중
교육 서비스업	119	17.6
사회복지서비스업	77	11.4
종합건설업	51	7.6
소매업;자동차 제외	47	7.0
음식점 및 주점업	43	6.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7	5.5
사업지원서비스업	28	4.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	4.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2	3.3
보건업	20	3.0
합계	471	69.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5-26>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업 분포(상위 10개)

(단위: 명, %)

	수	비중
경영, 행정, 사무직	128	19.0
교육직	92	13.6
관리직	68	10.1
영업, 판매직	58	8.6
사회복지, 종교직	46	6.8
음식서비스직	38	5.6
보건, 의료직	29	4.3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2	3.3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직	21	3.1
제조 단순직	17	2.5
합계	519	76.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추가적으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1,174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132명의 보수등급을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 현재 가입 중인 132명 중 결측을 제외한 128명의 보수등급을 나타낸 것이 <표 5-27>이다. 1등급, 2등급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4등급과 최고등급인 7등급의 비중도 크게 나타났다. 4등급의 기준보수 금액은 260만 원, 7등급의 기준보수 금액은 338만 원이다.

<표 5-27>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기준보수등급

(단위: 명, %)

	기준보수 등급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자수	38	27	10	19	10	2	22	128
비중	29.7	21.1	7.8	14.8	7.8	1.6	17.2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중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7,306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고용보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DB, 자영업자 고용보험 DB, 피보험자 종합통계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응답자는 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인 강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난 1년간 주된 일자리의 영업을 종료한 경우(N=500) 코로나19 시기 이후(2021년 3월 기준)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전체의 96.2%였으며, 대면 서비스 중심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코로나19 관련 사유(사업 부진, 코로나19 때문) 영업 종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코로나19 관련 사유 영업 종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 관련 문항에서는 매출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자, 순수입 0, 순수입 있음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2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3.3%), 부동산업 및 임대업(21.5%) 순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적자 비중이 높은 직업도 산업과 유관하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비중이 큰 영업판매직과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적자를 보는 경우가 응답자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보건, 의료직과 운송직은 월 200만 원 초과 순수입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음식 서비스직의 경우 월 200만원 초과 순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5.2%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서비스직의 경우 배달음식의 수요 증가로 인해 순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응답자의 수도 많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감소율 관련 문항에서는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의 소득감소율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나 해당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 정도와 감소폭이 코로나19 시기의 장기화와 함께 심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항에서 실태조사 결과상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9.5%에 해당하는 1,422명이었으



나 조사기간인 2021년 8~10월의 고용보험 DB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7,306명 중 1,174명으로 나타나 설문조사 응답과 실제 가입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3,187명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는 고용보험에 관해서 모르거나 가입 자격이 안 돼서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7,306명 응답자의 63.1%에 해당하는 4,614명이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에 가입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에서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입 의향이 있는 경우 기대하는 혜택은 실업급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입 의사가 없는 2,692명은 미가입 사유를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35.5%),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34.7%) 순으로 응답했으며,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특성상 고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장에서는 전체 응답자 7,306명 중 조사기간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있는 1,174명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그중 77.8%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자영업자는 전체의 49.2%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1년 2월 이후 상용직 가입자가 675명 중 531명에 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여파로 전통적인 자영업자로 불리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영업종료 비율, 소득감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19 시기의 장기화에 따라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과 관련해서는 보건업, 운수업 등 코로나19 영향 관련 수요가 증가한 산업과 직업의 경우 월 순수입 200만 원 이상인 종사자가 다른 산업,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의 파급효과가 산업 간, 직업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전체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 132명 중 49.2%에 해당하여 과거의 정책 수혜 경험이 향후 고용보험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7,306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32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설계 시 더 많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향후 전국민고용보험에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므로, 자영업자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시 가입 의사가 큰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한다면 전국민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6장

# 특고의 근로 현황과 고용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본 장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주로 불안정 노동과 프리랜서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업장 기준 사회보험 체계가 더 이상 우리 노동시장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일자리 단위 대신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보험체계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2020년 12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끝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가입된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서 예술인,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기능해왔으며, 적용 범위 확대와 지원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한 변화를 면면이 살펴보면 먼저 1998년 외환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2년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일용근로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20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기존의 평균임금 대체율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구직 급여의 지급 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이직 전 2개월동안 180일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일환으로 고정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예술인과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시·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다.<sup>15)</sup> 지난 2020년 5월 고용보험 징수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였다. 한편으로 2020년 12월 9일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는 특

15)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0),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2020.12.23.

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직종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2021년 7월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인 특고(14개 업종)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2022년 1월에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앞선 1~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 확대하기로 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임의가입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논의 및 적용방안 수립을 거쳐 2025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인 2021년 7월에는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호필요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소득, 종속성 등)으로 판단하며, 관리가능성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와 대상자의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력은 해당 특고의 규모와 사업주의 시장지배력으로 판단한다. 이 때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이란 2008년 7월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5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기사가, 2016년 7월에 대출·카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가 추가되었고, 2020년 7월에 적용이 확대된 방문판매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까지를 의미한다.

2단계인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022년 1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실태 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 공제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플랫폼 실태파악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직업안정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무 중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신고의무가 부과되었다. 보험 신고 의무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0년 12월에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인 3단계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나 기타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추가로 고용보험

을 적용할 수 있는 특고 및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소득정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 예고된 기타 특고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고 관리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그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타 직종으로는 영업용 구난차 기사, 학원차 기사,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상조회사 영업사원, 헤어디자이너, 스포츠강사, 행사도우미, 관광가이드, SW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다. 3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될 플랫폼 종사자는 사업주의 특성은 어렵지만 플랫폼이 노무 중개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유형에 대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에 앞서 이번에 실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13,227명이며,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된 응답자는 5,918명이다. 응답자 중 자영업자와 특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점포가 있는 경우 자영업자로 보았으며, 점포 없이 사업자 등록되었거나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고로 구분하였다. 특고 응답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표 6-1>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2,822명으로 47.7%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3,096명(52.3%)으로 여성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687명(2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50대 1,423명(24.1%), 30대 1,302명(2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비중이 46.3%로 46.0%를 기록한 대졸자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 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25.3%)과 경기도(29.0%)를 합친 수도권에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분포하였다.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대구(5.9%), 인천(5.5%), 부산(5.2%)의 비중이 높았으며, 도별로는 경남(4.8%)과 경북(3.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의 응답자 구성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성별	남성	2,822	47.7
	여성	3,096	52.3
연령별	20~29세	553	9.3
	30~39세	1,302	22.0
	40~49세	1,687	28.5
	50~59세	1,423	24.1
	60~69세	826	14.0
	70세 이상	127	2.2
학력별	고졸 이하	2,739	46.3
	대졸	2,721	46.0
	대학원 이상	458	7.7
근무 업체 소재지	서울	1,496	25.3
	부산	307	5.2
	대구	346	5.9
	인천	327	5.5
	광주	134	2.3
	대전	235	4.0
	울산	123	2.1
	경기	1,713	29.0
	강원	108	1.8
	충북	108	1.8
	충남/세종	156	2.6
	전북	138	2.3
	전남	124	2.1
	경북	216	3.7
	경남	285	4.8
	제주	102	1.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2〉 인적 속성별 일자리 수에 따른 응답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1개	2개	3개	4개	합계	
<b>전체</b>		4,495 (76.0)	964 (16.3)	298 (5.0)	161 (2.7)	5,918 (100.0)	
<b>성별</b>	남성	2,164 (76.7)	440 (15.6)	137 (4.9)	81 (2.9)	2,822 (100.0)	
		2,331 (75.3)	524 (16.9)	161 (5.2)	80 (2.6)	3,096 (100.0)	
	여성	414 (74.9)	87 (15.7)	30 (5.4)	22 (4.0)	553 (100.0)	
		943 (72.4)	227 (17.4)	86 (6.6)	46 (3.5)	1,302 (100.0)	
<b>연령별</b>	40~49세	1,223 (72.5)	318 (18.9)	96 (5.7)	50 (3.0)	1,687 (100.0)	
	50~59세	1,085 (76.3)	236 (16.6)	70 (4.9)	32 (2.3)	1,423 (100.0)	
	60~69세	715 (86.6)	85 (10.3)	16 (1.9)	10 (1.2)	826 (100.0)	
	70세 이상	115 (90.6)	11 (8.7)	- (0.0)	1 (0.8)	127 (100.0)	
	<b>학력별</b>	고졸 이하	304 (92.4)	21 (6.4)	3 (0.9)	1 (0.3)	329 (100.0)
			1,917 (79.5)	363 (15.1)	83 (3.4)	47 (2.0)	2,410 (100.0)
대학원 이상		1,994 (73.3)	488 (17.9)	157 (5.8)	82 (3.0)	2,721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종사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거나, 또는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이 많은 직업의 수를 최대 4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의 수가 하나라고 응답한 이들은 4,495명으로 76.0%를 차지하였으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특고 종사자의 비중도 2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복수의 소득원을 가진 비중이 소폭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고 70세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복수의 소득원을 가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소득이 많은 일에서 하는 일의 종사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소득이 첫 번째로 많은 일				소득이 두 번째로 많은 일			
순서	응답	응답자 수	비율	순서	응답	응답자 수	비율
-	전체	5,918	100.0	-	전체	964	100.0
1	강사	1,450	24.5	1	강사	338	23.8
2	화물운수업	385	6.5	2	알바	123	8.6
3	택시운전사	337	5.7	3	건설업	86	6.0
4	프리랜서	329	5.6	4	도소매업	74	5.2
5	도소매업	314	5.3	5	배달원	49	3.4
6	제조업	226	3.8	6	자영업	43	3.0
7	건물설비및공사	198	3.4	7	물류업	34	2.4
8	알바	189	3.2	8	농업	33	2.3
9	사무직	174	2.9	9	프리랜서	30	2.1
10	헤어디자이너	96	1.6	10	영상제작업	30	2.1
11	배달원	92	1.6	11	제조업	28	2.0
12	중장비운전원	91	1.5	12	음식업	27	1.9
13	차량운전사	88	1.5	13	공연예술업	26	1.8
14	전자상거래업	84	1.4	14	상담원	23	1.6
15	일반서비스업	80	1.4	15	보험설계사	23	1.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이번 조사에 참여한 특고 종사자들이 소득이 많은 순으로 응답한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의 상위 15개 직업이 <표 6-3>에 나타나 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첫 번째 직업은 강사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화물운수업, 택시 운전사 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다소 모호한 ‘알바’ 라는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질문하였을 때 ‘매장을 관리하는 일’ 을 한다는 응답이 약 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역소득 및 지도하는 일’ 이 약 6.4%, ‘배송하는 일’ 이 약 5.9%로 뒤를 이었다.

첫 일자리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일에 대해서는 강사, 알바,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기타’의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sup>16)</sup>

약 25.9%의 응답자가 점포 없이 호출이나 앱을 통해 일감을 받고 고객을 만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고·플랫폼 등의 고용 형태가 혼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일감을 얻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8.2%로 나타났으며,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소득을 얻는 종사자도 1.7%에 해당하여 이들 세 유형의 비중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특고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형태

(단위: 명, %)

서비스 제공 형태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918	100.0
점포가 없으며 호출이나 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고객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1,535	25.9
사이트나 앱을 통해 일감을 얻은 후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483	8.2
자신의 작품을 사이트나 앱에 게시하고 접속자 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98	1.7
업체에서 일감과 무관하게 고정기본급을 받는다		1,154	19.5
기타		2,648	44.7
‘기타’ 응답자의 응답 직업 상위 5개			
1	강사	834	31.5
2	프리랜서	159	6.0
3	택시운전사	154	5.8
4	화물운수업	112	4.2
5	도소매업	111	4.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16) 참고로 본 질문은 플랫폼 노동의 형식을 갖는 특고 종사자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기타를 제외한 응답자의 비중이 중요한 질문에 해당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특고 종사자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중(34.0%)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는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근속 2년 미만의 응답자는 25.5%였으며, 근속 3년으로 확대하면 35.9%의 비중을 차지하여 특고 종사자의 근속연수는 3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으로 양극화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6-5> 근무 기간별 종사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근무 기간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1년 미만	899	15.2
1년 이상~2년 미만	612	10.3
2년 이상~3년 미만	584	9.9
3년 이상~4년 미만	482	8.1
4년 이상~5년 미만	324	5.5
5년 이상~6년 미만	306	5.2
6년 이상~7년 미만	217	3.7
7년 이상~8년 미만	164	2.8
8년 이상~9년 미만	182	3.1
9년 이상~10년 미만	139	2.4
10년 이상	2,009	34.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노무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정형화되지 않은 특고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에도 주요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표 6-6>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에도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4,970명이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948명으로 1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의 종료 사유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0.5%가 기타를 택하였으며, 서술된 기타 사유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기 상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초래된 거시

경제적 충격이 특고 근로자들에게는 사업 부진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타 사유 외에는 일감이 없거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휴직이 23.1%, 임시적으로 일의 완료 상태라는 응답이 15.8%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난 사유는 가사, 정년퇴직, 조기퇴직 등이 있었는데, 앞서 종사자의 연령별 분포에서 60대 이상의 종사자가 16.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 중단이 0.4%에 불과한 부분은 눈에 띄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특정한 업체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특고 종사자의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6> 근무 지속 여부와 중단 사유

(단위: 명, %)

근무 종료 여부 및 사유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현재에도 진행 중임	4,970	83.98
현재 하지 않음	948	16.02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유		
소계	948	100.0
개인, 가족관련 이유	83	8.8
육아	35	3.7
가사	1	0.1
심신장애	31	3.3
정년퇴직, 연로	4	0.4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	62	6.5
직장의 휴업, 폐업	55	5.8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19	2.0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50	15.8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219	23.1
기타	289	30.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는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특고 종사자의 근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에도 일을 진행 중인 응답자는 10년 이상의 근속에서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근속을 가진 응답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년 미만에서 40.4%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의 근속을 가진 응답자의 합이 전체 일하지 않는 응답자의 55%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속 3년 미만인 이들을 살펴보면 현재 일을 진행 중인 특고 근로자의 비중에서 29.8%, 현재 일을 하지 않는 특고 근로자 중에서 64.9%의 비중을 차지하여 특고 노동시장에서 신규 인력의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6-7> 근속에 따른 중단 여부

(단위: 명, %)

	현재에도 진행 중임		현재 하지 않음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4,970</b>	<b>100.0</b>	<b>948</b>	<b>100.0</b>
1년 미만	516	10.4	383	40.4
1년 이상~2년 미만	469	9.4	143	15.1
2년 이상~3년 미만	495	10.0	89	9.4
3년 이상~4년 미만	447	9.0	35	3.7
4년 이상~5년 미만	293	5.9	31	3.3
5년 이상~6년 미만	277	5.6	29	3.1
6년 이상~7년 미만	202	4.1	15	1.6
7년 이상~8년 미만	153	3.1	11	1.2
8년 이상~9년 미만	169	3.4	13	1.4
9년 이상~10년 미만	121	2.4	18	1.9
10년 이상	1,828	36.8	181	19.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는 특고로 분류된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약 40.3%에 달하는 2,382명이 고용원이 없는 개인 기업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어 근소한 차이로 임금근로자(39.9%)가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지위는 고용원이 있는 개인

기업이라는 답변으로 개인 사업자의 형태가 전체 특고 종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개인 기업 고용주	685	11.6
법인 고용주	307	5.2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182	3.1
고용원이 없는 개인 기업 자영업자 (1인 개인사업자 포함)	2,382	40.3
임금근로자	2,362	39.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9〉 특고 종사자의 주요 근무장소

(단위: 명, %)

주 근무장소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사업장(건물 및 토지)	2,442	41.3
자기 집	719	12.2
남의 집 [사업장이 집 안에 있는 경우]	306	5.2
거리 [방문판매나 방문서비스, 점포없는 노점상을 하는 경우를 포함]	207	3.5
야외 작업 현장	456	7.7
운송수단	602	10.2
기타	1,186	20.0
‘기타’ 응답자의 응답 중 상위 3곳		
학교	205	24.3
초등학교	43	5.1
학원	13	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특고 종사자의 주요한 근로 장소는 특정한 건물이나 토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형태가 41.3%였으며, 이어서 기타(20.0%), 자기 집(12.2%)의 순이었다. 다른 직종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운송수단(10.2%), 남의 집 안에 있는 사업장(5.2%) 등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 방식 하에서 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이 가운데 1,186명에 달하는 ‘기타’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이 상위 3위 이내에 위치하여 30.9%에 달하는 비중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문화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순으로 주된 근무 장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사업체와의 근로계약 형태

(단위: 명, %)

근로계약 형태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근로계약	1,529	25.84
표준하도급/위임/위탁/위촉/임대/ 프리랜서/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2,551	43.11
자기 사업체 운영	1,285	21.71
기타 계약	553	9.3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11> 고용 계약의 종료시점에 따른 종사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형태 여부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예,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한다	2,153	36.4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고용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379	6.4
주어진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한다	1,377	23.3
고용관계가 끝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344	5.8
정해진 기간 없이 일하기로 했다	1,665	28.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특고 종사자가 사업체와 맺는 근로계약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표준하도급·위임·위탁·위촉·임대·프리랜서·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대리인을 임명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43.1%의 주요한 계약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근로계약(25.8%)과 자기 사업체 운영(21.7%) 세 가지 계약 형태가 응답자 근로계약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6.4%가 정해진 기간동안 일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이 없거나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하는 방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고용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와 계약 기간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b>합계</b>		<b>2,532</b>	100.0
고용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b>예</b>	1,919	75.8
	<b>아니오</b>	613	24.2
<b>합계</b>		<b>2,532</b>	100.0
고용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130	5.1
	1-3개월 미만	178	7.0
	3-6개월 미만	252	10.0
	6개월-1년 미만	472	18.6
	1년	977	38.6
	1년 초과-2년	179	7.1
	2년 초과(기간 한정)	344	13.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고용계약의 반복적 갱신에 대해서는 75% 이상인 1,919명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 기간은 1년인 경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기간 1년 미만을 모두 더한 비율도 40.7%에 달해 1년 이하의 단기 고용 계약이 전체 고용 계약의 79.3%를 차지하였다.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고용 계약의 반복 여부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고용 계약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계약의 비중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계약을 일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6



개월~1년 미만의 계약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다.

특고 종사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7.5%가 소득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19.6%의 응답자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1%에 달하는 2,430명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13.1%로 두 응답의 합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소득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의 결과가 다음 <표 6-15>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정되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응답자가 전체의 64%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소득 변화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0%에 달하는 응답이 불안정 또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을 하였다.

<표 6-13> 계약 기간별 반복 갱신 여부

(단위: 명, %)

		고용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예		아니오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b>합계</b>		1,919	100.0	613	100.0
고용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82	4.3	48	7.8
	1-3개월 미만	114	5.9	64	10.4
	3-6개월 미만	165	8.6	87	14.2
	6개월-1년 미만	299	15.6	173	28.2
	1년	816	42.5	161	26.3
	1년 초과-2년	144	7.5	35	5.7
	2년 초과(기간 한정)	299	15.6	45	7.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14〉 주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b>전체</b>	<b>5,918</b>	<b>100.0</b>
소득 있음	4,589	77.5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1,159	19.6
잘 모름/무응답	170	2.9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		
<b>합계</b>	<b>5,918</b>	<b>100.0</b>
100만원 미만	2,430	41.1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75	13.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644	10.9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742	12.5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5	5.2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367	6.2
350만원 이상	476	8.0
잘 모름/무응답	179	3.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15〉 보수의 형태 및 소득 안정성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b>합계</b>		<b>5,918</b>	<b>100.0</b>
주된 일자리에서 적용중인 보수형태	고정되지 않은 보수	3,785	64.0
	고정된 보수	2,133	36.0
<b>합계</b>		<b>5,918</b>	<b>100.0</b>
지난 1년간 소득(순수입) 변화의 안정성	매우 안정적이다	172	2.9
	안정적이다	1,056	17.8
	불안정하다	2,679	45.3
	매우 불안정하다	2,011	34.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16> 보수형태별 소득 안정성

(단위: 명, %)

		주된 일자리에서의 적용중인 보수형태			
		고정되지 않은 보수		고정된 보수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합계		3,785	100.0	2,133	100.0
지난 1년간 소득(순수입) 변화의 안정성	매우 안정적이다	31	0.8	141	6.6
	안정적이다	479	12.7	577	27.1
	불안정하다	1,781	47.1	898	42.1
	매우 불안정하다	1,494	39.5	517	24.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17> 산업별 종사자 수와 비율

(단위: 명, %)

	응답자수	비율
전체	5,91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2	0.5
제조업	280	4.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	0.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0.1
건설업	364	6.2
도매 및 소매업	585	9.9
운수업	733	12.4
숙박 및 음식점업	147	2.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1	3.6
금융 및 보험업	136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79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5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3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2	2.6
교육 서비스업	1,208	2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4	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29	8.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04	13.6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91	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보수의 형태가 소득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다음의 <표 6-16>를 보면, 고정되지 않은 보수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6.6%가 불안정하다고 답을 한 반면에, 고정된 보수에서는 66.3%가 불안정하다는 응답을 보여주었다.

특고 종사자의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2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3.6%), 운수업(12.4)의 순으로 많은 응답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경험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918	100.0
현재 일자리에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렇다	1,319	22.3
	아니다	4,599	77.7
위 질문에서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계		4,599	100
고용보험 가입 경험 여부	있다	2,453	53.3
	없다	2,146	46.7
위 질문에서 '경험이 없다' 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복수 응답)			
소계		2,632	100.0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이유	고용보험에 대해 모름	547	20.8
	가입자격이 안돼서	882	33.5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아서	518	19.7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224	8.5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노란우산공제회 등에) 가입하고 있어서	86	3.3
	다른 수단으로 실업(폐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노란우산 공제회 등의 금융상품 제외)	16	0.6
	실업(폐업) 위험이 크지 않아서	26	1.0
	실업(폐업) 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31	1.2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132	5.0
	기타	170	6.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을 묻기 위한 다음의 단계에서, 우선 응답자의 22.3%만이 지금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금의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입의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6.7%가 가입 경험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 경험이 없는 2,146명을 대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유를 물어보았으며, 이 때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 총 2,632개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서’ 였으며, 이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1인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특고의 경우 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이가 없다면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에 대해 본인의 소득 포기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제도의 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표 6-19>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전체		5,918	100.0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시 가입 의향	예	4,315	72.9
	아니오	1,603	27.1
위 질문에서 가입의사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소계		4,315	100.0
선호하는 고용보험지원혜택	실업급여지원	3,551	82.3
	직업훈련지원	284	6.6
	이(전)직 지원	227	5.3
	출산·육아 지원	253	5.9
위 질문에서 가입의사 ‘없는’ 응답자 대상으로			
소계		1,603	100.0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544	33.9
	실업(폐업) 위험이 크지 않아서	63	3.9
	실업(폐업) 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67	4.2
	다른 수단으로 실업(폐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48	3.0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517	32.3
	기타	364	2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확대되는 경우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2.9%에 달하는 4,315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혜택을 묻은 결과 실업급여 지원이 80% 이상의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갖는 의미는 소득 평형화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6-20> 인적 속성별 선호하는 고용보험 혜택

(단위: 명, %)

가입의사 있음		응답자 수 (비율)				
		실업급여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이(전)직 지원	출산·육아 지원	합계
전체		3,551 (82.3)	284 (6.6)	227 (5.3)	253 (5.9)	4,315 (100.0)
성별	남성	1,626 (82.4)	134 (6.8)	126 (6.4)	88 (4.5)	1,974 (100)
	여성	1,925 (82.2)	150 (6.4)	101 (4.3)	165 (7.1)	2,341 (100)
연령별	20~29세	325 (78.3)	21 (5.1)	30 (7.2)	39 (9.4)	415 (100)
	30~54세	2,271 (81.1)	204 (7.3)	143 (5.1)	183 (6.5)	2,801 (100)
	55세 이상	955 (86.9)	59 (5.4)	54 (4.9)	31 (2.8)	1,099 (100)
학력별	고졸 이하	1,646 (84.8)	122 (6.3)	98 (5)	76 (3.9)	1,942 (100)
	대졸	1,647 (81.1)	134 (6.6)	102 (5)	147 (7.2)	2,030 (100)
	대학원 이상	258 (75.2)	28 (8.2)	27 (7.9)	30 (8.8)	343 (100)
소득 안정성	매우 안정적	96 (75.6)	7 (5.5)	6 (4.7)	18 (14.2)	127 (100)
	안정적	676 (82)	65 (7.9)	40 (4.9)	43 (5.2)	824 (100)
	불안정	1,596 (83.3)	124 (6.5)	99 (5.2)	98 (5.1)	1,917 (100)
	매우 불안정	1,183 (81.8)	88 (6.1)	82 (5.7)	94 (6.5)	1,447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이어서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이 확대되어도 가입에 부정적인 1,603명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에는 33.9%의 응답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발생하는 소득 감소’ 사유로 답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표 6-21> 인적속성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

가입의사 있음		응답자 수 (비율)						합계
		소득이 줄어서	실(폐)업 위험 낮음	실업급여 불필요	다른 수단으로 대비	혜택이 부족	기타	
전체		544 (33.9)	63 (3.9)	67 (4.2)	48 (3)	517 (32.3)	364 (22.7)	1,603 (100)
성별	남성	266 (31.4)	40 (4.7)	39 (4.6)	35 (4.1)	272 (32.1)	196 (23.1)	848 (100)
	여성	278 (36.8)	23 (3.1)	28 (3.7)	13 (1.7)	245 (32.5)	168 (22.3)	755 (100)
연령별	20~29세	47 (34.1)	7 (5.1)	4 (2.9)	7 (5.1)	55 (39.9)	18 (13)	138 (100)
	30~54세	400 (39.8)	34 (3.4)	36 (3.6)	29 (2.9)	324 (32.3)	181 (18)	1,004 (100)
	55세 이상	97 (21)	22 (4.8)	27 (5.9)	12 (2.6)	138 (29.9)	165 (35.8)	461 (100)
학력별	고졸 이하	237 (29.7)	28 (3.5)	36 (4.5)	19 (2.4)	260 (32.6)	217 (27.2)	797 (100)
	대졸	258 (37.3)	31 (4.5)	24 (3.5)	28 (4.1)	231 (33.4)	119 (17.2)	691 (100)
	대학원 이상	49 (42.6)	4 (3.5)	7 (6.1)	1 (0.9)	26 (22.6)	28 (24.4)	115 (100)
소득 안정성	매우 안정적	14 (31.1)	3 (6.7)	4 (8.9)	1 (2.2)	18 (40)	5 (11.1)	45 (100)
	안정적	75 (32.3)	11 (4.7)	11 (4.7)	9 (3.9)	72 (31)	54 (23.3)	232 (100)
	불안정	261 (34.3)	34 (4.5)	32 (4.2)	28 (3.7)	240 (31.5)	167 (21.9)	762 (100)
	매우 불안정	194 (34.4)	15 (2.7)	20 (3.6)	10 (1.8)	187 (33.2)	138 (24.5)	564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의사의 인적 속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업급여와 이직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이직 지원, 출산·육아 지원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중년층은 직업훈련 지원에서, 고령층은 실업급여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여길수록 실업급여의 비중이 높아지는 듯 하였으나, 한편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비중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오히려 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 제3절 특고 실태조사자료와 고용보험 DB와의 연계 분석

본 절에서는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고용보험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실태조사 문항 가운데 ‘현재 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전체 5,918명 가운데 1,308명으로 22.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 절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여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표 6-22> 실태조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응답자·피보험자 수	비율
전체	5,918	100.0
고용보험 미가입	4,189	70.8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1,308	22.1
특고 고용보험 가입	350	5.9
임금근로자, 특고 고용보험 모두 가입	67	1.1
연계 불가	4	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2021년 7월에 시행되어 충분한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제도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이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들의 특징,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사자들의 특징을 잠재적으로 가입 가능성이 있는 미가입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분석에 앞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자료는 2021년 8월~10월에 마감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고 고용보험의 자료는 2021년 7월~10월의 기간 동안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6-22>에는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5,918명 가운데 어떠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70.8%인 4,189명이었다. 상용직 위주인 기존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1,308명(22.1%)였으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은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에선 350명(5.9%) 가량 가입이 진행된 상태였다.

특이한 부분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과 특고 고용보험 모두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1.1%인 67명이 그 경우에 속하였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80.6%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9.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50대가 20.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종으로는 교육직 57명(85.1%), 영업 및 판매직 6명(9.0%), 보건 및 의료직 2명(3.0%), 운전 및 운송직과 건설 및 채굴직 각각 1명(각각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용보험 채용기준일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일을 비교하면 67명 중 약 68.7%에 해당하는 46명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의 가입일이 특고 고용보험 가입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기존에 임금근로자에 가입한 이후에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에 해당한다. 반면에 21명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일보다 임금근로자 채용기준일이 더 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경험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할 예정이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들 모두를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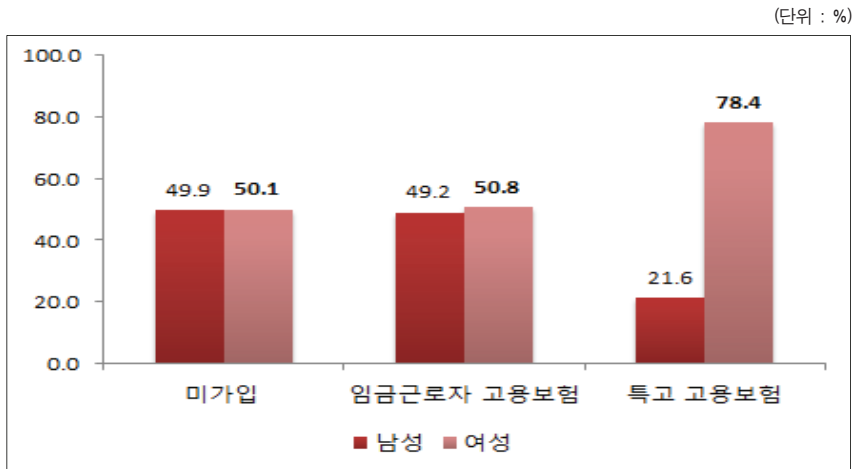
〈표 6-23〉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성별 비중

	남성	비중	여성	비중	합계
전체	2,822	47.7	3,092	52.3	5,914
미가입	2,089	49.9	2,100	50.1	4,189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643	49.2	665	50.8	1,308
특고 고용보험	90	21.6	327	78.4	417

(단위: 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6-1]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성별 비중



(단위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23〉에는 고용보험 가입 상황에 따른 성별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계가 가능한 5,914명의 조사참여자 중에는 여성이 52.3%로 소폭 높게 나타났었는데, 미가입 종사자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별 비중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여성이 78.4%를 기록하여 21.6%에 그친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표 6-24〉와 같다. 미가입 그룹에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및 고용보험 가입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30대와 40대를 합친 비율이 36.9%로 높게 나

타났다. 반면에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집단에서는 40대의 비중이 43.4%에 달하였으며, 50대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30대와 40대를 합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집단에서는 40대의 비중이 43.4%에 달하였으며, 50대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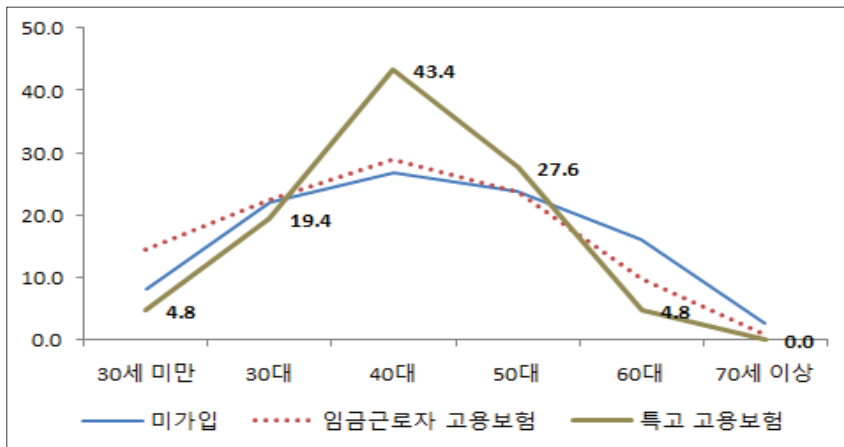
<표 6-24>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연령별 비중

(단위: 명, %)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전체 (비율)	553 (9.4)	1,302 (22)	1,683 (28.5)	1,423 (24.1)	826 (14)	127 (2.1)	5,914 (100)
미가입	343 (8.2)	928 (22.2)	1,125 (26.9)	999 (23.9)	679 (16.2)	115 (2.8)	4,189 (100)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190 (14.5)	293 (22.4)	377 (28.8)	309 (23.6)	127 (9.7)	12 (0.9)	1,308 (100)
특고 고용보험	20 (4.8)	81 (19.4)	181 (43.4)	115 (27.6)	20 (4.8)	- (0)	4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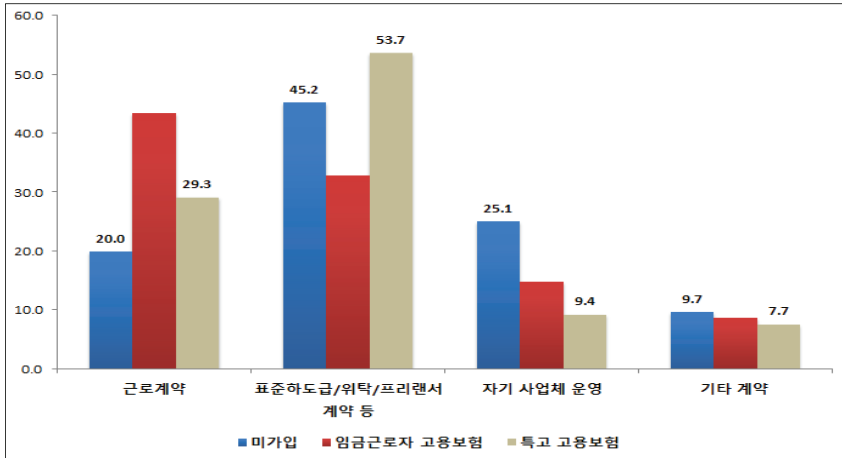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6-2] 실태조사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연령별 비중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6-3] 사업체와의 근로계약 형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형태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태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에게도 지배적인 계약 형태였다. 다만 미가입 상태인 응답자 가운데에는 자기 사업체 운영의 고용 양상을 갖는 경우도 25.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교육서비스업(19.0%),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1.2%), 건설업(9.7%)의 순으로 많은 피보험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의 산업 분포는 교육 서비스업(16.3%), 운수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각각 15.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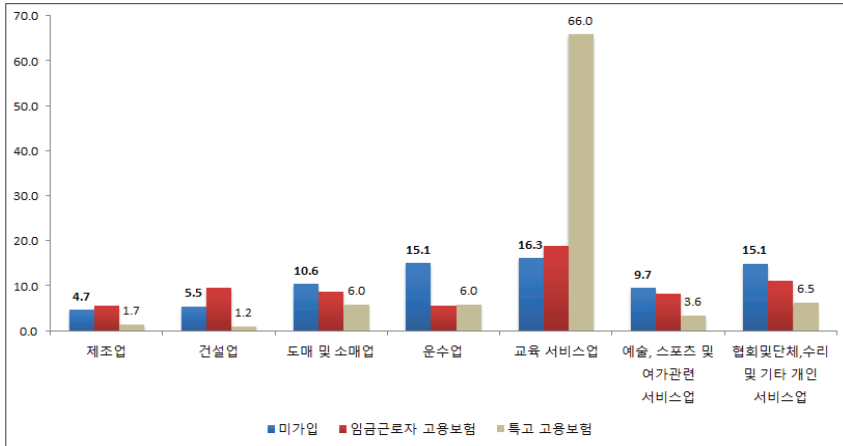
<표 6-25>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산업간 비중

(단위: 명, %)

	미가입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체	4,189	100.0	1,308	100.0	417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5	0.6	7	0.5	-	0.0
제조업	198	4.7	75	5.7	7	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0.2	9	0.7	-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0.1	5	0.4	-	0.0
건설업	232	5.5	127	9.7	5	1.2
도매 및 소매업	443	10.6	116	8.9	25	6.0
운수업	633	15.1	75	5.7	25	6.0
숙박 및 음식점업	96	2.3	49	3.8	2	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6	3.7	52	4.0	3	0.7
금융 및 보험업	95	2.3	15	1.2	26	6.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3	1.7	6	0.5	-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1	3.6	63	4.8	1	0.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8	2.1	53	4.1	2	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3	2.5	47	3.6	2	0.5
교육 서비스업	683	16.3	248	19.0	275	6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	2.7	70	5.4	1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6	9.7	108	8.3	15	3.6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1	15.1	146	11.2	27	6.5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53	1.3	37	2.8	1	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6-4] 산업별 분포(비중이 높은 7개 산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반면에 실태조사 응답자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분포는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6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금융 및 보험업(6.2%),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각각 6.0%)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분포가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 시점에서 특고 고용보험이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해당 직종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군에서는 동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특고 고용보험에서 충분한 직종의 확대가 이뤄진 후에야 피보험자를 규모를 통한 산업별 특고 종사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직업 분포를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된 직무에 따라 채용을 하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특고 종사자는 업무 형태가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직업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중 첫 번째로 소득이 많은 직업, 서비스 제공 형태, 근무 장소, 구체적인 업무, 직위(직책), 현재 사업체의 업종 등의 문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고 종사자의 직업을 구분한 결과가 <표 6-26>에 나타나 있다. 이때 직업은 한국 고용직업분류(KECO)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표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직이 66.9%로 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운전·운송직이 8.9%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영업·판매직이 5.3%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14개 업종이 주로 교육직, 판매직, 운송직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교육직(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비중은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영·행정·사무직으로 11.5%의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은 운전·운송직으로 1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운전·운송직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교육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어서 교육직의 비중도 19.5%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영업·판매직의 비중(10.1%) 높았다.

위의 결과에서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미가입자의 차이를 보면 순서나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상위 3개 직업이 교육직, 운전·운송직, 영업·판매직으로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직업 소분류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5]를 보면 직업 소분류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로 49.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의 신분으로 방과후 교사(특기적성교사)로 활동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두 번째로 높은 기타교사는 교원 신분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기간제 교사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표 6-26〉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직업 간 비중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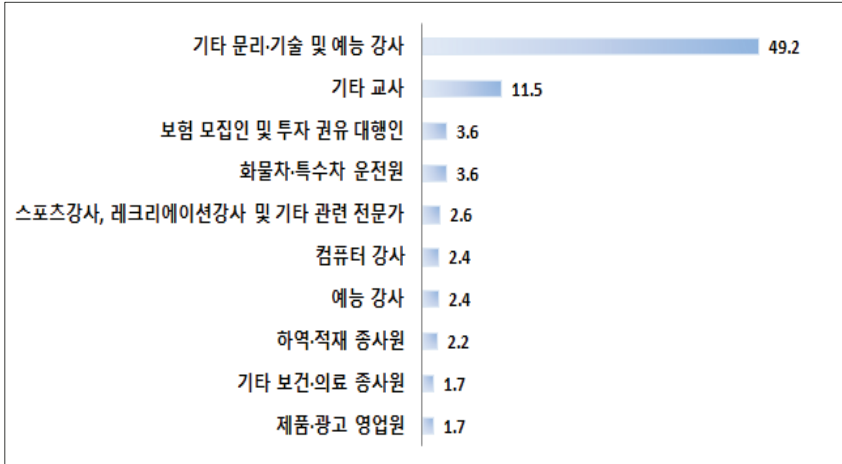
	미가입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체	<b>4,189</b>	<b>100.0</b>	<b>1,308</b>	<b>100.0</b>	<b>417</b>	<b>100.0</b>
관리직	149	3.6	37	2.8	4	1.0
경영, 행정, 사무직	286	6.8	<b>151</b>	<b>11.5</b>	9	2.2
금융, 보험직	71	1.7	11	0.8	15	3.6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	15	0.4	13	1.0	0	0.0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75	1.8	32	2.5	1	0.2
건설, 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3	0.3	3	0.2	5	1.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8	0.2	6	0.5	0	0.0
교육직	<b>818</b>	<b>19.5</b>	<b>228</b>	<b>17.4</b>	<b>279</b>	<b>66.9</b>
사회복지, 종교직	25	0.6	20	1.5	0	0.0
경찰, 소방, 교도직	1	0.0	0	0.0	0	0.0
보건, 의료직	91	2.2	54	4.1	7	1.7
예술, 디자인, 방송직	377	9.0	103	7.9	7	1.7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직	218	5.2	64	4.9	11	2.6
미용, 예식 서비스직	128	3.1	19	1.5	3	0.7
여행, 숙박, 오락 서비스직	22	0.5	11	0.8	0	0.0
음식 서비스직	69	1.7	37	2.8	1	0.2
경호, 경비직	18	0.4	22	1.7	1	0.2
돌봄 서비스직	9	0.2	36	2.8	0	0.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3	2.9	62	4.7	9	2.2
영업, 판매직	<b>423</b>	<b>10.1</b>	97	7.4	<b>22</b>	<b>5.3</b>
운전, 운송직	<b>897</b>	<b>21.4</b>	<b>137</b>	<b>10.5</b>	<b>37</b>	<b>8.9</b>
건설, 채굴직	129	3.1	79	6.0	2	0.5
전기, 전자 설치, 정비, 생산직	28	0.7	8	0.6	0	0.0
정보통신 설치, 정비직	8	0.2	6	0.5	0	0.0
화학, 환경 설치, 정비, 생산직	24	0.6	9	0.7	1	0.2
제조 단순직	6	0.1	5	0.4	0	0.0
농림어업직	2	0.1	1	0.1	0	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6-5]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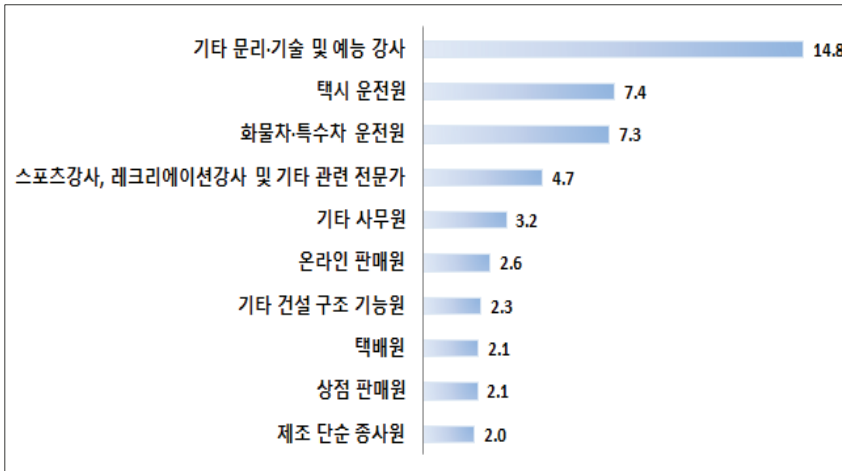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그림 6-6]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 [그림 6-6]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집단에서 비중이 높은 10개 직업이 나타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였지만 그 비중은 14.8%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직업은 택시운전원(7.4%)이었다.

이처럼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직종이 아니면서 미가입자 상위권에 오른 다른 직업으로는 기타 사무원(3.2%), 온라인 판매원(2.6%),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2.3%), 상점 판매원(2.1%), 제조 단순 종사원(2.0%)이 있었다. 이들 중 온라인 판매원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웹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이들이었으며, 온라인 판매원을 제외한 직업들은 특정 기간에만 잠시 소속되어 일하는 특징이 있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였지만 그 비중은 14.8%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직업은 택시운전원(7.4%)이었는데, 이는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고 고용보험 가입 순위 상위에 나타나지 않았던 직업이다.

화물차·특수차 운전원이나 택배원의 경우 특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업이지만 아직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당시 이들에게 향후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 가입 의향을 묻은 결과는 화물차·특수차 운전원의 경우 65.2%, 택배원의 경우 70%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하여 향후 제도의 정착에 따라 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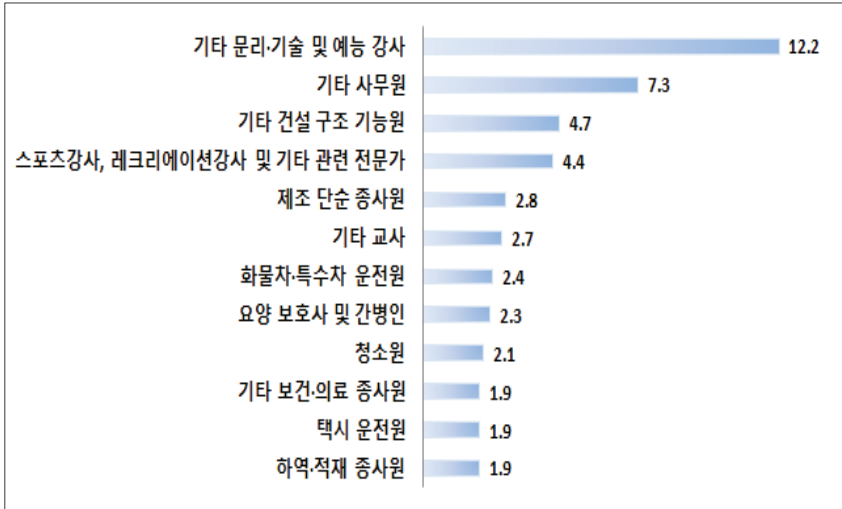
화물차·특수차 운전원과 택배원 중 향후에도 고용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었을 때 화물차·특수차 운전원의 경우 26.8%가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를 답하였으며, 23.5%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를 답하였다. 반면에 택배원의 경우에는 51.9%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를, 29.6%가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를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의 상위 10개 직업을 살펴보면 기타 사무원(7.3%),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4.7%), 제조 단순 종사원(2.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서 볼 수 없었던 직업으로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2.3%), 청소원(2.1%) 등이 있었다.

[그림 6-7]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 상위 10개 직업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는 특고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구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질문하였으며, 주요 일자리가 아닌 부업으로서의 플랫폼 종사자까지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의 개수만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6-27>에는 플랫폼 노동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답자의 수와 비중,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판단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 결과 특고 5,914명 가운데 플랫폼 노동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전체의 38.8%인 2,297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을 제공하는 개수로는 1개를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지만, 2개 이상의 플랫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도 전체의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1개 이상의 플랫폼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 보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6-27〉 플랫폼 노동 제공 현황

(단위: 명, %)

	일반 특고	플랫폼 노동				합계
	0개	1개	2개	3개	4개	
합계	3,617	2,297				5,914
응답자 수	3,617	2,011	198	55	33	5,914
(비율)	61.2	34.0	3.3	0.9	0.6	100.0
서비스제공 형태(플랫폼 노동 종사자 판단 문항)						
플랫폼노동	점포가 없으며 호출이나 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고객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트나 앱을 통해 일감을 얻은 후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자신의 작품을 사이트나 앱에 게시하고 접속자 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일반특고	업체에서 일감과 무관하게 고정기본급을 받는다					
	기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인적 속성을 살펴보면 일반 특고 종사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전체 특고 계층은 52.3%가 여성이었던 데 반해, 플랫폼 종사자는 남성이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일반 특고 대비 55세 이상의 비중이 조금 높았으며, 20~29세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리고 종사상 지위는 고용원이 없는 개인 기업 자영업자 또는 개인 기업 고용주라는 응답이 일반 특고에 비해 높았으며, 임금 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표 6-28>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인적 속성별 현황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일반 특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		3,617 (61.2)	2,297 (38.8)
성별	남성	1,480 (40.9)	1,342 (58.4)
	여성	2,137 (59.1)	955 (41.6)
연령별	20~29세	380 (10.5)	173 (7.5)
	30~54세	2,331 (64.5)	1,470 (64.0)
	55세 이상	906 (25.1)	654 (28.5)
학력별	고졸 이하	1,629 (45)	1,110 (48.3)
	대졸	1,696 (46.9)	1,022 (44.5)
	대학원 이상	292 (8.1)	165 (7.2)
종사상 지위	개인 기업 고용주	359 (9.9)	326 (14.2)
	법인 고용주	216 (6.0)	91 (4.0)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87 (2.4)	95 (4.1)
	고용원이 없는 개인 기업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 포함)	1,188 (32.8)	1,191 (51.9)
	임금근로자	1,767 (48.9)	594 (25.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29〉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계약 및 근로기간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일반 특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		3,617 (61.2)	2,297 (38.8)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2,422 (67)	1,767 (76.9)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875 (24.2)	433 (18.9)
	특고 고용보험	320 (8.9)	97 (4.2)
근로계약 형태	근로계약	1,083 (29.9)	446 (19.4)
	표준하도급/위임/위탁/위촉/임대/ 프리랜서/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1,558 (43.1)	991 (43.1)
	자기 사업체 운영	620 (17.1)	664 (28.9)
	기타 계약	356 (9.8)	196 (8.5)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지 여부	예,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한다	1,477 (40.8)	675 (29.4)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고용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228 (6.3)	151 (6.6)
	주어진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한다	715 (19.8)	661 (28.8)
	고용관계가 끝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206 (5.7)	138 (6)
	정해진 기간 없이 일하기로 했다	991 (27.4)	672 (29.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다음으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일반 특고와 비교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경우 미가입 비율이 일반 특고에 비해 9.9%p 가량 높았으며,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과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비율은 각각 5.3%p, 4.7%p 더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의 형태를 살펴보면 자기 사업체 운영의 비율은 일반 특고보다 더 높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특고에 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한다는 응답이 낮았으며, 주어진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특고 종사자보다도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30>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보수 형태 및 소득 안정성

(단위: 명, %)

		응답자 수 (비율)	
		일반 특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		3,617 (61.2)	2,297 (38.8)
총소득 유무	소득 있음	2,823 (78.1)	1,721 (74.9)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572 (15.8)	476 (20.7)
	잘 모름/무응답	222 (6.1)	100 (4.4)
근로계약 형태	고정되지 않은 보수	2,823 (78.1)	1,721 (74.9)
	고정된 보수	572 (15.8)	476 (20.7)
	잘 모름/무응답	222 (6.1)	100 (4.4)
지난 1년간 소득 (순수입) 변화의 안정성	매우 안정적이다	127 (3.5)	45 (2.0)
	안정적이다	748 (20.7)	307 (13.4)
	불안정하다	1,563 (43.2)	1,115 (48.5)
	매우 불안정하다	1,179 (32.6)	830 (36.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표 6-30>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수와 관련된 질문들의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총소득 유무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 특고에 비해 소폭 낮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응답은 소폭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보수의 형태는 고정된 보수를 받는다는 응답이 일반 특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적이다 또는 안정적이라는 응답의 합이 15.4%로 일반 특고의 24.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5.3%p 더 높았으며, 매우 불안정하다는 응답도 36.1%p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일반 특고보다 근로 기간은 비정형적인 이들이 더 많은 반면, 보수는 고정적인 이들이 더 많았으며, 그럼에도 소득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정하게 느끼는 이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고정적인 보수는 소득의 안정성과 양의 관계를 갖는데 반해,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제4절 소결

본 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우리 노동시장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업장 기준 사회보험 체계가 더 이상 우리 노동시장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표적으로 특고 종사자의 고용 양상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번에 실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13,227명이며, 이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분류된 응답자는 5,918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종사자가 복수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특고 종사자의 비중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는 3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으로 양극화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용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없거나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하는 방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표준 하도급·위임·위탁·위촉·임대·프리랜서·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대리인



을 임명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43.1%로 주요한 계약형태로 나타났다. 확정되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응답자가 전체의 64%를 차지하였으며, 소득 변동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불안정 또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을 하였다. 러한 경향은 고정되지 않는 급여를 받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실업 기간의 소득 감소를 평활화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지금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경험이 없는 2,146명을 대상으로 사유를 물은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서였으며, 이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확대되는 경우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2.9%에 달하는 4,315명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선호하는 혜택은 실업급여 지원이 80% 이상의 높은 응답을 받았다. 가입에 부정적인 1,603명을 대상으로 사유를 물은 질문에는 33.9%의 응답자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꼽았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고용보험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5,918명 가운데 어떠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70.8%인 4,189명이었다. 상용직 위주인 기존의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1,308명(22.1%)였으며,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은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에선 417명(7.0%) 가량 가입이 진행된 상태였다.

특고 고용보험 제도의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이들 417명의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여성이 78.4%를 기록 하여 21.6%에 그친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40대의 비중이 43.4%로 높았고, 프리랜서 계약 등의 형태가 53.7%로 지배적인 계약형태로 나타났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산업분포는 다소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현 시점에서 특고 고용보험이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군 뿐만 아니라, 직업별로 살펴보면라도 교육직, 운송직, 판매직의 비중이 88.5%로 미가입 또는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그룹에 비해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은 직종에 따른 가입자격으로 인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종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의 직업 분포로 유추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경영·행정·사무직, 예술·디자인·방송직, 건설·채굴직, 제조 단순직 등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부표 1〉 직종 간 월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단위: 명, 만원)

	응답자 수	월평균임금	표준편차
<b>전체</b>	<b>5,735</b>	<b>229.9</b>	<b>224.3</b>
관리직	176	294.9	301.0
경영, 행정, 사무직	437	224.6	204.0
금융, 보험직	93	279.6	208.9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	28	244.6	226.6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04	488.0	398.1
건설, 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9	263.2	273.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3	303.8	242.8
교육직	1267	176.4	158.7
사회복지, 종교직	45	196.7	190.2
경찰, 소방, 교도직	1	250.0	-
보건, 의료직	150	178.3	121.8
예술, 디자인, 방송직	476	229.7	234.1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직	286	194.8	191.4
미용, 예식 서비스직	144	189.6	141.8
여행, 숙박, 오락 서비스직	32	159.4	164.8
음식 서비스직	104	165.4	134.9
경호, 경비직	41	174.4	80.7
돌봄 서비스직(간병, 육아)	45	133.3	48.9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92	171.1	141.8
영업, 판매직	519	221.4	228.2
운전, 운송직	1053	285.0	255.7
건설, 채굴직	204	290.9	271.4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직	36	272.2	275.8
금속, 재료 설치, 정비, 생산직	13	442.3	329.7
전기, 전자 설치, 정비, 생산직	33	421.2	315.7
정보통신 설치, 정비직	11	295.5	248.4
화학, 환경 설치, 정비, 생산직	3	716.7	490.7
섬유, 의복 생산직	22	238.6	257.7
식품 가공, 생산직	5	130.0	67.1
인쇄, 목재, 공예 및 기타 설치, 정비, 생산직	29	144.8	76.0
제조 단순직	120	242.5	211.6
농림어업직	34	220.6	214.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부표 2〉 고용보험 가입 상태별 직종 간 월평균임금 및 표준편차

(단위: 명, 만원)

	미가입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특고 고용보험	
	수	평균 임금	수	평균 임금	수	평균 임금
전체	4,055		1,271		409	
관리직	137	302.2	35	272.9	4	237.5
경영, 행정, 사무직	280	210.0	148	248.6	9	283.3
금융, 보험직	67	279.1	11	286.4	15	276.7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	15	156.7	13	346.2	-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71	499.3	32	475.0	1	100.0
건설, 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3	288.5	1	200.0	5	210.0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7	257.1	6	358.3	-	-
교육직	779	177.9	216	197.0	272	155.9
사회복지, 종교직	25	182.0	20	215.0	-	-
경찰, 소방, 교도직	1	250.0	-	-	-	-
보건, 의료직	90	172.8	53	198.1	7	100.0
예술, 디자인, 방송직	368	229.3	101	236.1	7	157.1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직	212	184.7	63	238.9	11	136.4
미용, 예식 서비스직	122	184.4	19	231.6	3	133.3
여행, 숙박, 오락 서비스직	21	121.4	11	231.8	-	-
음식 서비스직	68	152.9	35	191.4	1	100.0
경호, 경비직	18	130.6	22	211.4	1	150.0
돌봄 서비스직(간병, 육아)	9	138.9	36	131.9	-	-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122	173.4	61	172.1	9	133.3
영업, 판매직	403	213.3	95	240.5	21	290.5
운전, 운송직	883	279.3	133	261.7	37	506.8
건설, 채굴직	126	264.3	76	337.5	2	200.0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직	28	271.4	8	275.0	-	-
금속, 재료 설치, 정비, 생산직	7	264.3	6	650.0	-	-
전기, 전자 설치, 정비, 생산직	24	425.0	8	337.5	1	1000.0
정보통신 설치, 정비직	6	166.7	5	450.0	-	-
화학, 환경 설치, 정비, 생산직	2	1000.0	1	150.0	-	-
섬유, 의복 생산직	16	262.5	5	190.0	1	100.0
식품 가공, 생산직	2	100.0	3	150.0	-	-
인쇄, 목재, 공예 및 기타 설치, 정비, 생산직	22	140.9	7	157.1	-	-
제조 단순직	82	226.8	36	279.2	2	225.0
농림어업직	29	215.5	5	250.0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자료

## 제7장

#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성공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시행 및 안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형태를 포섭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자 DB, 예술인 고용보험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DB자료 등 고용노동행정DB와 특고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현황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2019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은 평균 116% 수준이며 2020년 이후에는 174%로 크게 높아졌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직종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순수 자영업자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해지는 7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어쨌

든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급증은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보험료 지원제도 등의 노력을 기울인 효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정부지원금 수령자의 경험 효과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과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을 가진 경우는 3.5%에 불과하다. 비록 최근 가입자일수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경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자영업자가 폐업 혹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2년 내 재가입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기준기간 24개월 및 12개월 기여 기간만 충족하면 재가입할 수 있는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그 기준이 동일하지만 재가입 제한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금근로’ 고용보험과 같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2019년 7월 시행된 자영업자 가입자격 완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가입자격 완화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가 직접적이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고용보험 내에서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저임금의 20%를 하회하는 부분 소득 활동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보다 더 관대하게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예술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연예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용역 계약을 체결’ 한 예술인 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인 부문별로 계약 관행이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활동 증명 방식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아직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실시된지 11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일자리의 절반이 약 5개월 후 상실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직급여 수급 조건인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기여 조건의 완화를 고려해봐 할 것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가입자 수는 518천 명(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는 581천 개)로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 속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는 고용보험가입 가능 직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특성 분석을 하였다.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인적속성 분석결과 30세 미만의 청년층 그리고 5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처분소득이 빈곤선 보다 낮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5장-6장은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3,227명(자영업자 7,309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918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 고용형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소득 변동사항, 향후 고용보험 가입의사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소득 기반 고용보험 설계 및 전국민고용보험 관련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자하였다.

5장에서는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를 고용보험DB와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영업자 응답자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인 강사들로 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센터 강사 등이 비중이 높았으며, 이미 특고 가입 대상인 방과후 강사, 방문 강사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도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보험가입의사가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 7,306명 응답자의 63.1%에 해당하는 4,614명이 이었으며,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가입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가입의향이 있는 경우 기대하는 혜택은 실업급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의향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35.5%),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34.7%)라고 응답하고 있어 월별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매월 일정정도 고정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납부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보험 외에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있어 이들을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보험가입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를 분석한 결과 77.8%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자영업자는 전체의 49.2%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의 가입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2장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장에서는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를 고용보험DB와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비중이 특고 응답자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으로 양극화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용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없거나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하는 방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표준하도급·위임·위탁·위촉·임대·프리랜서·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대리인을 임명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43.1%로 주요한 계약형태로 나타났다. 확정되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응답자가 전체의 64%를 차지하였으며, 소득 변동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불안정 또는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을 하였다. 따라서 실업 기간의 소득 감소를 평활화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지금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경험이 없는 2,146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확대는 가입자격직종의 확대가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0),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보도자료, 2020.12.23.
- 박진희·이시균·정재현·정한나·김수현·이정아·이혜연·김성경 (2020), 『행정 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에 발맞춰 특수형태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발굴 및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보험 적용 확대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현황, 고용형태, 후후 고용보험 가입 의사 등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하늘일’을 상세히 파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간 고용형태를 구체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여 전국민고용보험 설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응답자분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해주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 월  
한국고용정보원

근무업체명		전화번호	
응답자 성명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응답자 연령	만 ( )세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응답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1)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학원 이상		
근무업체 소재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매출액(수입)이 가장 높은 곳)	<input type="checkbox"/> (1) 서울 <input type="checkbox"/> (2) 부산 <input type="checkbox"/> (22) 대구 <input type="checkbox"/> (23) 인천 <input type="checkbox"/> (24) 광주 <input type="checkbox"/> (25) 대전 <input type="checkbox"/> (26) 울산 <input type="checkbox"/> (31) 경기 <input type="checkbox"/> (32) 강원 <input type="checkbox"/> (33) 충북 <input type="checkbox"/> (34) 충남/세종 <input type="checkbox"/> (35) 전북 <input type="checkbox"/> (36) 전남 <input type="checkbox"/> (37) 경북 <input type="checkbox"/> (38) 경남 <input type="checkbox"/> (39) 제주		

### A. 최근 일자리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평소(지난 1년 동안)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몇 개 하셨습니까?

\_\_\_\_\_개

※ ‘수입이 되는 일’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일’ 은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 작가라는 하나의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께서 평소(지난 1년 동안) 하셨던 수입이 되는 일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가장 많았던 일자리	수입이 두번째로 많았던 일자리	수입이 세번째로 많았던 일자리	수입이 네번째로 많았던 자리에
1) 귀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2) 평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 평균 ( )시간 일함	일주일 평균 ( )시간 일함	일주일 평균 ( )시간 일함	일주일 평균 ( )시간 일함
3) 각 일자리에서 지금까지 일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작시기	시작	시작	시작
	종료시기	종료	종료	종료
	총 기간	총 기간	총 기간	총 기간
	<b>종료사유 문항은 보기를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b>			
	종료사유	종료사유	종료사유	종료사유
	① 개인, 가족관련 이유 ② 육아 ③ 가사 ④ 심신장애 ⑤ 정년퇴직, 연로 ⑥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 ⑦ 직장의 휴업, 폐업 ⑧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⑨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⑩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⑪ 기타( )			
4) 각 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	_____ %	_____ %	_____ %
5) 귀하가 일감을 얻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를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점포가 있으며 다양한 방식(대면, 온라인 등)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점포가 없으며 호출이나 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고객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사이트나 앱을 통해 일감을 얻은 후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④ 자신의 작품을 사이트나 앱에 게시하고 접속자 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⑤ 업체에서 일감과 무관하게 고정기본급을 받는다. ⑥ 기타( )			
6) 각 일자리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일감을 주는 거래 업체의 수는 몇 개입니까?	<b>5)의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를 기입한 경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b>			
	일감을 받는 호출이나 앱, 사이트, 업체의 수			
	_____개	_____개	_____개	_____개

※ 2-5)의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B로, ②-⑤를 선택한 경우 C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B. 다음은 주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주된 일자리’ 는 평소(지난 1년 동안) 하셨던 수입이 되는 일 중 수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문2에서 응답하셨던 “평소(지난 1년 동안) 수입이 가장 많았던 일자리” 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에서 \_\_\_\_\_ 하는 \_\_\_\_\_를 하고 있다.

- ※예시 : - 편의점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에서 영업적으로 일하고 있다.

4.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기업 고용주 →→→ ①-① 일반과세자 ①-② 간이과세자 ①-③ 면세사업자
- ② 고용원이 없는 개인 기업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 포함)  
 →→→ ①-① 일반과세자 ①-② 간이과세자 ①-③ 면세사업자
- ③ 법인 고용주
- ④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5.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가 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사업장(건물 및 토지)
- ② 자기 집
- ③ 남의 집 [사업장이 집 안에 있는 경우]
- ④ 거리 [방문판매나 방문서비스, 점포없는 노점상을 하는 경우를 포함]
- ⑤ 야외 작업 현장
- ⑥ 운송수단
- ⑦ 기타( \_\_\_\_\_ )

6. 귀하는 주된 일자리(사업체)에서 다음 중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 ①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한 자기 사업체 운영
- ② 별도 계약 없이 자기 사업체 운영
- ③ 기타( \_\_\_\_\_ )

7. 귀하의 국세청 소득신고 업종 코드는 무엇입니까? \_\_\_\_\_ 코드

8. 주된 일자리(사업체)에서 얻는 매출 및 순수입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① 순수입이 있다.

매출 →→→ 월평균 \_\_\_\_\_만원

1) 비용→→→ 월평균 \_\_\_\_\_만원

2) 순수입→→→ 월평균 \_\_\_\_\_만원

②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매출 →→→ 월평균 \_\_\_\_\_만원

비용→→→ 월평균 \_\_\_\_\_만원

※ 매출은 비용과 순수입을 합친 것을 의미함. 적자(손해)를 보는 경우 매출과 비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수입이 되는 일이 여러 개인 경우 총 소득(총 순수입)은 얼마입니까?

총소득(총 순수입) \_\_\_\_\_만원

10. 평소(지난 1년 동안) 주된 일자리(사업체)에서 소득(순수입) 변동은 안정적이었습니까?

- ① 매우 안정적이다.
- ② 안정적이다.
- ③ 불안정하다.
- ④ 매우 불안정하다.

11. 평소(지난 1년 동안) 주된 일자리(사업체)에서 소득(순수입) 변동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수입이 가장 많은 달의 소득(순수입) : \_\_\_\_\_만원

수입이 가장 적은 달의 소득(순수입) : \_\_\_\_\_만원

12. 향후 소득이 감소한다면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2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4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 ③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 ④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예시: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이상 감소한 채로 6개월 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13.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본인 포함 몇 명입니까?

- ① 1명
- ② 2-5명
- ③ 6~10명
- ④ 11명~29명
- ⑤ 30~49명
- ⑥ 50~99명
- ⑦ 100명 이상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현재 일하는 사업체는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14.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② 광업
-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⑤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 ⑧ 운수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16.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일자리에서 귀하는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16-1로 이동]
- ② 아니오 ☞ [17로 이동]

16-1 노란우산의 월 납입액은 얼마입니까? \_\_\_\_\_원

17. 귀하께서는 향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확대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17-1로 이동]
- ② 아니오 ☞ [17-2로 이동]

17-1 귀하께서 선호하는 고용보험지원혜택은 무엇입니까?

- ① 실업급여지원
- ② 직업훈련지원
- ③ 이(전)직 지원
- ④ 출산·육아 지원

17-2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 ② 폐업(실업) 위험이 크지 않아서
- ③ 폐업(실업) 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 ④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수단으로 폐업(실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 ⑤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 ⑥ 기타( )

**C. 다음은 주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주된 일자리’ 는 평소(지난 1년 동안) 하셨던 수입이 되는 일 중 수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문2에서 응답하셨던 “평소(지난 1년 동안) 수입이 가장 많았던 일자리” 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에서 \_\_\_\_\_ 하는 \_\_\_\_\_을/를 하고 있다.

- ※예시 : - 편의점에서 매장을 관리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사무실에서 사무를 처리 하는 사무원을 하고 있다.  
 - 대리점에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을 일하고 있다.



4.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기업 고용주
  - ①-① 일반과세자 ①-② 간이과세자 ①-③ 면세사업자
- ② 법인 고용주
- ③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 ④ 고용원이 없는 개인 기업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 포함)
  - ①-① 일반과세자 ①-② 간이과세자 ①-③ 면세사업자
- ⑤ 임금근로자

5.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가 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사업장(건물 및 토지)
- ② 자기 집
- ③ 남의 집 [사업장이 집 안에 있는 경우]
- ④ 거리 [방문판매나 방문서비스, 점포없는 노점상을 하는 경우를 포함]
- ⑤ 야외 작업 현장
- ⑥ 운송수단
- ⑦ 기타

6. 귀하는 주된 일자리(직장, 사업체)에서 다음 중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 ① 근로계약
- ② 표준하도급계약, 위임계약, 위탁계약, 위촉계약, 임대계약, 프리랜서 계약,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등
- ③ 자기 사업체 운영
- ④ 기타 계약( )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로 응답

- 소득세 3.3% 공제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개인사업자라고 업체로부터 주지받은 경우
- 본인이 받은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거나 직장에서 대신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주는 경우

7.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를 계약을 맺은 회사(계약 대상자)로부터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에 대해 조회·회의·단말기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자세히 받는다	일부 받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업무내용	①	②	③
업무방식	①	②	③

8.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는 계약을 맺은 회사(계약 대상자)로부터 업무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받는다	받지 않는다
업무시간	①	②
출근	①	②
퇴근	①	②

9. 귀하의 주된 일자리(직장, 사업체)에서 고용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형태입니까?

- ① 예,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한다. [9-1 과 9-2로 이동]
- ②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고용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9-1 과 9-2로 이동]
- ③ 주어진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한다. [10으로 이동]
- ④ 고용기간에 대해 얘기된 바는 없지만, 프로젝트, 사업, 대체근로, 일거리 있을 때까지 등 고용관계가 끝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10으로 이동]
- ⑤ 정해진 기간 없이 일하기로 했다. [10으로 이동]

※ 아래의 경우 ③으로 응답

- 고용기간에 대해 얘기된 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가 끝날 수 있는 사건(종료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③ 주어진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한다.’에 응답

- 하는 일(프로젝트 등)이 완성될 때까지 일한다.
-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일한다.
- 현재 본인이 하는 일이 대체근로이어서,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할 때까지 일한다.
- 사업(가게, 업장, 공장 등)이 잘 되지않아 일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일한다.
- 그 외 현재 업무를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일한다 등

※ 일의 성격상 건별로 하는 일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④에 응답해야 함.

※ 현재의 서면 또는 구두계약이 반복 갱신될 것이라하여 ⑥에 응답하면 안되고, ①~④ 중에 응답해야 함.

9-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개월 미만
- ② 1-3개월 미만
- ③ 3-6개월 미만
- ④ 6개월-1년 미만
- ⑤ 1년
- ⑥ 1년 초과-2년
- ⑦ 2년 초과(기간 한정)

9-2. 위의 고용계약은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0. 주된 일자리(직장, 사업체)에서 얻는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소득 있음 →→→ 월평균 \_\_\_\_\_만원
- ②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11. 수입이 되는 일이 여러개 인 경우 합산소득은 얼마입니까? 합산소득 총 \_\_\_\_\_만원

12. (주된 일자리 기준) 직장에서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수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 수수료, 위탁계약료, 사업소득, 프로젝트 건당, 기타소득 등 고정되지 않은 보수)
- ② 고정된 보수(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 아래 경우에는 ①로 응답

- 보수를 “월, 주, 일” 단위로 받더라도 실적급, 수수료 등 ①번 항목이 주된 보수형태라면 ①로 응답
- 지난 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면 ①로 응답
- 본인이 받은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거나 직장에서 대신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주는 경우에도 ①로 응답

13. 지난 1년 동안 주된 일자리에서의 소득(순수입) 변화가 안정적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정적이다.
- ② 안정적이다.
- ③ 불안정하다.
- ④ 매우 불안정하다.

14. 평소(지난 1년 동안) 주된 일자리에서 소득(순수입) 변동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수입이 가장 많은 달의 소득(순수입) : \_\_\_\_\_만원

수입이 가장 적은 달의 소득(순수입) : \_\_\_\_\_만원

15. 향후 소득이 감소한다면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내 기간은 어느 정도 인니까?

- ①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2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 ②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4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 ③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 ④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이상 감소한 채로 \_\_\_\_\_개월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예시: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60%이상 감소한 채로 6개월 간 지속된다면 더 이상 현재 일자리(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다.

16. 귀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십니까?

- ① 그렇다 ☞ [16-1 또는 16-2로 이동]
- ② 아니다 ☞ [17으로 이동]

16-1. 국세청 소득신고 업종코드는 무엇입니까? \_\_\_\_\_코드

16-2. 하는 일에 맞는 국세청 소득신고 업종코드가 없어 \_\_\_\_\_코드로 신고하고 있다.

※ 국세청 업종코드

523132	방문 판매업 (자기 명의의 화장품 외판원)	940303	모델
525200	방문 판매업 (다단계 판매원 등)	940304	가수
602301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1톤 이하)	940305	성악가 등
602302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5톤 이상)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602303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12톤 미만)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602304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12톤 이상)	940901	바둑기사

602305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건인, 특수목적)	940902	꽃꽂이교사
602307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이사화물)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602308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1톤이하, 주행거리비례요금)	940904	직업운동가
602309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40905	유호점객원 및 댄서
602310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형 및 특수 목적)	940906	보험설계사
602313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940907	음료품배달원
630601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940908	서적외판원,학습지방문판매원,화장품외판원,정수기,자동차방문판매원,기타외판원
630702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940909	기타자영업
630904	늘찬 배달업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30702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건설기계 지입)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641201	택배업	940912	개인간병인
74992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940913	대리운전기사
809007	일반 교과학원	940914	골프장캐디
851101	병원	940915	목욕관리사
921406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40916	행사도우미
940100	작가	940917	심부름용역원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940301	작곡가	940919	기타물품배달원
940302	배우,탤런트등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17. (주된 일자리 기준) 귀하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사회보험 가입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8.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5명            ③ 6~10명            ④ 11명~29명  
 ⑤ 30~49명      ⑥ 50~99명      ⑦ 100명 이상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기업체, ○○전자의 ○○○공장, ○○○영업소, ○○서비스센터 등은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 현재 일하는 사업체는 급여를 받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파견근로 내지 사내하청근로의 경우 응답자가 소속 되어 급여를 받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19.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② 광업
- ③ 제조업
-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⑥ 건설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 ⑧ 운수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⑯ 교육 서비스업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⑲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⑳ 국제 및 외국기관/기타

20. (주된 일자리 기준) 현재 일자리에서 귀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21로 이동]
  - ② 아니다 ☞ [20-1로 이동]
- 20-1. 귀하께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함 ☞ [21로 이동]
  - ② 없다 ☞ [20-1-1 응답 후 21로 이동]

20-1-1.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고용보험에 대해 모름
- ② 가입자격이 안돼서
- ③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아서
- ④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 ⑤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노란우산공제회 등)에 납입하고 있어서 월 납입액 \_\_\_\_\_만원
- ⑥ 다른 수단으로 실업(폐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⑤의 금융상품 제외)
- ⑦ 실업(폐업) 위험이 크지 않아서
- ⑧ 실업(폐업) 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 ⑨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 ⑩ 기타( )

21. 귀하께서는 향후 전국민고용보험으로 확대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21-1로 이동]
- ② 아니오 ☞ [21-2로 이동]

21-1. 귀하께서 선호하는 고용보험지원혜택은 무엇입니까?

- ① 실업급여지원
- ② 직업훈련지원
- ③ 이(전)직 지원
- ④ 출산·육아 지원

21-2.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서
- ② 실업(폐업) 위험이 크지 않아서
- ③ 실업(폐업) 후에 실업급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서
- ④ 다른 수단으로 실업(폐업) 위험에 대비하고 있어서
- ⑤ 보험료만큼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서
- ⑥ 기타(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집필진**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정재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이혜연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김영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

**인쇄** 2021년 12월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나영돈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http://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 02-2271-2526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055-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1577-7114 [www.keis.or.kr](http://www.keis.or.kr)

